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

2017.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4
- 3. 예산안 주요 특징 7

II. 주요 현안 분석 / 8

- 1.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사업 예산안 검토 8
 - 1-1.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과 국민제안 제도의 연계 필요 9
 - 1-2.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의 면밀한 계획 필요 13
- 2.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 검토 19
- 3. 재난안전통신망구축(정보화) 사업 23
 - 3-1. 총사업비 검토 결과에 기반한 사업 추진 필요 26
 - 3-2.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계획 보완 필요 33
 - 3-3. 제2운영센터 신축계획 보완 필요 37
- 4.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검토 40
 - 4-1.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43
 - 4-2.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사업 지원의 사업계획 보완필요 48



- 5.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50
 - 5-1. 시스템 구축 전 관련 제도개선 선행 필요 52
 - 5-2. 국민참여 플랫폼 간 차별화 필요 55
- 6.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57
 - 6-1. 지방교부세 개편 현황과 개선과제 59
 - 6-2.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의 문제점 63
 - 6-3.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성과관리 필요 66

Ⅲ. 개별 사업 분석 / 69

- 1.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정책연구 계획 미흡 69
- 2.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2
- 3.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사업의 사업계획 미흡 74
- 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76
- 5.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의 차별화방안 마련 필요 79
- 6.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과제설계 필요 82
- 7.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84
- 8. 안전신문고 운영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재검토 필요 87

[인사혁신처]

I. 예산안 개요 / 91

- 1. 현 황 91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95
- 3. 예산안 주요 특징 96



CONTENTS

II. 주요 현안 분석 / 97

- 1. 국가시험시행 사업의 개선방안 검토 97
 - 1-1.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9
 - 1-2. 공직박람회 개최의 실효성 검토 필요 102
- 2.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필요 104
- 3.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 추가 필요성 검토 111

III. 개별 사업 분석 / 117

-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사업의 내실화 필요 117
- 2.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의 차질없는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120
- 3.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운용수익 보전금 총당 규모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한 기금 안정성 강화 필요 122
- 4. 공무원연금기금 기타재산수입의 연례적 수납률 저조 개선 필요 125

[경찰청]

I. 예산안 개요 / 131

- 1. 현 황 131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34
- 3. 예산안 주요 특징 136



II. 주요 현안 분석 / 137

1. 치안과학기술 R&D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37
1-1.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및 저고도무인기 연구개발 R&D사업 점검 필요	139
1-2.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과 기체분자식별 R&D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필요	145
1-3.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신규 R&D 사업 검토	151
2. 경찰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	153
2-1. 형사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유지보수비 편성 개선과제	155
2-2.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사업의 정보시스템 성격에 따른 분리 편성 필요	159
2-3.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업 중 장비보급사업의 정보화사업 이관 필요	163
2-4. 외사경찰활동 사업의 인터폴 통신보안장비 교체시 보안대책 이행 필요	166
3. 경미범 및 소년범 감경처분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169
4. 경찰대학 운영 사업 검토	173
4-1. 치안대학원 운영사업의 개선과제	174
4-2. 치안정책연구소 경찰관패널조사 사업의 개선과제	178

III. 개별 사업 분석 / 180

1. 생활안전활동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180
2. 체류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185
3. 112신고총력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이용 공공요금 통합 관리 검토	189
4. 아동안전지킴이 확대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93
5. 도로교통공단 출연 용도에 따른 비목 편성 필요	195
6. 평창동계올림픽 경비경찰활동 지원경비 적정성 검토	198
7.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 적정성 검토 필요	201
8. 신임순경 교육 중 임용에 따른 특근매식비 지원 문제	205
9. 지역경찰청사 시설관리 현황 및 개선과제	208
10. 경찰병원 경영개선 대책 마련 필요	210



CONTENT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215

- 1. 현 황 215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16
- 3. 예산안 주요 특징 217

II. 주요 현안 분석 / 218

- 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필요 218
 - 1-1.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적은 전산시스템 예산의 이관 필요 220
 - 1-2. 선거장비 보관경비 사업의 별도 편성 필요 222
 - 1-3. 선거관리 경비의 지방비 부담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필요 224
 - 1-4. 일부 계도·홍보 사업의 효과성 검토 226
- 2. ICT기술을 이용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229

III. 개별 사업 분석 / 233

- 1. 재외선거가 없는 해의 재외선거관 파견의 적정성 검토 233
- 2.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236
- 3. 관학협력 사업의 내실화 필요 239
- 4.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실효성 검토 필요 241



[소방청]

I. 예산안 개요 / 247

- 1. 현 황 247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48
- 3. 예산안 주요 특징 250

II. 주요 현안 분석 / 251

- 1. 세부사업 개편 및 수행방식 개선 필요 253
- 2. 소방장비 관리 강화 필요 258
 - 2-1. 소방장비 관리체계 정비 필요 260
 - 2-2.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 사업 내실화 필요 268

III. 개별 사업 분석 / 271

- 1.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71
- 2.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경비 조정 필요 27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현 황

2018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57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300만원(5.0%)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4,137	53,048	53,048	55,013	1,965	3.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1,500	1,500	2,058	558	37.0
지역발전특별회계	1,369	0	0	210	210	순증
합계	45,506	54,548	54,548	57,281	2,733	5.0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8조 6,446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5,019억 200만원(7.8%)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1,460,701	42,865,473	44,595,177	48,123,074	3,527,897	7.9
지역발전특별회계	1,108,848	547,529	547,529	521,534	△25,995	△4.7
합계	42,569,549	43,413,002	45,142,706	48,644,608	3,501,902	7.8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일반회계 17개,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590억 1,500만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205억 6,200만원)은 종합적인 읍면동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140억원)는 시민들의 우수한 역량 및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섬발전협력사업 추진(20억원)은 도서지역의 연료운반선 건조(2척)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자정부해외진출 지원(정보화)는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OECD E-Leaders Meeting을 개최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분야 신규사업으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R&D)(35억원), 재난안전산업육성 지원(R&D)(46억 5,400만원), 재난안전취약 핵심역량도약 기술개발(R&D)(23억 2,200만원) 등이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17개)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20,562
	혁신읍면동 추진단 운영	407
	서민금융복지센터	59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위령 시설조성	1,000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조성	400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14,000
	사회혁신추진단	841
	정책기획위원회운영	4,409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정보화)	1,981
	캄보디아·베트남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60
	캄보디아 전자정부 법·제도개선 연구용역	150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추진체계운영	630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R&D)	800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R&D)	3,500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700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	2,322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4,654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섬발전협력사업추진	2,000
	합 계	59,015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②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③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예산안이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률로 결정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은 재난안전통신망을 본격 구축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며,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는 범정부 데이터 오픈 플랫폼 구축이 신규 반영되었다.

[행정안전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개)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435	435	569	134	30.8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339	339	513	174	51.3
	지자체경쟁력지원	1,211	1,211	3,915	2,704	223.3
	비영리민간단체지원	7,062	7,062	11,670	4,608	65.3
	지역공동체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730	730	1,346	616	84.4
	보통교부세	37,577,539	39,222,628	42,485,450	3,262,822	8.3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64,877	485,228	525,593	40,365	8.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16,219	121,307	131,398	10,091	8.3
	부동산교부세	1,532,835	1,532,835	1,780,100	247,265	16.1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81,096	606,535	656,991	50,456	8.3
	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 및 대외신인도제고	140	140	633	493	352.1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사업	482	482	782	300	62.2
	정보공개활성화	1,149	1,149	1,690	541	47.1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19,931	19,931	30,016	10,085	50.6
	전자정부성과평가	138	138	198	60	43.5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 공공서비스촉진	3,600	3,600	5,250	1,650	45.8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고도화	1,598	1,598	2,124	526	32.9
	청사시설유지보수	24,376	24,376	46,748	22,372	91.8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805	805	1,291	486	6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16,744	16,744	27,721	10,977	65.6
	본부인건비	96,324	96,324	143,742	47,418	49.2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764	764	993	229	30.0
	B-1정부노후시설정비	211	211	611	400	189.6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1,760	1,760	121,794	120,034	6,820.1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	2,257	2,257	5,365	3,108	137.7
지역발전 특별회계 (3개)	소하천정비(제주)	2,882	2,882	6,514	3,632	126.0
	재난심리회복지원	216	216	308	92	42.6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830	830	1,242	412	49.6
합 계		40,456,550	42,152,517	45,994,567	3,842,050	9.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92억원),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140억원) 등의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205억 6,200만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내국세 세입예산안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3.6조원 증액(2017년 추경 42.4조원→2018년 46.0조원) 되었고, ④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이 1,200억원 증액(2017년 18억원→2018년 1,218억원) 되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열린 혁신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등은 세부계획, 사업간 차별성 등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은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므로, 기 추진한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총사업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교부세는 2016년부터 추진한 제도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수요의 반영비율을 확대(26%→30%)할 예정인데, 일반재원이라는 지방교부세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영비율의 적절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사업 예산안 검토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사업¹⁾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²⁾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144억 3,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98억 2,800만원(213.0%) 증가하였다. 세부내역은 ‘열린혁신기반구축’이 29억 7,800만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운영’이 92억원, ‘정부혁신 성과·공유 및 확산·교육’이 9억 9,000만원, ‘정부혁신 컨설팅·평가단 운영’이 5억 4,400만원, ‘국민참여형 정책운영’이 6억 5,800만원, ‘민·관협력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확산’이 6,300만원 등이다.

[2018년도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3,973	4,605	4,605	14,433	9,828	213.0
열린혁신기반구축	0	0	0	2,978	2,978	순증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0	0	0	9,200	9,200	순증
정부혁신 성과·공유 및 확산·교육	2,779	3,200	3,200	990	△2,300	△71.9
정부혁신 컨설팅·평가단 운영	621	684	684	544	△140	△20.5
국민참여형 정책운영	510	658	658	658	0	0
민·관협력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확산	63	63	63	63	0	0

자료: 행정안전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3-307

2)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당초 사업명은 ‘정부3.0 변화관리 지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1-1.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과 국민제안 제도의 연계 필요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 동안 활동하였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인 ‘광화문 1번가를 상설·운영하는 사업’을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은 기존 ‘광화문 1번가’를 업그레이드하여 정책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오프라인 공간을 광화문 일대에 구축하여 상설·운영하는 것이다.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의 2018년도 예산안은 29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오프라인 정책제안공간 구축·운영’이 9억 4,000만원, ‘열린포럼 상시운영’이 15억원, ‘광화문컨퍼런스’가 4억 6,000만원 등이다.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 사업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근거	2018년 예산안
오프라인 정책제안 공간 구축·운영 (연 1회, 30일)	인건비	기획총괄, 매니저, 기획자 등	23
	설계비	공간디자인 설계 및 감리	16
	공간 메인시설물 설치	컨테이너 구조물, 영상장비 등	656
	공간연출	전시 및 콘텐츠, 디자인 제작 등	215
	현장 운영	사무국 운영, 현장기록 촬영 등	30
	소 계		940
열린포럼 상시운영 (주1~2회, 총90회)	장소 임차료	장소 임차, 관리·전기·청소비 등	600
	인건비	기획총괄, 프로그램기획 등	127
	프로그램 운영	음향 영상 장비 대여 등	683
	제작비	주제별 매너 등 각종 디자인 등	10
	운영비	사무용품 회의비	24
	일반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등	56
	소 계		1,500
광화문 컨퍼런스 (연 1회)	프로그램 기획	행사프로그램 기획	50
	행사장 임차·설치	행사장 임차, 음향·영상장비 설치	200
	행사진행비	백드롭, 사회자, 보안요원 등	95
	인건비	기타 인건비 등	55
	운영비	사무국 사무·전산기기 등	35
	일반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등	25
	소 계		460
합 계			2,900

자료: 행정안전부

오프라인 정책제안공간 구축·운영은 광화문 주변에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 1회 30일간 오프라인 제안접수공간으로 활용·운영하는 것이다. 열린포럼 상시운영은 국민, 시민사회, 정부가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면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주제별로 소관기관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며 주 1~2회씩 총 90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광화문컨퍼런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놓고 발표·토론·교류하는 컨퍼런스로서 연 1회 개최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오프라인 소통공간이라는 점에서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등 기존 정책제안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화문 1번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설치되었던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 동안 활동하였다. 온-오프라인 대국민 제안접수 및 정책토론 등이 진행되었고, 50일 동안 총 18만 705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67건의 제안은 우수제안으로 선정, 국민제안 실천과제로서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 현황]

(단위: 건)

구분	현장	홈페이지·문자메세지	클센터	우편·이메일	소계
정책제안	7,069	158,432	2,176	2,858	170,535
인재추천	46	1,688	0	12	1,746
불공정 접수	778	1,707	5	38	2,528
기타	0	0	5,896	0	5,896
합계	7,893	161,827	8,077	2,908	180,705

자료: 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을 통한 국민소통과 참여라는 사업취지는 이해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의 소통 및 정책제안의 접수·반영은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광화문 1번가는 연 1회 30일간 서울시의 광화문이라는 공간에 국한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별개로 시간적·장소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제안규정」을 근거로 시행되는 “국민제안”이 제안의 제출·접수·심사·사후 처리 등이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국민신문고”는 이러한 국민제안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오프라인 소통공간을 상설·운영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 국민제안 및 국민신문고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제안과 국민신문고 제도 개요]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정의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법령상 근거	「국민제안규정」 제5조 ³⁾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⁴⁾
제안제출 및 접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제안을 제출
제안의 심사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후 결정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공지
제안의 처리	- 채택제안은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관리 - 비채택제안은 2년간 보존·관리	좌동

자료: 법령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둘째, 광화문컨퍼런스와 열린포럼 등 다수의 정책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놓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인 광화문컨퍼런스를 1회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안으로 4억 6,000만원을

3) 「국민제안 규정」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편성하였다. 또한 연간 90회에 걸쳐서 열린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광화문스토리, 광화문
 오픈정책마켓, 정책간담회, 북콘서트 등을 통해 정부, 시민사회와의 소통행사를 수시로 개
 최할 예정이다.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의 프로그램 계획안]

프로그램 명	주요 내용
광화문 열린포럼	국민, 시민사회, 정부가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활용 (주 1~2회)
광화문 스토리	테마별 기획과 섭외를 통해 기존의 국민마이크를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사람들의 삶과 일 이야기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광화문 오픈정책마켓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개인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사고파는 오픈 정책마켓 운영
정책간담회	기관 및 단체, 모임들이 정부정책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
북콘서트	사회변화,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기적인 북콘서트 개최
광화문컨퍼런스	1년에 한 차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놓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교류하는 컨퍼런스 개최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광화문컨퍼런스는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참여해 거시적인 국
 정운영방향을 전 국민과 토론하고, 1년간 소규모 정책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정
 책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행사로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광화문컨퍼런스와 연중 수시로 개최할 계획인 각종 정책토론
 프로그램들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의 면밀한 계획 필요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시민과 활동가들이 한곳에 모여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사업의 신규 내역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은 92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사업’으로 63억원, ‘시민참여행사로 1억 2,000만원, ‘입주단체 컨설팅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업무협의 등’으로 4,000만원, ‘운영인력 인건비’로 22억 5,000만원, ‘전산장비 등’으로 2억 4,000만원, ‘워크숍 등’으로 1억원 등이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근거	2018년 예산안
주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사업	전체 활동가 대상 공모사업	3개소×12개사업×100백만원	3,600
	입주단체 대상 공모사업	3개소×8개사업×100백만원	2,400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3개소×1개사업×100백만원	300
	소 계		6,300
시민참여행사	방문프로그램 운영비 등	3개소×2회×20백만원	120
입주단체 컨설팅 지원	경영, 법률자문, 홍보 컨설팅 등	3개소×50백만원	150
업무협의 등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설립 업무협의	3개소×10회×1.3백만원	40
운영인력인건비	인건비	3개소×50백만원×15명	2,250
전산장비 등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3개소×80백만원	240
워크숍 등	지역별 사업자 선정 워크숍 개최	-	100
합 계			9,200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들이 한곳에 모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오프라인 체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은 중요 지역거점에 혁신파크를 설치하고 (혁신)활동가와 단체들이 모여 지역주민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수행을 담당할 지자체-민간운영주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플랫폼 3개소를 개소하여, 개소당 21개의 리빙랩 프로젝트(전체 활동가 대상 프로젝트 12개, 입주단체 대상 프로젝트 8개,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1개)를 추진하며, 1개 프로젝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각 프로젝트별로 10~20개의 개별과제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은 사회혁신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하 “혁신파크”) 조성·운영 사업은 공간구성, 중간지원조직, 혁신활동가들의 역량강화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혁신파크는 시민과 활동가들이 한곳에 모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이다. 이러한 혁신파크의 사례로는 국내에는 서울특별시의 서울혁신파크가 있고, 국외에는 스페인 빌바오 사회혁신파크와 핀란드 Turku 리빙랩 등이 있다.

기존 혁신파크의 국내외 사례와 연구에 의하면, 혁신파크가 조성·운영되고 성과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이라는 인적자원의 구성, 이들이 모여서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등 3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혁신파크의 개념 및 구성요건]

	주요 내용	사례
개념	시민과 활동가들이 한곳에 모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서울혁신파크 스페인 빌바오 사회혁신파크 ⁵⁾ 핀란드 Turku 리빙랩 ⁶⁾
인적자원 (입주기관)	조직의 목표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단체·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영리기업 등
공간구성	입주단체 사무실, 협업공간, 실험공간 등	시민참여공간, 특성화공간 (극장·재활용·예술작업· 푸드카페, 북카페 등), 부대시설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다양한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개조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NGO지원센터, 사회투자기금 등

자료: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로서 ICT리빙랩 사례분석과 시사점, 『과학기술학연구』, 제15권 1호(2015), pp.245-278”, “서울혁신파크 개요, 서울혁신센터(2016.10)”, “국내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vol.184(2016.2)”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는 혁신파크의 인건비,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만이 반영되어 있고, 혁신파크의 공간(임차·신축·빈건물활용 등)은 지자체가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혁신파크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혁신파크의 사례를 보았을 때, 사회혁신 플랫폼이자 지역시민들의 창의공원으로 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임차·신축·빈건물활용 등의 부지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공간, 특성화공간과 부대시설 등의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간 및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특별시가 시민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 운영 중인 것으로 은평구의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연면적 48,817.39㎡)에 입주대상단체와 공간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5년 4월 개소하였다.

5) 스페인의 빌바오 사회혁신파크는 빌바오시가 주도하여 2010년 6월 공공기관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옛 타이어공장지대(7만2000㎡)와 폐선박을 리모델링하여 연구소, 대학, 기업 등 50개 이상의 법인·단체와 1,000여명의 전문가, 혁신연구소 ‘이노바랩’(Innova Lab) 등을 입주시켜 미래형 창조사업 발굴, 혁신지도자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Turku는 핀란드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2만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섬지역과 지역사회 주민들간 연결망의 필요성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1990년대부터 사용자참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주요 참여주체는 주민 커뮤니티, 지자체 지역개발기구, 대학 등이며, 도시지역 발전을 위한 ICT 기술개발과 인적·물적 연계 및 혁신역량 결집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혁신파크를 실제 개소·운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파크를 활성화하고 운영을 체계화하며, 혁신가와 시민의 다리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혁신파크의 경우 2015년 4월 개소 전인 2013년부터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에 서울혁신파크의 중간지원조직(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입주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7년 10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등 250여 개 단체와 1,100여 명의 혁신활동가들이 입주해 있다.

셋째, 혁신파크의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 혹은 개인별 혁신활동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개의 혁신파크가 개소당 21개의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프로젝트당 10~20개 개별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소당 21억원씩, 총 6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 경우 개소당 최소 210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는 공모에 의해서 혁신파크를 조성·운영할 지자체와 민간 운영주체를 선정하기로 하였지만,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서울혁신파크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3개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혁신파크는 2015년 4월에 개소하여 사업의 실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울혁신파크의 개소·운영은 부지선정, 중간지원조직, 지역사회 혁신활동가의 존재,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에 기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혁신파크의 추진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혁신파크 개요]

구분	주요내용
개념	“혁신가에게는, 시민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플랫폼” “시민에게는, 특별한 배움과 놀이가 있는 창의공원”
위치 및 면적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구 질병관리본부 부지), 연면적 48,817.39㎡
연혁	2015.4월 개소 → 2017.7월 추가시설(혁신랩·도서관·레지던스) 준공
입주단체 및 입주인원수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등 250여개 단체 1,100여명 입주
중간지원조직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예산 (2017년)	8,517백만원(인건비 2,708, 사업비 3,352, 운영비 2,457 / 전액 시비)
주요사업	- 리빙랩 프로젝트, 입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협력 사업, 사회혁신 정책연구 및 사례축적
성과	2015.4월 개소 이후 빠른 시간안에 다양한 혁신단체 유치, ‘협치’ 및 ‘혁신’의 중심지로서 지명도 획득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감안한 적정한 사업비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말에 각 지역 혁신파크를 운영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 2018년 6월까지 지자체 예산확보, 혁신파크 조성, 입주단체 모집 등을 수행하며, 2018년 하반기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플랫폼을 개소할 계획이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 추진일정]

추진시기	추진일정
2017.10월 초	사업자 선정 워크숍 개최, 예비사업자 1차 선정(7개 팀 내외)
2017.10월~2018.1월	예비사업자들이 2018년 혁신파크 운영계획 수립
2018.1월 말	최종 사업자 선정
2018.2월~6월	지자체 예산확보, 혁신파크 조성, 입주단체 모집 등
2018 하반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플랫폼 개소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플랫폼의 인건비를 2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소당 15명의 1년 연봉을 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플랫폼의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개소당 인원	산출내역	2018 예산안
팀원급(6급상당)	9명	45,000천원×9명×3개소	1,215
팀장급(5급상당)	4명	54,000천원×4명×3개소	648
과장급(4급상당)	1명	65,000천원×1명×3개소	195
센터장(3급상당)	1명	85,000천원×1명×3개소	255
합계	15명	-	2,250

자료: 행정안전부

가. 현황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¹⁾은 시민의 직접참여 욕구와 우수한 역량 및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를 창의적·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이며, 예산안은 140억원이다.

[2018년도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0	0	0	14,000	14,00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세부적으로는 과제 및 해결방안을 사전에 지정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획형 프로젝트에 115억원, 문제정의, 해결방안 도출, 문제해결 등 전 과정을 공모하는 공모형 프로젝트에 25억원이 편성되었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8-300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대상과제 성격	산출내역	2018년 예산안
기획형 프로젝트	과제 및 해결방안을 사전에 지정, 문제해결과정에 시민참여	2,300백만원×5개 과제	11,500
공모형 프로젝트	문제정의, 해결방안 도출, 문제해결 등 전 과정을 공모	아이디어 접수 홍보	50
		아이디어 발전(오픈 테이블)	180
		오픈랩 구축	270
		20개 과제 지원(과제당 차등지원)	1,500
		공개 발표·선정, 성과공유	500
		소 계	2,500
합 계			14,000

자료: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의 대상은 국가·시장이 이미 해결에 실패한 과제이면서,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소외받고 있는 과제, 기존 중앙집권형 해결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과제 등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과 공모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며, 행정안전부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예산·전문인력 지원·제도개선 등을 수행한다.

나. 분석의견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획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형 프로젝트는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와 해결방안을 시민들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도록 하며, 성과물은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7년 11월 중순까지 권역별 국민의견 수렴, 광화문 1번가를 통한 시민제안 접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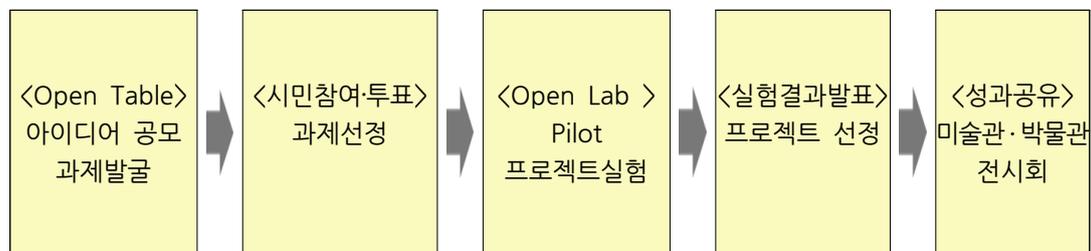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기획형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형 프로젝트로 추진할 과제와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올해 연말까지 발굴·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형 프로젝트는 5개 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관련 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모형 프로젝트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의 차별화 또는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모형 프로젝트는 오픈테이블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참여 및 투표로 과제를 선정하고 오픈랩에서 파일럿 성격의 프로젝트 실험을 실시하며,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본격 추진할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사업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형 프로젝트 사업진행방식]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사업진행방식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의 공모사업(이하 “리빙랩 프로젝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모형 프로젝트는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되어 행정안전부가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며,²⁾ 리빙랩 프로젝트는 지자체경상보조(330-01목)로 편성되어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공모형 프로젝트와 리빙랩 프로젝트 모두 기술·제품·정책·서비스 개발

2)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사회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시민·전문가 토론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형태로 이를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과제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모형 프로젝트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의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모형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항목	주요내용	2018 예산안
아이디어 접수 홍보	· 디자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플랫폼 구축(접수, 토론 등)	50
아이디어 발전	· 난제해결 오픈테이블 - 3백만원×50개소 = 150백만원 · 알쓸신잡(집중형) - 3백만원×10개과제 = 30백만원	180
Open Lab 구축	· 창작공간 조성지원(컨테이너 제작 리폼) - 7백만원×10개 = 70백만원 · 3D프린터, IoT센서 등 장비지원 - 20백만원×10개 = 200백만원	270
과제지원	· 20개과제 당 10백만원 ~ 100백만원 차등지원	1,500
공개 발표·선정	· 과제 선정(행사) - 50백만원×1식 = 50백만원 · 최종 과제 발표(행사) ※대통령행사로 기획 - 150백만원×1식 = 150백만원	200
성과공유	· 현대미술관·과학관 등 성과전시물 설치(연중)	300
합 계		2,500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¹⁾ 사업은 소방, 경찰, 해경, 군 등 재난 관련 핵심기관 8대 분야²⁾ 333개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자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1,217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년		2017년 예산액(A)	2018년 편성액(B)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B-A	증감률
재난안전통신망구축	24,280	24,268	1,760	121,794	120,034	6,820.1
구축비	23,905	23,905	(8,733)	117,146	117,146	-
운영비	375	363	1,760	4,648	2,888	164.1

주: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됨(2016. 11.~)에 따라 2017년 예산에 구축비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목적예비비 87억 3,300만원을 확보(2017. 7. 4.)하여 현재 보강사업을 추진 중임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은 PS-LTE³⁾ 기술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총사업비 345억원, 2015. 11.~2016. 6.)으로 강릉·평창·정선 지역에 일부 구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 1단계 사업의 구축대상지역은 중부권 5개 시·도(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다. 한편, 9월 현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특별보강 사업이 진행 중으로, 재원은 목적예비비 87억 3,300만원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3033-500

2) 소방, 경찰, 해경, 군, 지자체, 전기안전, 가스안전, 의료 분야

3)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는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말하며 일반적인 LTE에 무선통신기능이 추가된다. 2014년 11월 舊 국무총리실 주 파수심의위원회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대역으로 700MHz대 중 20MHz(718~728, 773~783)를 배분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시범사업	평창동계 올림픽 특별 보강 사업	본 사업 1단계 (중부권)	본 사업 2단계 (남부권)	본 사업 3단계 (수도권)	보완 및 운영
강릉, 평창, 정선	강릉, 평창, 정선 등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2018년 예산안 1,217억 9,400만원은 구축비 1,171억 4,600만원, 운영비 46억 4,800만원으로 구성된다.

구축비 중 주제어장치 예산은 현재 운영 중인 제1운영센터의 장비구축을 위해 21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지국장치 예산은 고정기지국 무선시스템(철탑, 안테나 등 3,271개) 설치, 기지국 제어장치(538개) 및 기지국 중계기(490개) 설치, 이동기지국(19개) 설치 비용으로 88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외에 건축설계 및 감리, 통신장비 감리, 인증비 등으로 용역비 3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운영비는 제1운영센터 운영비(장비유지보수 및 기지국 임차료), 상용망 이용료 등 46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내역		예산안
구축비	제1운영센터 주제어장치	코어망장비	11,178
		응용시스템	10,457
	기지국장치	고정기지국(RU, 3,271개) 설치 및 인허가 - 철탑, 안테나, 무선장치 등	64,200
		기지국 제어장치 설치(DU, 538개)	15,497
		기지국 중계기 설치(490개)	6,137
		이동기지국 설치(19개)	2,326
	용역비	주제어장치 및 기지국 장치 통신감리	1,142
		통신망 납품장비 품질인증 및 보안성 검증	1,041
		재난망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비	771
		조달위탁	444
	제2운영센터 신축	부지매입	1,500
		시공	2,310
		설계 및 감리	143
소계			117,146
운영비	제1운영센터 운영비(유지보수, 공공요금, 임차료 등)		1,247
	상용망 이용료		60
	전용회선 사용료		2,761
	사업관리비(무선국·단말기 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 등)		580
소계			4,648
계			121,794

주: RU(Radio Unit)와 DU(Digital Unit)는 기지국의 구성장비로서 RU는 무선전파를 송·수신하여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안테나부 장비이며, DU는 RU와 연결된 데이터부 장비로서 무선전파를 디지털화하여 처리하는 장비임

자료: 행정안전부

3-1. 총사업비 검토 결과에 기반한 사업 추진 필요

가. 현황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은 당초 2014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2018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2014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시범사업 검증결과가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과 달라짐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⁵⁾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⁶⁾

통신망 구축사업의 주요 사업비는 네트워크 및 단말기의 기지국 장비 설치비용인데, 시범사업의 검증결과상 전파 도달거리는 1.34km로서 ISP에서 예상한 3.3km의 4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면적 커버리지⁷⁾는 전체 면적 대비 33.3%로서 ISP 예상 수치인 89.5%에 비해 56.2%p 낮게 구현되었다.

- 4)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 연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지침) 제49조의2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 6)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여 LG CNS 컨소시엄이 수행하였으며, 2015년 3월 완료되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범사업(강릉·평창·정선)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결과가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과 달라 2016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수행)가 실시되었으며 2017년 9월 현재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은 시범사업 운영비만 1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축비는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시범사업 보강을 위해 목적예비비 87억 3,300만원이 배정되었다.
- 7) 커버리지(coverage)는 기지국에 단말기와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검증결과	ISP 예상
전파 도달거리	1.34km	3.3km
면적 커버리지	33.3%	89.5%

자료: 행정안전부

ISP 예상치가 실제 검증결과와 달라진 이유는 산악지형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 사업 ISP는 셀 커버리지 적용기준을 도심, 도심외곽, 농어촌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전국 전용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 수량을 최종 산정하였는데, 산악지형과 같이 장애물이 많아 전파 도달거리가 축소되는 지형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ISP 셀 커버리지 적용기준 및 최종 기지국 산출량]

	지형별 셀 커버리지 적용 기준			최종 기지국 산출량
	도심	도심외곽	농어촌	
셀 커버리지(반경)	0.7km	1.4km	3.3km	11,693개

주: 셀은 하나의 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당된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셀 커버리지는 1개 기지국의 평균적인 커버리지를 말함

자료: 행정안전부

이로 인해 시범사업 지역인 평창, 강릉, 정선은 80% 이상이 산악지형임에도 불구하고 ISP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을 대부분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이 기준에 따라 기지국을 설계하였으며, 실제 면적 커버리지는 ISP 예상치보다 낮게 구현되었다.

한편, 망 커버리지 면적 축소에 따른 음영지역⁸⁾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기지국 장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16년 11월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3개년(2015~2017년) 계획으로 추진된 동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에 본사업 1단계 사업비가 편성된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10년간 운영비를 포함하여 약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ISP가 부실하게 수행되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닌 시범사업 검증결과에 따른 변경계획안에 의거, 1단계 본사업 구축비를 예산안에 편

8) 음영지역은 장애물로 인하여 전파가 전달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성하였으나 동 변경계획안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범사업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변경계획안은 예산절감을 위해 상용망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1단계 본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동 계획안에 따르면 구축비 및 10년간 운영비를 1조 9,61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ISP 대비 658억원(3.5%)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국면적 커버리지 차이(56.2%p)에 비추어 볼 때 증액 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다변화하였는데, 이에 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커버리지 목표를 살펴보면, ISP에서는 국토면적의 89.5%를 통신망 커버리지로 설정하였으나, 변경계획안에서는 기반시설 및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커버리지 목표를 국토면적 40.5%로 조정하였고, 기타 면적은 상용망, 이동기지국, 기타망 등을 활용한 “All-4-one” 전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All-4-one 전략에 따른 커버리지 구현계획]

	국가 기반시설	도 로	인구 밀집지역	산 지	농어업 지역	실내/ 지하	해 상	철 도
고정 기지국	◎	◎	◎	○ (도로 주변)	○ (도로 주변)	○ (주요 시설)	-	-
상용망	-	○	-	○	◎	◎	-	-
이동 기지국	-	-	-	◎	○	○	◎	-
기타망	-	-	-	○ 철도망	○ 철도망	○ UHF, 철도망	○ 해상망	◎ 철도망, TRS

주: ◎는 주력, ○는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인프라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변경계획안 주요내용]

		ISP	변경계획안
사업설계		고정기지국 위주 설계 (다양한 방법은 시범사업 이후 적용)	“All-4-0ne”전략 ① 고정기지국, ② 상용망, ③ 이동 기지국(선박, 차량, 휴대형) ④기타망 (기존망, 위성망 등) 활용
고정 기지국 커버 리지	설치 지역	재난망 목적을 고려, 전국대상 (국토면적 89.5%, 하천·수로·유지 등 제외)	국가기반시설·도로·인구밀집지역 우선 설치(국토면적 40.5% 인구 대비 99%, 상용망 대비 89%)
	설계 방법	도심(0.7km)·도심외곽(1.4km)·농어 촌(3.3km)의 전파도달거리에 따른 평면적 설계	밀집도심(0.3km)과 산악(1.7km) 세분화 전국 모든 지형·건축물 고려, 3차원 설계
	설계 결과	11,693개소	15,447개소 (중계기 2080개, 이동기지국 310개 별도)
총사업비		1조 8,953억원 - 구축비 10,442억원 - 10년간 운영비 8,511억원	1조 9,611억원 - 구축비 9,688억원 - 10년간 운영비 9,923억원
사업기간		3년간(2015~2017년) 시범 → 확산(9개 시도) → 완료(8개)	5년간(2015~2019년) 시범 → 본사업 1단계(5개) → 2단계(9개) → 3단계(3개)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용망의 국토면적 커버리지를 대폭 축소(89.5%→40.5%)하는 대신 국가주요시설, 인구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정기지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상용망을 대폭 활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용망 연계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실내사고 발생 시 통신망 유지에 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은 옥외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복합건물이나 지하구조물, 장거리터널 등 옥외 전용망 전파가 차단되는 환경에서는 기존 건물에 설치된 상용망 중계기를 활용하여 통신이 유지된다. 그런데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한 건물 내부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시 전원 차단 또는 중계기 전소 등으로 인해 상용망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

9) 상용망(Commercial Network)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통신망을 가리키며, 이와 대비하여 전용망(Dedicated Network)은 특정 목적으로 구축되고 사용되는 통신망을 가리킨다.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¹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소방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UHF통신이 가능하나, PS-LTE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건물 내 상용망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활용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동기지국(차량형, 휴대형) 및 UHF 등 기존 통신망을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화재건수는 43,413건으로 하루 평균 약 12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배치되는 차량형 이동기지국(1대)과 휴대형 이동기지국(1~2대)만으로 안정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기관은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화재건물 내부에서의 통신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차량형 이동기지국 동반 여부에 관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교통이 혼잡할 경우 차량형 이동기지국의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휴대형 이동기지국은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배낭형 이동기지국을 말하는데, 화재현장에 통신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용망에서 상용망으로, 혹은 상용망에서 전용망으로 망연계(RAN Sharing)할 경우에 일정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주요 수요기관은 경찰·군 등 보안요구 수준이 높은 기관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보안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상용망을 활용할 경우 상용망 트래픽이 혼용되므로 보안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토에 따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보안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5. 소화활동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재난안전통신망 단일망 구축은 현재 각 재난 관련 기관에서 활용하는 통신망 및 단말기가 각각 운영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수요기관 구성원들에게 재난안전통신망이 기존망보다 우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용망 활용에 따른 안정성, 보안성 등의 한계로 인해 수요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기존 망·단말기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 통합망 구축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상용망 활용에 대해 수요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경계획안은 연간 운영비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구축비와 운영비(10년분)는 1조 9,611억원으로 ISP 수립시 추정된 1조 8,953억원에 비해 658억원 증가하였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축비는 9,688억원으로 ISP 대비 754억원 감소하였으나, 운영비는 9,923억원으로 ISP 대비 1,412억원 증가하였다.

[소요예산 변경 개요]

(단위: 억원)

		ISP		변경계획안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구 축 비	주제어 시스템	운영센터 2개소	1,148	운영센터 2개소	1,041
	기지국(고정/이동)	11,797개소	4,102	17,837개소	4,355
	단말기	213,438대	4,798	243,823대	4,133
	기타	-	394	-	159
	소계			10,442	-
운 영 비	운영센터 비용	-	3,427	-	3,772
	회선임차료	9,270회선	5,084	15,447회선	5,797
	상용망 이용료	-	0	243,823대	349
	사업관리비	-	0	-	5
	소계			8,511	-
계			18,953		19,611

주: 1. 운영비는 10년간 소요되는 운영비를 계상한 수치임

2. 변경계획안 내 단말기 수요량 및 소요예산은 현재 2026년까지 각각 241,614대, 4,036억원으로 재변경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우선 구축비를 살펴보면, 기지국(고정/이동)이 6,040개 증가하였음에도 소요예산이 253억원 증가에 그친 것은 주요 활동지역에 기지국이 구축됨으로 인해 기존 철탑을 활용한 것에 기인한다. 단말기의 경우 수요량이 30,382개 증가하였음에도 소요예산이 665억원 감소한 것은 단말기 예상가격 조정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형(개당 101만원) 단말기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¹¹⁾

한편 운영비의 증가는 주로 회선 임차료 및 상용망 이용료에 의한 것이다. 회선 임차료는 운영센터와 기지국, 기지국 간 물리적 회선연결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을 임차하는 비용이다. ISP와 비교하여 변경계획안의 회선 임차료가 증가한 것은 백본링¹²⁾ 임차비용 때문인데, 당초 ISP에서는 백본링을 자가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백본링 임차비용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변경계획안은 상용망의 백본링을 임차활용함에 따라 2020년 이후 임차비용은 매년 99억원씩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상용망 이용료의 경우 ISP에서는 전용망 중심으로 설계되어 상용망 이용료에 대한 예산 소요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변경계획안은 상용망 활용도를 높임에 따라 2020년 이후 상용망 이용료를 매년 5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변경계획안은 상용망 활용도를 높임에 따라 구축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운영비는 ISP 대비 연간 14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0년간 총사업비는 ISP 대비 658억원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으나,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전용망 구축비용과 상용망 임차비용 등에 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용망 연계 수요가 커짐에 따른 연계비용 및 상용망 이용료를 적정규모로 산출하여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1) 단말기는 스마트폰형(101만원), 무전기형(141만원), 차량형(462만원), 고정형(322만원) 등 4가지로 분류된다.

12) 백본링(Backbone Ring)은 운영센터와 디지털유닛(DU: Digital Unit)의 회선구간을 말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기간망으로서 권역링과 광역링을 의미한다.

3-2.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계획 보완 필요

가. 현황

현재 각 기관의 재난통신 무선인프라는 TRS, VHF/UHF, 위성망 등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우선 디지털 TRS는 유럽 표준 기술 방식의 TETRA와 북미지역에서 주로 활용되는 모토로라사가 개발한 iDEN으로 구분되는데 TETRA는 군, 서울·경기 소방본부 및 6개 광역시 경찰청,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iDEN은 해경, 의료기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VHF 및 UHF와 같은 아날로그 통신망 및 위성망도 군, 소방, 해경, 경찰, 지자체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각의 단말기를 운용하고 있다.

[재난 관련 기관 무선통신망 운용 현황]

통신 인프라		통신망 설명	운영기관	단말기보유량 (추정치)
TRS	TETRA	유럽 표준 기술의 자가망 디지털 TRS ※ 서울·경기(2008년 소방), 6개 광역시 (2002년 경찰) 구축	군, 소방, 경찰, 지자체, 한전 (285개 기관)	76,680대
	iDEN	모토로라社 비표준 기술의 상용망 디지털 TRS	해경, 의료, 지자체 (263개 기관)	12,357대
VHF / UHF		아날로그 무전기 방식의 자가망 ※ 강원, 충남 등 9개 시·도를 위주로 재난 기관 개별 구축	군, 소방, 해경, 경찰, 지자체 (289개 기관)	113,879대
위성망		전파도달이 어려운 해상, 산악, 도서지역 중심으로 활용	소방, 해경, 지자체 (272개 기관)	967대
계				203,883대

주: 1.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는 소수의 주파수를 다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시스템으로서 직접적인 음성통화서비스보다는 지령전달을 위한 통신으로 적합하며, 초기비용 및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됨

2. VHF(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30~300MHz)/UHF(Ultra High Frequency, 극초단파, 300MHz~3GHz)는 각각 주파수 대역을 말하는데, 주파수가 높음에 따라 파장이 짧기 때문에 송·수신장치의 소형화가 가능하여 휴대용 아날로그무전기 주파수대역으로 사용됨

자료: 행정안전부

각각의 통신망은 기술방식 및 주파수대역이 달라 서로 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여러 대의 단말기를 휴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단일망 구축을 통해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 분석의견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단말기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수요는 총 241,614대, 관련 예산은 약 4,0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별 단말기 보급계획(수요조사 결과)]

(단위: 대, 백만원)

구분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 계	수량	241,614	2,496	0	3,752	37,175	81,300	88,561	15,408	8,789	2,648	516	969
	금액	403,621	3,465	0	6,557	65,653	142,482	136,956	25,270	15,784	5,421	699	1,335
경찰	수량	150,568	0	0	0	22,298	60,271	67,999	0	0	0	0	0
	금액	249,909	0	0	0	40,344	107,308	102,257	0	0	0	0	0
소방 (국가)	수량	662	0	0	46	296	225	85	10	0	0	0	0
	금액	1,346	0	0	75	511	634	116	10	0	0	0	0
소방 (지방)	수량	40,769	0	0	1,243	4,934	9,535	9,464	8,124	5,997	1,472	0	0
	금액	84,102	0	0	3,012	10,316	18,850	19,540	16,491	12,087	3,807	0	0
해경	수량	7,869	0	0	459	1,302	1,578	1,570	1,567	1,114	279	0	0
	금액	11,593	0	0	678	1,930	2,335	2,309	2,298	1,632	410	0	0
군	수량	15,607	0	0	563	1,958	4,530	5,412	3,144	0	0	0	0
	금액	16,860	0	0	569	1,978	4,624	6,514	3,175	0	0	0	0
의료	수량	4,018	0	0	230	658	800	800	800	580	150	0	0
	금액	4,058	0	0	232	665	808	808	808	586	152	0	0
지자체	수량	16,700	0	0	977	4,845	3,161	2,624	1,763	1,098	747	516	969
	금액	25,326	0	0	1,401	7,774	5,064	4,034	2,487	1,480	1,052	699	1,335
전기	수량	2,833	0	0	234	867	1,179	553	0	0	0	0	0
	금액	6,870	0	0	590	2,118	2,837	1,324	0	0	0	0	0
가스	수량	92	0	0	0	17	21	54	0	0	0	0	0
	금액	93	0	0	0	17	21	55	0	0	0	0	0
운영 센터	수량	2,496	2,496	0	0	0	0	0	0	0	0	0	0
	금액	3,465	3,465	0	0	0	0	0	0	0	0	0	0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 단말기 수요량은 소방 46대(7,500만원), 해경 459대(6억 7,800만원), 군 563대(5억 6,9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3억 2,200만원이다. 국방부·해양경찰청·소방청이 실제 편성한 2018년도 단말기 예산안은 총 11억 5,800만원으로 소방청 7,400만원, 해양경찰청 6억 7,300만원, 국방부 4억 1,100만원이다.¹³⁾

[부처별 2018년도 단말기 보급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 내역	예산액
해양경찰청	통신위성장비관리 (일반회계 4134-300)	·재난안전통신단말기 보급: 336대 × 200만원	673
소방청	중앙119특수 구조대지원 (충청강원대,호남대) (일반회계 1171-303)	·재난안전통신단말기 보급: 46대 × 160만원	74
국방부	예비전력운영지원 (일반회계 2632-305)	·재난안전통신단말기 보급: 411대 × 100만원	411
계			1,15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8년도 단말기 수요량은 지자체 977대, 시·도별 지역소방본부 1,243대로 총 2,220대이며, 지역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요량은 각각 40,769개, 16,700개로 경찰청(150,568개) 다음으로 많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역소방본부 포함)의 단말기 보급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¹⁴⁾

한편,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재난상황에 필요한 특수기능을 요구함에 따라 칩셋 등의 하드웨어가 별도로 제작되고 있다. 그런데 본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음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의 공정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범사업에서는 4개 제조사가 참여하여 단말기를 공급하였으나, 현재 총사업비 검토 지연에 따라 단

13)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분은 해당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소관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였다.

14)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전기·가스)의 보급계획 검토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말기 제조사들은 구체적인 제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형 및 고정형 단말기는 기존에 개발·납품된 적이 없어 단말기 보급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유형별 제원]

구분	휴대용		고정용	차량용
	무전기 타입	스마트폰 타입		
외관				
구성품	단독 본체형	단독 본체형	본체 + PC 콘솔	본체 + PC 콘솔
출력	23dBm	23dBm	31dBm	31dBm
방수/방진	IP67	IP55 혹은 IP67	-	-
화면크기	2~3인치	5~6인치	7인치 이상	7인치 이상
동작온도	-20 ~ +60℃	-10 ~ +55℃	-20 ~ +60℃	-20 ~ +60℃
배터리	3,000 mAh 이상	2,700 mAh 이상	별도 전원	별도 전원
제조사 (시범사업)	에이엠텔레콤	삼성전자 팬택 사이버텔브릿지		

자료: 행정안전부

3-3. 제2운영센터 신축계획 보완 필요

가. 현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는 주제어장치(코어망장비 및 응용시스템)를 통해 관할범위 내 단말기의 통신을 관제·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전용망을 관제·운영하기 위해 2개의 운영센터를 구축할 계획인데, 재난안전통신망 제1운영센터는 2016년 정부서울청사 내에 기구축되었으며, 제2운영센터는 2018년 구축예정으로 이를 위한 사업비 39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건립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내역	예산안	산출 근거
부지매입	1,500	연면적 1,000㎡(약 300평) 규모, 평당 5백만원
건축시공	2,310	1㎡당 231만원 적용(조달청“2015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건축설계	109	2,310 * 4.72%(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기준요율)
건축감리	34	2,310 * 1.48%(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기준요율)
계	3,953	

자료: 행정안전부

각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는 400,000개의 단말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설계하되 확장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총 단말기 수요량은 241,614대로서 운영센터 1개소에서도 전국 통신망을 관제할 수 있는 수준이나 상호 백업 기능 등 안정성·신뢰성을 고려하여 2개소 운영을 계획한 것이다.

나. 분석의견

제2운영센터 관할범위 조정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운영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를 관할할 계획으로, 제1운영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5개 시·도를 관할하는 데에 비해 관할범위가 넓다. 특히 제1단계 사업 대상지역인 대전·충북·충남 지역이 관할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초 본사업 추진방안에서 제1운영센터의 관할범위를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등 8개 시·도로 지정하였는데, 이후 계획을 변경하여 대전 및 충청 지역을 제2운영센터의 관할범위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관할범위]

(단위: 대)

구분		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소재지		정부서울청사 19층	검토중
관할범위	중부	5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1센터 백업
	서부	2센터 백업	7개 시·도 (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동부	2센터 백업	5개 시·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별 단말기 수요량	계	107,075	134,539
	서울	42,130	-
	부산	-	16,379
	대구	-	9,846
	인천	13,288	-
	광주	-	6,658
	대전	-	6,813
	울산	-	7,090
	세종	1,286	-
	경기	36,430	-
	강원	13,941	-
	충북	-	10,346
	충남	-	10,904
	전북	-	11,281
	전남	-	19,619
	경북	-	11,665
	경남	-	18,654
제주	-	5,284	

주: 1. 현재 시범사업(운영센터)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강원지역에 포함

2. 음영부분은 2018년 1단계 본사업 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제2운영센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정부청사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청사 내 공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즉, 현재 소재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제2운영센터 건립 사업비는 2018년도 준공을 전제로 설계비를 비롯한 공사비, 감리비 등이 모두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2운영센터의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자산취득비(430-01목)로 편성하였는데, 동 예산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적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인 건설보상비(410-00목)로 편성되어야 한다.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¹⁾은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및 동네 자치 활성화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읍면동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이며, 예산안은 205억 6,2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혁신읍면동 기획 및 홍보가 8억 4,000만원, 현장 복지인력 배치 및 점검이 1억 2,200만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이 76억원,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사업 지원이 90억원, 혁신읍면동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15억 3,600만원, 혁신읍면동 활성화 지원이 14억 6,400만원이다.

혁신읍면동 기획 및 홍보는 혁신읍면동에 대한 대국민 및 온·오프라인 정책홍보와 각종 매뉴얼 제작 등의 사업이다. 현장복지인력 배치 및 점검은 복지인력 적정업무량 실태 분석 연구용역과 복지인력 확충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이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주도 마을계획 실행예산 지원 등의 사업이며,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지원은 읍면동사무소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읍면동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혁신읍면동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마을리더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며, 혁신읍면동 활성화 지원은 혁신읍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군구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0	0	0	20,562	20,562	순증
혁신읍면동 기획 및 홍보	0	0	0	840	840	순증
현장 복지인력 배치 및 점검	0	0	0	122	122	순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	0	0	0	7,600	7,600	순증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사업 지원	0	0	0	9,000	9,000	순증
혁신읍면동 중간지원조직 운영	0	0	0	1,536	1,536	순증
혁신읍면동 활성화 지원	0	0	0	1,464	1,464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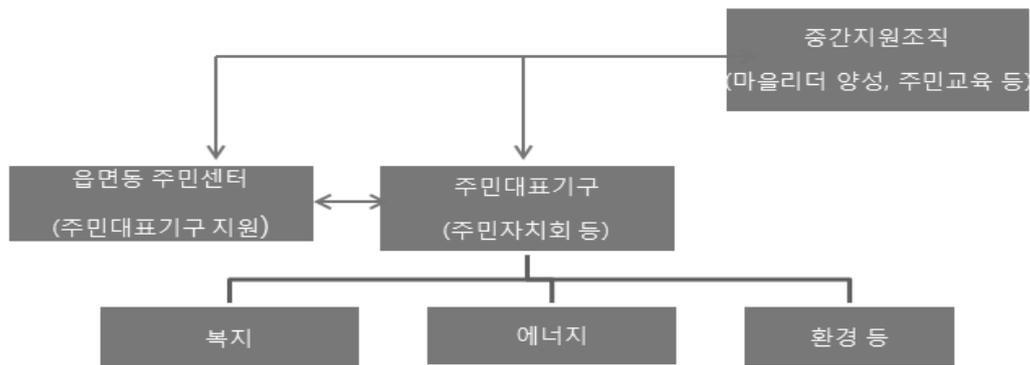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58-300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은 읍면동의 기능을 혁신하여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마을공동체 및 동네자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읍면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참여 플랫폼으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의하면, 주민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가 마을단위의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이 부여되며 복지·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마을의제 발굴 등의 분과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주민대표기구를 지원하는 공간적·조직적 행정조직이고,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시·군·구에 두어 주민대표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읍면동 조직 체계도]



* 마을의제 발굴 등 분과활동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을 2018년에 200여 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전국 읍면동의 30%인 약 1,500개의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전국 3,500여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지자체경상보조(330-03목)이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체계개편은 역대정부에서도 추진하였던 것으로서 국민의정부(1998~2002년)는 행정계층 단순화를 위한 ‘읍면동 기능전환’을, 참여정부(2003~2007년)는 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이명박정부(2008~2012년)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력배치기준 마련 등을, 박근혜정부(2013~2017년)는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역대정부의 읍면동 체계개편 및 사업내용]

	국민의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2017)
사업명 (주관부처)	읍면동 기능전환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개편 (행정자치부)	별도 사업 없음	읍면동 복지허브화 (보건복지부)
추진체계	읍면동 기능전환 전담 추진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개편 추진단	별도 추진체계 없음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
사업목적	행정계층 단순화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으로 전환
사업내용	- 지방행정 계층 축소 -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 읍면동 사무조정 - 동사무소 명칭 변경 등	사회복지직인력배치 기준 마련 등	- 복지 원스톱 서비스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자료: 행정안전부

4-1.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 협치기구로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마을 스스로가 마을발전의 비전과 공동체사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 사업에 7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20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등에 운영비(월 100만원)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개최(연 2회, 600만원)를 지원하며, 주민자치회 등의 간사 인력운영비(연 2,500만원)를 지원하고, 주민주도 마을계획의 실행예산(주민자치회당 3,000만원)을 지원하며, 주민복지단 등 주민모임을 지원(월 25만원)하는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2018 예산안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1백만원×12월×200개 읍면동×50%	1,200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3백만원×2회×200개 읍면동×50%	600
주민자치회 등 간사 인력운영비 지원	25백만원×1명×200개 읍면동×50%	2,500
주민주도 마을계획 실행예산 지원	30백만원×200개 읍면동×50%	3,000
주민복지단 등 주민모임 지원	250천원×12월×200개 읍면동×50%	300
합 계		7,60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현행 법률상 주민자치회 기능의 한계 및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플랫폼의 핵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주민 생활편의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읍면동장과 협의·심의해야 하며, 자체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열어
서 이를 추진받아야 하고, 마을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27조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²⁾ 제28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³⁾ 현행
법률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참여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 사무의 처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2,862개의 읍면동에 주민
자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양자의 역할과 기능상 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
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주민대표기구)	주민자치위원회 (기존 2,862개 읍면동)
법적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
모형도		-
성격	읍면동 민관협치기구(사무기구가 아님)	읍면동 자문기구
위촉	시군구청장이 위촉	읍면동장이 위촉
구성	공개모집, 이통장 연합회 추천 등 (지방의원 참여 배제)	각급 기관이나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지방의원 참여 가능)
기능	- 주민 생활편의 관련 업무 협의·심의 -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업무위탁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운영·관리 등) -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사무 (자율봉사단 운영, 벼룩시장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심의
재정	- 자체재원: 수익·위탁사업 수입 등 - 의존재원: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등	- 읍면동 지원금
지자체와의 관계	- 읍면동사무소와 별개로 설치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쉽 구축	- 읍면동사무소 일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 -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또한 행정안전부(구 안전행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⁴⁾

먼저 20~30명에 이르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주체가 불분명하여 사실상 읍면동장이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대표성과 읍면동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읍면동장과 읍면동의 업무를 협의·심의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집행권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고, 읍면동장과의 의견차이로 협의·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을계획

4) 이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2015.1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김필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설선미, 오제일”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협의·심의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의존하게 되는 점이나 주민자치회 재원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게 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013~2016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및 문제점]

구분	시범사업 실태	문제점(한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	-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를 추천, 기초단체장이 위촉	-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단위가 불분명 -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미확보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역량	- 읍면동사무의 협의·심의 기능부여 - 국가 또는 지자체사무의 위탁	- 위원의 권한과 역량 부족 - 책임의식 부족
주민자치회 사업범위	- 협의·심의사업, 위탁사업, 주민 자치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공무원에게 의존
주민자치회 재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 의존 (2018년부터는 국고보조금에 의존)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존재원 비중이 높고, 향후 예산 확보 불투명

자료: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2015.1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김필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실선미, 오재일”를 토대로 작성

따라서 주민참여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회가 행정혁신 및 마을공동체, 동네자치 활성화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 위원의 책임성 확보, 주민자치회의 사업범위, 주민자치회의 재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 사업비의 적정수준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9월 중 읍면동 기능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2017년 10월과 11월에 지자체 공모와 대상을 선정하고 2017년 12월 중 지자체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2018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운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 등을 거쳐야 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이후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실 마련, 간사 선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 사업비 중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된 주민자치회 운영비, 주민자치회 등 간사 인력운영비, 주민복지단 등 주민모임 지원 등의 내역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2.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사업 지원의 사업계획 보완필요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에 따른 읍면동 기능 변화를 반영하여 읍면동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자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90억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읍면동의 청사 또는 마을계획에 따른 유휴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개소당 9,0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간을 마을활력소로 명명하였다.

나. 분석의견

마을활력소 사업이 실제 주민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마을활력소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상 읍면동 선정 및 MP(Master Planner) 배정, 민관참여단 중심의 계획구상, 지자체의 사업시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통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마을활력소)의 추진절차]

사전준비(행안부) (1개월)	⇒ 사업구상(행안부·지자체) (1~2개월)	⇒ 사업시행(지자체) (3~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읍·면·동 선정 - 사전설명회 실시 - 대상지 공모·선정 • MP(Master Planner) 배정 - 공공건축가 배치 (해당 지자체 사업의 총괄 자문책임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력소 계획 구상 - 민관참여단 중심 방향수립 - 공무원·주민 의견수렴 • 참여자 모집·교육 - 참여주민 모집 - 방향, 사례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발주 - 컨셉 개발·발주 • 공사시공 및 감리 - 착공 및 준공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마을활력소 계획 구상시 민관참여단 중심으로 방향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민관참여단의 구성이나 민관참여단과 주민자치회와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다.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의 핵심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주민참여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민참여 플랫폼의 물리적 활동 공간이 마을활력소라고 보았을 때, 마을활력소의 공간구성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마을활력소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참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기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지원 사업¹⁾은 다수부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914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8억 7,700만원(27.6%) 감액되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이 884억 4,700만원,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이 30억원이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은 총 26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과제 지원사업이며, 전자정부사업 기반조성은 기존에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신규 내역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자정부지원	123,705	126,324	126,324	91,447	△34,877	△27.6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123,705	126,324	126,324	88,447	△37,877	△30.0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	0	0	0	3,000	3,00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에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과제인 계속과제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위주의 신규과제로 구분된다. 계속과제는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국가 마스터데이터 식별 및 관리체계 구축 등 11개 과제이며 2018년 예산안은 655억 7,400만원이다. 신규과제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ISP,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등 15개 과제이며, 2018년 예산안은 228억 7,300만원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31-500

[2018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부처	2018 예산안	
계속 (11)	범정부공동 인프라 구축 (2)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구축	행안부	3,376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행안부	7,800
	다수부처 공동이용 시스템 (7)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대법원, 국토부	3,635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행안부	5,028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행안부	2,160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법무부	17,398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행안부	4,940
		부패방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권익위	4,537
		재외공관 스마트 영사민원 포털시스템 구축	외교부	9,485
	범정부적 정책적용 (2)	국가 마스터데이터 식별 및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	5,915
전자인증 프레임워크 구축(3단계)		행안부	1,300	
신규 (15)	복합·혁신과제 (3)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 구조진단 및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행안부	1,330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ISP	법무부 등	2,322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대비실	1,500
	국민이 주인인 정부 (8)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1,000
		지능형 전자정부 표준플랫폼 체계 구축 ISP	행안부	1,800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권익위	3,914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행안부	1,625
		전자기록관리고도화 BPR/ISP	행안부	683
		전자민원서류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1,000
		데이터기반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현 ISP	행안부	500
		지능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	행안부	2,500
	더불어 잘사는 경제 (2)	국가전자조달 전면개편 BPR/ISP	조달청	2,804
		민·관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행안부	859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2)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500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	행안부	536
소계	총 26개 과제(계속 11개 65,574백만원, 신규 15개 22,873백만원)		88,447	
기반조성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		3,000	
총계			91,447	

자료: 행정안전부

5-1. 시스템 구축 전 관련 제도개선 선행 필요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부금 모집·활용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5억 원이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는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민발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제도’의 시행과 ‘지방의회 의안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5억 3,600만원이다.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은 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되는 사업의 정의, 타 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연차별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며, 시스템 구축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요 내용	2018년 예산안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대비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ISP수립	500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민발의 조례 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 및 ‘지방의회 의안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536
합 계		1,036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이므로,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자체에 기부금품을 기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기부금품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의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법 제정	이개호 (17.9.27)	- 지역 주민을 제외한 국민이 모든 지자체 대상 기부 가능 - 기부금 세금공제 범위 등 포함
기부금품법 개정	안호영 (16.8.16)	-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주민등록지로 등재된 지자체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 현행 기부금품법과 동일한 세금공제 적용
	전재수 (17.5.15)	-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20% 이하 지자체에 기부금 모집 허용 - 기부금 세금공제 범위 등 포함
	강효상 (17.6.27)	- 기부자의 출생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접수 허용 - 기부금 세금공제 범위 등 포함
	김광림 (17.8.9)	-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 지역의 발전 및 투자를 위한 기부금 모집·접수 가능 - 해당 시·군·구의 농산물, 특산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
	김두관 (17.9.14)	-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자체에게 기부금 모집·접수 허용 - 기부금 세금공제 범위 등 포함
소득세법 개정	홍의락 (17.6.1)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비수도권 지자체 세입으로 이전 신청 가능
	주승용 (17.9.29)	- 서울·광역시·경기도 거주자는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 신청 가능
지방세법 개정	박덕흠 (17.8.8)	-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가능
농어촌공동 모금법 제정	황주홍 (16.7.13)	-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 설립 및 기부금품 모집·접수 - 기부자가 지정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금품 배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허용기준, 세제혜택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사업은 법률 제·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발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제도²⁾를 본인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전자적 방식에 의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정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변화가 시스템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쇄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2. 국민참여 플랫폼 간 차별화 필요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과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은 국민신문고 민원의 급증 추세에 따라 업무효율화,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한 국민신문고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서 2018년 예산안은 39억 1,400만원이며,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은 국민소통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다수 국민들에게 친숙한 관계형 소셜미디어 형태의 국민참여 플랫폼(광화문 1번가)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예산안은 16억 2,500만원이다.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과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과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요 내용	2018년 예산안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국민신문고 민원의 급증 추세에 따라 업무효율화, 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	3,914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소셜미디어 형태의 국민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고도화	1,625
합 계		5,539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국민참여 플랫폼은 정책제안 및 국민제안의 기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 플랫폼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광화문 1번가’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약 7주간 총 16만 1,827건의 정책제안을 온라인상으로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다. 2018년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관리자기능 개발과 청원, 정책공모, 재능기부, 펀딩, 투표 등 다양한 국민참여 기능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상설운영 예정인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와 연계하기 위한 O2O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합·고도화하는 사업으로,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정책토론, 설문조사), 공익신고 등 4가지 기능을 가진 민원신청 온라인 플랫폼이며, 국민생각함은 국민제안(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숙성 등)과 정책토론의 기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로 기존의 국민제안 기능은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고 청원, 정책공모, 재능기부, 펀딩, 투표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신문고와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화문 1번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제안 대표브랜드로 ‘광화문 1번가’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원, 재능기부 등의 기능 추가만으로 국민제안과 정책참여라고 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국민신문고와 차별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기능의 운영계획 수립 등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황]

구분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주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정책공모, 정책토론, 청원·정책공모·재능기부·펀딩·투표, 온·오프라인 연계 등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정책토론, 설문조사), 공익신고	국민제안(아이디어 공모), 정책토론
2018년 고도화 사업내역	- 관리자기능개발 - 청원·정책공모 기능추가 - 재능기부·펀딩·투표 기능추가	-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서비스의 통합 - 타 행정데이터와의 통합적 분석방안 설계	

자료: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3) O2O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결하는 마케팅으로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교부세¹⁾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²⁾³⁾

[2018년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통교부세	35,023,661	37,577,539	39,222,628	42,485,450	3,262,822	8.3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33,282	464,877	485,228	525,593	40,365	8.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08,321	116,219	121,307	131,398	10,091	8.3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41,603	581,096	606,535	656,991	50,456	8.3
부동산교부세	1,445,711	1,532,835	1,532,835	1,780,100	247,265	16.1
소방안전교부세	414,700	458,815	458,815	398,120	△60,695	△13.2
합계	37,967,278	40,731,381	42,427,348	45,977,652	3,671,694	8.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의 2018년도 예산안은 45조 9,776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5,503억 400만원(8.4%) 증가하였다. 보통교부세는 42조 4,85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2,628억 2,200만원(8.3%) 증가하였고, 지역현안특별교부세가 5,255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3억 6,500만원(8.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가 1,313억 9,800만원으로 전년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 1) 코드: 일반회계 1600
- 2)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이며, 해당 재원의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로 배분된다. 특별교부세 총액의 재원배분은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재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다.
- 3) 2015년~2017년까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관이 구 국민안전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본부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소관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대비 100억 9,100만원(8.3%),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가 6,569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4억 5,600만원(8.3%) 증가하였다. 부동산교부세가 1조 7,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2억 6,500만원(16.1%) 증가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의 2018년도 예산안은 3,98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6억 9,500만원(13.2%)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내국세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도 종합부동산세의 세입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1% 증가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에는 담배판매량의 감소가 전망되어 그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예산안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2% 감소하였다.

6-1. 지방교부세 개편 현황과 개선과제

가. 현황

행정안전부는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반영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현재 보장수요 항목인 사회복지수요의 반영비율을 기존 20%에서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2016년 23%, 2017년 26%, 2018년 30%)하고, ② 성장촉진지역을 지역균형수요에 반영하며, ③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④ 보통교부세 수요자체노력 중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의 반영을 확대하며, ⑤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평가 대상을 국고보조사업, 출자출연제한 등으로 확대하며, ⑥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의 단계적 확대와 조정교부금 인상권고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지자체 가운데 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큰 자치구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교부세 개편에 의해 2017년 보통교부세 중 사회복지 보장수요액은 2015년에 비해 1조 4,447억원이 더 반영되었고, 2016년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반영액은 2015년에 비해 450억원이 더 반영되어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액에 반영되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보통교부세 보장수요의 사회복지 반영비율이 30%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보장수요액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부세 개편의 주요 내용]

계획	세부내용
사회복지수요 추가(보정수요) 반영 비율 단계적 확대	- 노인·아동·장애인·기초생활보장비 비율 확대(20%→30%)
지역균형수요 반영 확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 추가반영
조정교부금 인상권고	-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권고
보통교부세 수요·수입 인센티브(패널티) 반영 확대	-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의 반영 확대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반영 확대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 확대	- 국고보조사업,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 등 감액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반영 비율 확대	- 사회복지 반영비율의 확대(25%→3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개편 이후 사회복지 반영액 현황]

		2015(A)	2016	2017(B)	차이(B-A)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반영비율(%)	20.0	23.0	26.0	6
보정수요	사회복지 보정수요액(억원)	33,737	40,296	48,184	14,447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반영액(억원)	4,441	4,891	-	450

자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은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지자체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므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사회복지 분야 반영비율 확대 등은 이러한 원칙 내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자치단체별 기초수요액⁴⁾에 보정수요액과 자체노력을 추가하여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을 통해 보정수요액에 대한 사회복지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반영비율과 자체노력의 반영액을 확대하였다. 이 경우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균형수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자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되며,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등의 자체노력이 큰 지자체에게도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된다.

2017년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중 보정수요액의 반영액이 13조 2,654억 원으로 전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였고, 자체노력 반영액은 4,495억 원으로 전체의 0.6%였다. 이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초수요 비중도 2015년 82.6%에서 2017년 81.9%로 하락하였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구성 항목 및 주요 내역]

(단위: 억원, %)

	2015	2016	2017
기초수요	582,839	585,567	620,701
보정수요	120,270	137,904	132,654
자체노력	2,379	3,470	4,495
합 계	705,488	726,941	757,850
기초수요 비율	82.6	80.6	81.9
보정수요 비율	17.0	19.0	17.5
자체노력 비율	0.3	0.5	0.6

자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보통교부세는 사용의 목적과 내용에 조건을 달지 않는 일반재원으로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균형수요 및 자체노력의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일반재원이라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주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지방간 재원부담에 대한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4) 기초수요액은 각 지자체의 인구, 면적, 공무원수 등 기초적인 행정에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재원으로서의 보통교부세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복지수요, 지역균형수요 및 자체노력 반영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통교부세 수요·수입 인센티브의 반영비율 확대는 이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3가지 항목의 수요인센티브 반영비율을 확대하였다. 이는 3가지 항목의 절감을 유도하여 낭비성 예산지출을 줄이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반영비율 확대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⁵⁾간에 상쇄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행사·축제성경비나 지방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지출 항목을 총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의 수입인센티브 반영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체납액 축소는 경제상황과 제한된 징수인력 등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실적 향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

5) 수요인센티브의 반영 항목에는 반영비율을 확대할 계획인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이외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등이 있다.

6) 지방세 체납액 축소의 반영은 체납액 누계액의 과거 실적을 최근 실적과 비교하여 그 차액의 일정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전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등급반영률×180% 으로 산정된다.

6-2.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의 문제점

가. 현황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2018년 예산안은 3,98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6억 9,500만원 감소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에 도입되어, 2015~2017년까지 총 1조 1,876억원이 교부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시·도별 교부액은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도 40%, 재정여건 20%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text{시·도별 교부액} = \text{교부총액} \times [(\text{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times 40\%) + (\text{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도} \times 40\%) + (\text{재정여건} \times 20\%)]$$

자료: 행정안전부

2015~2017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052억원이 교부되어 가장 많은 금액이 교부되었고, 다음으로 강원도에 841억원, 경상북도에 804억원, 서울특별시 798억원, 전라남도에 761억원, 경상남도에 757억원 등이다.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억원)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서울	213	292	293	798 (6.7%)
부산	195	244	249	688 (5.8%)
대구	205	240	278	723 (6.1%)
인천	197	230	206	634 (5.3%)
광주	184	235	249	668 (5.6%)
대전	167	198	238	603 (5.1%)
울산	148	204	226	578 (4.9%)
세종	51	68	83	202 (1.7%)
경기	265	349	438	1,052 (8.9%)
강원	204	272	365	841 (7.1%)
충북	173	237	253	663 (5.6%)
충남	184	270	263	717 (6.0%)
전북	183	261	252	696 (5.9%)
전남	191	271	299	761 (6.4%)
경북	225	297	282	804 (6.8%)
경남	198	266	293	757 (5.4%)
제주	158	213	320	691 (5.8%)
총액	3,141	4,147	4,588	11,876(100.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이 되는 14개 지표들 중 일부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기준은 소방분야 기준(50%)과 안전분야 기준(50%)로 구분되며 총 14개 세부지표들이 적용되고 있다.

소방분야 기준에는 노후·부족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소모비용, 소방출동비용, 특정 소방대상물 수,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등 총 4개 지표가 적용되고 안전분야 기준에는 지방도로 위험도, 지방하천 위험도, 공유림 위험도, 안전지수 소요비용, 안전신고 비율,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안전지수 개선비용, 안전신고 개선을 등 총 8개 지표가 적용된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적정 사용률과 재정자주도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

구 분	소방분야 기준 (50%)	비율	안전분야 기준 (50%)	비율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40%)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모비용	14%	지방도로 위험도	7%
			지방하천 위험도	4%
	소방출동비율	3%	공유림 위험도	4%
			안전지수 소요비용	3%
	특정소방대상물 수	3%	안전신고 비율	2%
노력도(40%)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15%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12%
			안전지수 개선비용	2%
			안전신고 개선율	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재정여건(20%)	재정자주도(20%)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들 중 일부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체적인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은 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을 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으로 나눈 값이며,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은 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을 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으로 나눈 값이다.⁷⁾ 그런데 소방 세출결산과 안전 세출결산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이다. 즉, 소방 세출결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안전 세출결산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안전지수 개선비율과 안전신고 개선율,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역시 서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안전신고 개선율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지수 개선비율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안전시설 확충노력률이 커지게 되면 안전지수 개선비율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begin{aligned}
 \text{소방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
 7) \text{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 \frac{\text{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text{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end{aligned}$$

6-3.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성과관리 필요

가. 현 황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 재원은 특별교부세(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3%)의 50%이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항구복구,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등 3가지 사업에 교부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풍수해저감, 재난안전시설, 생활안전시설 등 3가지 부문으로 교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2015년에는 4,095억원, 2016년에는 4,259억원이 교부되었다.

[연도별, 시도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배분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풍수해 저감	재난안전 시설	생활안전 시설	소계	풍수해 저감	재난안전 시설	생활안전 시설	소계
서울	17	194	170	381	20	225	127	371
부산	74	171	50	296	52	175	36	262
대구	75	58	47	180	35	84	48	167
인천	41	91	51	183	30	123	47	200
광주	67	21	28	115	36	88	30	153
대전	46	53	39	138	17	78	20	115
울산	46	28	34	109	30	52	47	129
세종	35	0	1	36	20	13	9	42
경기	174	165	180	520	136	267	212	615
강원	186	92	13	290	71	184	31	285
충북	91	63	12	166	72	102	21	195
충남	121	93	24	239	138	128	25	292
전북	153	56	22	231	147	122	46	315
전남	250	95	43	387	163	177	23	363
경북	249	144	24	418	161	166	25	352
경남	204	84	50	338	150	143	30	323
제주	48	12	9	69	33	35	12	80
합계	1,878	1,419	798	4,095	1,309	2,162	789	4,259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시범·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범·공모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시범·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150억원), ‘특수재난 역량강화’(20억원),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51억원) 등의 시범·공모사업에 221억원을, 2017년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150억원을 교부하였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시범·공모사업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 금액
2016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지역별 5대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화재, 자살, 범죄, 감염병 등)	150
	특수재난 역량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수재난 분야에 대한 안전인프라 구축	20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	지자체 재난상황실 전용 영상회의시스템 보강 및 현장대응 매뉴얼 개발	51
	소계		221
2017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별 5대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화재, 자살, 범죄, 감염병 등)	150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사업들은 특별교부세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며 사후 평가결과도 공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⁸⁾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8)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있지만,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와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시범·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정책연구 계획 미흡

가. 현황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¹⁾은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이며 예산안은 4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회의체 운영경비 등이 편성된 일반수용비(210-01목)가 9억 7,400만원, 정책연구용역 등이 편성된 일반연구비(260-01목)가 10억원, 사무기기 및 회의장 임차료 등이 편성된 임차료(210-07목)가 10억 8,500만원이다.

[2018년도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0	0	0	4,409	4,409	순증
일반수용비(210-01목)	0	0	0	974	974	순증
일반연구비(260-01목)	0	0	0	1,000	1,000	순증
임차료(210-07목)	0	0	0	1,085	1,085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017년 9월 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과 100명 이내의 위원(임기 2년, 대통령이 임명·위촉), 2개의 연구단(국정과제지원단, 미래정책연구단), 5개의 분과위원회(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35-300

분권·균형발전, 평화번영), 위원장 겸직의 운영위원회, 정책기획비서관 겸직의 사무처(기획운영팀, 국정과제팀, 국정연구팀) 등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위원장 위촉)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의 전체회의와 부정기적 임시회의가 개최되며,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어 분과별 국정과제 관리 및 정책연구가 논의된다. 국정과제 점검·관리를 위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조정을 위한 국정과제협의회를 운영한다.

[정책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구분	내용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위원: 100명 이내로 구성(임기 2년 대통령 임명·위촉) - 연구단: 국정과제지원단, 미래정책연구단 - 분과위원회: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분권·균형발전, 평화번영 -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직, 수시 개최 - 사무처: 기획운영팀, 국정과제팀, 국정연구팀, 처장은 정책기획비서관이 겸직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 위원장 주재, 정기회의(연 2회) 및 임시회의 - 분과회의: 수시개최, 분과별 국정과제 관리 및 정책연구 논의
국정과제 점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 국정과제 추진성과 보고 및 점검(대통령 주재) - 국정과제협의회: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조정, 정책기획위 위원장 주재 - 관계기관 협조 요청, 조사·연구의뢰 및 공청회 등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정책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경비 및 정책연구비는 위원회 구성현황과 사업계획 수립상황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편성이 필요하다.

2017년 9월말 현재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장 선임과 사무처 구성은 완료하였지만, 위원 위촉,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연구단 구성은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책기획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참석수당, 안건검토사례비, 여비)과 회의자료 인쇄비 등을 100명의 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이 완료되어 전체회의의 2회, 운영위원회 12회, 분과위원회 60회, 국정과제보고회 1회, 국정과제협의회 12회 등 총 87회의 각종 회의가 운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2회의 전체회의에 100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4,400만원의 참석수당과 600만원의 회의자료 인쇄비를 편성하였고, 분과위원회의 경우 60회(5개 분과×12회)가 개최되고 20명의 분과위원이 매년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2억 6,400만원의 참석수당과 3,300만원의 회의자료 인쇄비를 편성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운영경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참석수당				회의자료 인쇄			합계
	단가	횟수(회)	인원(명)	소계	단가	부수	소계	
전체회의	220	2	100	44,000	25	120부×2회	6,000	50,000
운영위원회	220	12	8	21,120	25	10부×12월	3,000	24,120
분과위원회	220	60	20	264,000	25	22부×60회	33,000	297,000
국정과제보고회	220	1	120	26,400	25	150	3,750	30,150
국정과제협의회	240	12	-	28,800	25	150	3,750	32,550
총계	-	-	-	384,320	-	-	49,500	433,820

주: 참석수당은 1명당 참석수당(15만원), 안전검토사례비(5만원), 여비(2만원)를 합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100명의 위원과 20명씩의 분과위원들이 87회의 각종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기준이므로, 다른 국정과제위원회의 회의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회의운영경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관련 정책연구용역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과제당 5,000만원씩 총 20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일반연구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내역	2018년 예산안
일반연구비(260-01목)	50백만원×20개 과제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정책기획위원회는 전체 국정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연구비 1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개의 연구단(국정과제지원단, 미래정책연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 현황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¹⁾은 행정한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행정 우수사례 등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1.7%) 증가하였다. 주요 내역은 ‘행정한류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운영’이 2억 9,500만원, ‘공공행정협력단 구성운영’이 3억 3,400만원,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이 7,000만원, ‘행정한류협의체 구성운영’이 2,300만원 등이다.

[2018년도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1,085	710	710	722	12	1.7
행정한류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운영	256	295	295	295	0	0.0
공공행정협력단 구성운영	352	392	392	334	△58	△14.8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100	0	0	70	70	순증
행정한류협의체 구성운영	327	0	0	23	23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공공행정 분야 다자간 협력체계의 제도화 및 정례화를 위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2018년에 한-아랍어 문화권(MENA) 행정장관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나, 회의개최를 위한 사전협의 및 회의의제 발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34-303

행정안전부는 2014년 이후 행정한류 확산동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행정장관회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한-아랍어문화권(MENA)²⁾ 행정장관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권역별 행정장관회의는 대부분 사전계획 미비로 인해 장관급회담이 아닌 고위급회담으로 변경되거나, 회의의 정례화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되어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2014년 개최된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는 2014년 12월 한국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으나 향후 회의의 정례화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2015년 개최된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전자정부에 대한 소개 및 각국 행정장관 면담 이외에 다자간 협력체계의 정례화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에는 한-중남미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카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하여 한-멕시코, 한-콜롬비아 간 장관급회의로 변경되었고 한-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행정장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아랍어문화권(MENA) 행정장관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한외교사절단 행정한류설명회 및 행정한류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내역으로 ‘주한외교사절단 행정한류 설명회’(50백만원), ‘행정한류협의체 구성운영’(23백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한외교사절단 행정한류설명회’는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하여 범정부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소개·공유하는 행사이며, ‘행정한류협의체 구성운영’은 중앙-지자체 국제협력담당관,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행정한류 관련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부처 공공행정 분야 우수 콘텐츠의 해외진출 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한외교사절단 대상사업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행정한류협의체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아랍어문화권(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주변의 아랍어권 국가들의 연대기구이다.

가. 현황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사업¹⁾은 UN, OECD, OGP 등 국제기구·국제네트워크와의 협력 및 주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6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원(252.0%) 증가하였다. 주요 내역은 ‘국제회의 등 참석’이 1억 2,000만원, ‘국제부담금’이 1,300만원, ‘국제회의 개최’가 5억원이다.

국제회의 등 참석은 ‘OECD 공공행정위원회 정기회의’, ‘국제행정학회 정기회의’, ‘UN 공공행정의 날 행사’, ‘열린정부파트너십(OPG) 고위급 연례회의’, ‘동남아국가 공공혁신 OECD 연례회의’,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연례회의’ 등의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는 사업이다. 국제회의 개최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G) 아태지역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위한 제반 경비이다.

[2018년도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127	140	140	633	493	352.1
국제회의 등 참석	114	127	127	120	△7	△5.5
국제부담금	13	13	13	13	0	0.0
국제회의 개최	0	0	0	500	50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OGP 아태지역 회의는 2017년 10월 현재까지 회의의제, 세션구성 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예산지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3-302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2010년 9월 UN총회 연설을 계기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2011년 출범한 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다자간 국제협력조직이다. 2017년 10월 현재 75개 정부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11년 출범시 가입하였으며, 현재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국이다. OGP회원국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자국의 공약을 담은 2년 주기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수립·이행하며, OGP는 독립보고메커니즘(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이라는 소속 기구를 통해 국가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수준과 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 OGP의 아태지역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경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OGP 가치 확산, 열린 정부 분야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해 OGP운영위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 OGP운영위원국 선거 출마 당시 회의 개최를 공약하였고 9월 OGP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개최 의사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동 회의의 개최는 확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7년 10월 현재까지 OGP 아태지역 회의의 의제, 세션 구성, 행사 규모 등 전반적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2018년 동 회의 개최경비로 편성된 5억원의 세부지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 정부 구현을 주요 목적으로 한 정부 및 시민사회 간 국제네트워크라든 OGP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게 예산의 세부지출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정보화)¹⁾ 사업은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며, OECD E-Leaders Meeting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이며 예산안은 19억 8,100만원이다. 주요 내역은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이 14억 4,200만원이고, ‘OECD E-Leaders Meeting 개최’가 5억 3,900만원이다.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은 한국형 전자정부의 세계적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관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OECD E-Leaders Meeting은 OECD 회원국간 전자정부 최신경향·우수 사례·주요이슈 등을 논의·공유하는 행사로서 OECD 선진국 그룹 간의 전자정부 협력을 통해 한국 전자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정보화)	0	0	0	1,981	1,981	순증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0	0	0	1,442	1,442	순증
OECD E-Leaders Meeting 개최	0	0	0	539	539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가상체험관으로, 동 센터 구축·운영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38-508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1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 13억 9,700만원,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운영 4,500만원이다.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 방문중인 외국 전자정부 관계자 및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체험할 수 있는 전자정부 가상체험관으로, 서울시 소재 코엑스 등 전시관을 임차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가상체험 응용프로그램과 가상현실(VR) 장비 및 엔진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 용	2018년 예산안
임차료	장소 임차료 1개소×250,000천원	250
인테리어	설계디자인 전기×통신공사 등 1식×650,000천원	650
콘텐츠 개발	가상 체험 응용프로그램 개발 1식×238,000천원	238
가상현실(VR)장비 및 엔진	장비 및 엔진 1식×260,000천원	260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부대경비	45
	합계	1,442

자료: 행정안전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자정부 초청 연수생 및 외국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과를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당 체험관에 구축할 수 있는 전자정부관련 프로그램 수는 한계가 있고 외국 공무원 등의 전자정부 체험수요는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체험관구축 운영을 통한 전자정부 수출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OECD E-Leaders Meeting 개최 예산으로 본 행사 외에 OECD 지역회의, 특별세션 및 Digital-5 운영위원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OECD E-Leaders Meeting 개최를 위해 운영비 4억 4,800만원, 국제회의 개최관련 정부협력 6,800만원, 국제회의 개최관련 의제개발 및 개최지원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비에는 OECD E-Leaders Meeting 외에 OECD지역회의(MENA-OECD작업반회의, SEA-OECD작업반회의, OECD-LAC지역회의)와 Digital-5 운영위원회 대면회의 등 4개의 국제회의를 부대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OECD E-Leaders Meeting 및 부대행사 계획]

회의명	회의 목적	회의 주제
제9회 OECD E-Leaders 회의	OECD 전자정부 분야 고위급 연례회의	디지털 정책·전략 논의 및 세계 전자정부 방향 제시
MENA-OECD 작업반회의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 간 정부혁신 회의	전자정부 및 열린정부에 대해 발표, 토론 진행
SEA-OECD 작업반회의	동남아시아 국가 간 정부혁신 회의	전자정부 및 열린정부에 대해 발표, 토론 진행
OECD-LAC 지역회의	중남미카리브지역 정부 개혁 촉진을 위한 회의	사회 통합, 공공거버넌스 강화에 대해 발표 및 토론
Digital-5 운영 위원회 대면회의	Digital-5(한국,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협의체 운영진회의	연중 미결사항 합의 및 장관회의 준비 관련 논의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OECD사무국과 OECD E-Leaders 회의를 개최하면서 부대행사로 OECD 지역회의도 같이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동 부대행사의 주요의제 및 회의진행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는 OECD E-Leaders 회의의 부대행사로 계획중인 OECD 지역회의의 회의의제 및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¹⁾은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의 지자체 확산을 통한 서민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5억 9,900만원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국고보조율 50%)로 수행된다.

[2018년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민금융복지센터	0	0	0	599	599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서민금융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상담사 50명의 10개월분 보수 5억원, 고용부담금 5,700만원, 퇴직금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서민금융복지센터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 용	2018년 예산안
상담사 보수	2,000천원×50명×10월×50%	500
상담사 고용부담금	2,260천원×50명×50%	57
상담사 퇴직금	1,670천원×50명×50%	42
합계		599

자료: 행정안전부

서민금융복지센터는 가계부채에 따른 한계가구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서민금융 컨설팅의 지자체 확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에는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자치단체(도(道)지역 우선선정 예정)를 선정하여 개소당 1.5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38-508

나. 분석의견

서민금융복지센터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할 계획인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업은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담, 대출변제·채무면책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도 지역의 거점 혹은 시군구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전라남도과 경기도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각각 2개소와 7개소의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한편,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담, 대출변제·채무면책 등의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하고 있는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36개소의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지자체의 고유영역인 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자체의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인 전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기능적인 면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민금융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기능 비교]

구분	서민금융복지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주체	지자체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설치장소	- 운영중: 전남 2개소, 경기 7개소 - 2018년: 4개 도지역 추가	- 운영중: 36개소 (서울 6, 경기 8, 강원 3, 충청 5, 경상 8, 전라 5, 제주 1)
금융서비스 기능	- 금융상담 - 대출변제 - 채무면책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채권협상) - 일자리 연계 지원	- 금융상담 - 대출변제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 채무면책(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복지연계	지자체의 복지프로그램과 연계	자활연계 (고용, 복지, 종합상담 등 자활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36개소에 불과하고, 전라남도과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서민금융복지센터의 2016년 상담건수가 각각 2,226건, 4,935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전라남도과 경기도 센터의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상담 비중이 매우 낮아 행정안전부의 설명과 같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자체 복지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 차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6년 전라남도 및 경기도의 서민금융복지센터 상담내역 및 실적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전라남도		경기도	
		상담건수	비율	상담건수	비율
채무조정	소계	1,637	73.5	4,119	83.5
	파산	652	29.2		
	회생	358	16.1		
	신용회복	627	28.2		
재무상담		80	3.6	70	1.4
복지상담		72	3.2	132	2.7
불법사금융		11	0.5	221	4.4
채권협상		26	1.2	393	8.0
금융(대출)		400	18.0		
합계		2,226	100.0	4,935	100.0

자료: 행정안전부

가. 현황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사업¹⁾은 인공지능(AI), ICBM²⁾ 등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정부 모델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이며, 예산안은 6억 3,000만원이다.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차세대 전자정부 연동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이 1억원, ‘국내외 전자정부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이 4,300만원, ‘전자정부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3억 5,700만원, ‘웹사이트 품질기준 및 종합 평가지표 개발’이 1억 3,000만원이다. 동 사업은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출연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다.

[2018년도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0	0	0	630	630	순증
차세대 전자정부 연동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	0	0	0	100	100	순증
국내외 전자정부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0	0	0	43	43	순증
전자정부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0	0	0	357	357	순증
웹사이트 품질기준 및 종합 평가지표 개발	0	0	0	130	13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으로 총 13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연구과제의 주제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43-500

2) ICBM이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동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차세대 전자정부 연동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은 전자정부 중장기계획 연동계획 수립으로 1억원을, ‘국내외 전자정부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은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및 인쇄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정부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에는 정책현안 반영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2억 5,000만원, 전자정부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3,000만원, 전자정부 주요 현안 해결 전략과제 발굴 5,000만원, 전자정부 미래기술 트렌드 전망 및 이머징 서비스 분야 도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웹사이트 품질기준 및 종합 평가지표 개발’은 관련 연구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 용	산출근거	2018년 예산안
차세대 전자정부 연동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	전자정부 중장기 계획 연동계획 수립	100백만원×1종	100
국내외 전자정부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및 인쇄비	22백만원×2종	43
전자정부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책현안 반영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50백만원×5종	250
	전자정부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30백만원×1종	30
	전자정부 주요 현안 해결 전략과제 발굴	25백만원×2종	50
	전자정부 미래기술 트렌드 전망 및 이머징 서비스 분야 도출	27백만원×1종	27
웹사이트 품질기준 및 종합평가지표 개발	웹사이트 품질기준 및 종합평가지표 개발 등 관련 연구	130백만원×1종	130
합계			630

자료: 행정안전부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사업의 목적은 지능형 전자정부 모델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편성한 13개의 연구과제 중 일부는 구체적인 과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책현안 반영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5,000만원×5종)과 전자정부 주요 현안 해결 전략과제 발굴(2,500만원×2종)은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발굴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연구과제라는 점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과제의 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에 따라 안전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콘텐츠 70개를 제작하기 위하여 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안전의식선진화	2,859	4,060	4,060	3,405	△655	△16.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	500	500	500	0	0.0

주: 2016년 사업비는 경기도 소관 예산으로 수행되어 국고가 투입되지 않았음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작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개인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역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된 분야별 안전교육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고, 6개 안전분야를 설정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동 지도에 따른 세부영역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세부영역에 따른 콘텐츠 494개에 대해 연차에 따라 동영상 및 교재 등 2개 형식으로 총 988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05편이 제작되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70편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2632-301

[2018년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사업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산출근거	예산안
2018년	영상콘텐츠 신규제작: 1,000만원 × 30편	300
	영상콘텐츠 수정·보완: 500만원 × 10편	50
	텍스트(교재): 500만원 × 30편	150
	계	500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영상콘텐츠 및 텍스트 교재 제작비용은 약 74억 4,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콘텐츠의 수정·보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전체 콘텐츠의 10%를 수정·보완한다고 가정하면 총사업비는 8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총사업비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산출근거	예산안
총사업비	영상콘텐츠 신규제작: 1,000만원 × 494편	4,940
	텍스트(교재): 500만원 × 494편	2,470
	계	7,410

자료: 행정안전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체계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6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콘텐츠를 달리 설정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교육내용과 방법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작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따라 각 생애주기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활안전 분야 영역에서의 화재예방, 승강기, 위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내용은 영유아기나 아동기의 경우 위험인지나 예방실천방법에 대한 교육이 성인·청소년과 다를 수 있으나 청소년 이상 연령대에서는 공통적인 교육이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청소년기 콘텐츠인 ‘공연장·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는 청년기 콘텐츠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대처(붕괴 등)’와 차별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일부)]

			Level II		Level III	Level IV
			청소년기 13~18세	청년기 19~29세	성인기 30~64세	노년기 65세~
			안전교육 성숙기 (안전습관 증진)	안전교육 독립기 (안전지식·실천 확대)	안전교육 확대기 (타인의 안전책임)	안전교육 성취기 (개인안전 준비)
교육수준	생애주기	세부영역				
1	생활안전	1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소림물, 대합실 등) 안전 2 승강기 안전 3 낙상예방 4 놀이시설 안전	공연장·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승강기 안전사고 대처요령 위험시설물 신고 요령 장애인을 안전시설물 이해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붕괴 등) 대처 장애인 안전시설 이용 시 도움 요령 위험시설 발견 및 신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장애인 안전시설 이용 시 도움 실천	다중이용시설 안전 이용 실천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시설(바탕구, 대피시설 등) 이용 승강기 안전이용 실천 넘어짐·추락·미끄러짐 예방
		1 화재예방 2 화재대피 3 화재진압	화재 유형별 예방 실천 완강기 이용법 습득 화재 유형별 소화기 구별	화재 대피 유도 화재유형별 진압법 습득 소화전 사용법 습득	화재 예방 실천 화재 훈련 참여 소화기 점검 및 관리	화재 예방 실천 화재 시 신고 및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과 관리
		1 전기안전 2 가스안전	전기사고(감전·누전) 예방 위험시 가정용 가스 차단 요령	전기사고 시 대처요령 취사용 가스사고(부탄가스, 버너 등) 대처	전기사용 안전 관리 가스사용 안전 관리	전기안전용 실천 가스 안전사용 실천
		1 도구사용 안전 2 제품사용 안전 3 실험·실습실 안전 4 작업환경 안전	제품 안전사용 실천 안전한 공산품 선별 실험·실습실 안전수칙 실천 산업재해 이해	맞춤형 실험·실습실 안전 실천 산업재해 예방 실천 신체역학 적용 습관	직장내 작업환경 안전 관리 가사활동 안전 관리	보행보조기구 안전 사용 가전제품 안전 사용 실천 안전한 가사활동 실천 안전한 농기계(경운기, 탈곡기 등) 사용 실천
		1 놀이안전 2 수상안전 3 캠핑안전 4 스포츠안전	구조수령 습득 스포츠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아외활동 안전사고 대처 해외여행 사고 예방 실천	아외활동 인명구조 및 대처 스포츠 유형별 안전사고 대처 해외여행 시 사고 대처요령	안전한 놀이 환경 관리 아외활동 시 안전관리 스포츠 활동 시 안전 관리 안전한 해외여행 계획하기	수상안전 실천 안전한 아외활동을 위한 준비와 대처요령 안전한 해외여행 준비와 대처요령

자료: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또한, 교육용 콘텐츠 중 각 기관이 이미 보유한 콘텐츠를 파악하여 기관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는 중복되지 않도록 선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경우 학교안전정보센터(<http://www.schoolsafe.kr>)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과정 별로 안전교육 동영상 게시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생애주기별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 및 위험요인이 많은 영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정비하여 제작이 필요한 콘텐츠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¹⁾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운영,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1,239	764	764	993	229	30.0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35	36	36	36	0	0.0
안전신문고 운영	1,120	515	515	717	202	39.2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2010년 12월 舊 행정안전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안전문제 신고 등 안전문화 실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사업으로 편성된 2018년 예산안은 3,6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워크숍 및 간담회 비용과 함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guard.kr)는 2010년 6월 舊 행정안전부에서 봉사단 회원들의 안전신고 참여 활성화 등을 주목적으로 구축하였고 광주통합전산센터에서 서버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홈페이지가 국가 소유이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재정적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2631-301

그러나 홈페이지 내 콘텐츠들에는 안전제보 활동 외에도 봉사단 소개, 제보활동, 커뮤니티, 봉사단 소식 등 봉사단 활동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를 직접 유지보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내역	예산안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워크숍 개최)	16,000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15,000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활성화(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3,000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련 특근매식비	2,000
계	36,000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안전신문고 기능고도화 및 운영사업은 정보화사업으로서 별도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안전신문고 기능고도화 및 운영을 위한 2018년 예산안은 7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전신문고 기능고도화 및 운영 사업의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천원)

편성내역	예산안
안전신문고 기능 보강	90,000
시스템 S/W 도입	80,000
개발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487,000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 발송료	50,000
외국어 안전신고 번역	10,000
계	717,000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시스템 S/W 유지보수 사업으로 정보화사업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별도의 등록절차를 통해 분류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일반 재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보화사업으로 재분류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15조 2,994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0억 3,300만원(0.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89억 3,4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 15조 2,105억 2,700만원이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644	6,675	7,863	88,934	81,071	1,031.0
- 일반회계	6,624	6,675	7,863	88,934	81,071	1,031.0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	0	0	0	0	0
기 금	13,772,203	15,156,565	15,156,565	15,210,527	53,962	0.4
- 공무원연금기금	13,772,203	15,156,565	15,156,565	15,210,527	53,962	0.4
합 계	13,778,847	15,163,240	15,164,428	15,299,461	135,033	0.9

주: 총수입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은 18조 7,4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738억 6,500원(6.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934억 6,100만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6억 8,9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 18조 5,400억 5,000만원이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11,603	194,601	194,601	205,150	10,549	5.4
- 일반회계	179,421	188,901	188,901	193,461	4,560	2.4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2,182	5,700	5,700	11,689	5,989	105.1
기 금	16,122,871	17,376,734	17,376,734	18,540,050	1,163,316	6.7
- 공무원연금기금	16,122,871	17,376,734	17,376,734	18,540,050	1,163,316	6.7
합 계	16,334,475	17,571,335	17,571,335	18,745,200	1,173,865	6.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나. 세입·세출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889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0억 7,100만원(1,031.0%) 증가하였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624	6,675	7,863	88,934	81,071	1,031.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	0	0	0	0	0
합 계	6,644	6,675	7,863	88,934	81,071	1,031.0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며, 3조 6,464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1억 4,500만원(3.2%)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3조 5,266억 3,700만원에서 2018년 3조 6,347억 9,300만원으로 3.1% 증가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57억원에서 116억 8,900만원으로 105.1% 증가하였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51,666	3,526,637	3,526,637	3,634,793	108,156	3.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2,182	5,700	5,700	11,689	5,989	105.1
합 계	3,183,848	3,532,337	3,532,337	3,646,482	114,145	3.2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계획안은 23조 1,476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8억 2,700만원(2.7%) 증가하였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무원연금기금	19,215,244	22,538,866	22,538,866	23,147,693	608,827	2.7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출계획안은 23조 1,476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8억 2,700만원(2.7%) 증가하였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무원연금기금	19,215,244	22,538,866	22,538,866	23,147,693	608,82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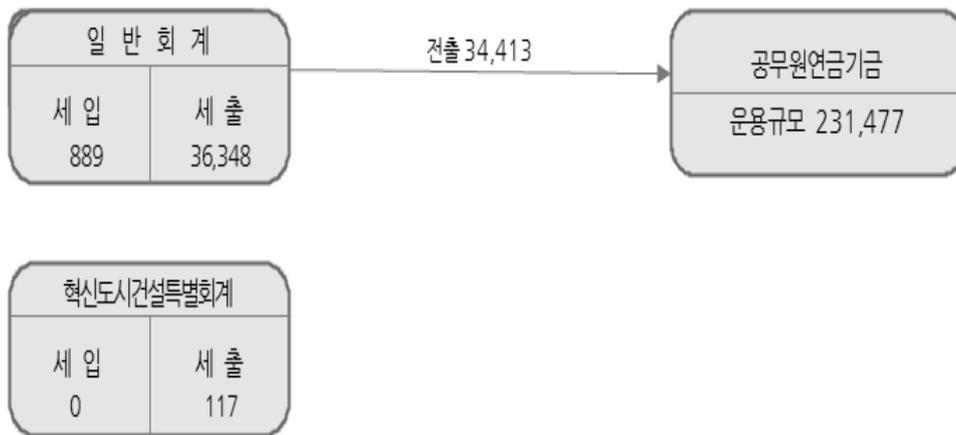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라. 재정구조

2018년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조 4,413억원이 전출된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인사혁신처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1개 사업, 2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복무 및 징계운영 사업은 공직사회 내 근무혁신 활성화 및 복무·징계 관련 업무 정보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1개)	세부사업명 복무 및 징계운영	2018 예산안 200
자료: 인사혁신처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공무원연금부담금 ②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 실화 ③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 및 공무원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해 연금부담금 및 퇴직급여 증가가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는 국가인재DB관련 인건비 상승과 국민추천제 내실화 등이 신규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은 균형인사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신규반영되어 증액되었다.

[인사혁신처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4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366	366	526	160	43.7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377	1,377	4,345	2,968	215.5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366	366	784	418	114.2
	공무원연금부담금	3,337,513	3,337,513	3,441,332	103,819	3.1
공무원연금기금 (9개)	퇴직급여	13,026,107	13,026,107	13,995,706	969,599	7.4
	퇴직수당	2,334,995	2,334,995	2,555,285	220,290	9.4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32,917	32,917	130,919	98,002	297.7
	임대주택건립	24,844	24,844	38,205	13,361	53.8
	신규시설건립	795	795	8,340	7,545	949.1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일반회계)	22,439	22,439	92,300	69,861	311.3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특별회계)	8,348	8,348	14,176	5,828	69.8
	통화금융기관예치	595,968	595,968	610,649	14,681	2.5
	주식매입	2,249,602	2,249,602	2,710,641	461,039	20.5
합 계	21,635,637	21,635,637	23,603,208	1,967,571	9.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인사혁신처

2018년도 인사혁신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5·7·9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기간 단축을 위한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10억 3,000만원)되었고, ② 균형인사 확산 및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2017년 3억 6,600만원→2018년 7억 8,400만원)과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정보화)(2017년 14억원→2018년 44억원)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③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용을 위해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ODA)(2017년 226억원→2018년 237억원) 사업이 증액되었다.

2018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직무 개발과 성과평가의 개선 등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사업은 균형인사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운영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 보전금에 대하여는 보전금 규모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을 통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시험시행 사업의 개선방안 검토

인사혁신처는 국가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시행 사업¹⁾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시험시행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131억 7,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1억 2,700만원(9.4%) 증가하였다. 동 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87억 1,200만원, ‘민간경력자 5·7급, 시간선택제 등 기타 경력직 채용시험’이 17억 3,900만원, ‘시험기간 단축’이 10억 3,000만원, ‘문제은행구축’이 8억 8,000만원, ‘공직설명회 개최’가 1억 5,500만원, ‘직무능력평가 전문인력 양성’이 5,000만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보안 강화’가 1억 2,000만원, ‘국가고시센터 본관 노후비품 교체’가 8,000만원, ‘부대비용’이 4억 400만원 등이다.

[2018년도 국가시험시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시험시행	11,753	12,043	12,043	13,170	1,127	9.4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825	8,064	8,064	8,712	648	8.0
민간경력자 5·7급, 시간선택제 등 기타 경력	1,689	1,737	1,737	1,739	0	0.1
시험기간 단축	0	0	0	1,030	1,030	순증
문제은행구축	896	896	896	880	△16	△1.8
공직설명회개최	415	465	465	155	△310	△66.7
해외공직설명회 개최	53	30	30	0	△30	순감
직무능력평가 전문인력 양성	49	50	50	50	0	0.0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보안 강화	76	223	223	120	△103	△46.2
국가고시센터 본관 노후비품 교체	0	80	80	80	0	0
부대비용	393	498	498	404	△94	△18.9

자료: 인사혁신처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1-300

2018년에 7·9급 공채시험을 통한 채용예정인원이 증가하여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6억 4,800만원 증가하였고, 시험기간 단축 관련 시설·장비 구축을 위하여 ‘시험기간 단축’이 신규로 10억 3,000만원 편성되어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다.

1-1.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현황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는 ‘일·가정 양립과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달성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변경하는 ‘전환형’과 신규임용시부터 시간선택제로 임용되는 ‘채용형’으로 구분된다.²⁾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채시험 관리를 위한 2018년 예산안은 3억 5,791만원으로 전년 대비 9,539만원(21.0%) 감소하였다.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 공채시험 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

비목	내역	2017	2018	증감	증감률
일용임금	서류전형 분류 인부임	7,952	9,158	1,206	15.2
일반수용비	시험장 관리운영비 등	5,600	24,000	18,400	328.6
임차료	시험장 임차	39,000	42,000	3,000	7.7
기타운영비	시험종사자, 시험위원 수당	381,200	265,750	△115,450	△30.3
여비	면접위원 여비 등	19,545	19,572	27	0.1
합계		435,769	357,908	△95,389	△21.0

자료: 인사혁신처

중앙부처의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은 2014년 366명, 2015년 353명, 2016년 461명이 채용되었고 2017년에는 543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연도별 채용 목표(결과)]

(단위: 명)

구분	2014년(결과)	2015년(결과)	2016년(결과)	2017년
중앙부처	366	353	461	543
지자체	632	1,329	809	1,012
합계	2,380	2,368	2,477	2,560

자료: 인사혁신처

2)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7급 이하를 채용하며, 중앙부처의 경우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이 가능하다.

나. 분석의견

첫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이 상당폭 증가할 예정이므로 현재 9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채용규모, 인력배치 및 직무범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2014~2016년까지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간 중 채용된 1,180명 중 917명(77.7%)이 9급 이하였다. 이는 제도시행이 3년차에 불과하고 부처별로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개발이 쉽지 않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 직급별 채용 현황]

(단위: 명, %)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등	계
2016	2	15	29	24	382	9	461
2015	0	17	45	20	261	10	353
2014	4	14	33	31	274	10	366
합계	6	46	107	75	917	29	1,180
(비중)	(0.5)	(3.9)	(9.1)	(6.4)	(77.7)	(2.5)	(100.0)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2018년 5·7·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채용인원이 2017년 대비 60%가 증가한 9,563명으로 예상되며, 9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017년 대비 2,847명이 늘어난 7,75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5·7·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채용인원 중 9급 공채의 비중이 8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위주로 운영하여 온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9급 일반직 공무원과 인력배치 및 직무범위에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9월 현재까지 2018년도 채용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채용인원과 직무배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2017년 연도말에 각 부처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채용인원과 직무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도별 5·7·9급 일반직 공채 채용인원 및 계획]

(단위: 명, %)

	2016	2017(A)	2018(B)	증감(B-A)	증감률 (B-A)/A
5급(행정, 기술)	364	338	364	26	7.7
7급	921	730	1,442	712	97.5
9급	4,182	4,910	7,757	2,847	58.0
합계	5,467	5,978	9,563	3,585	60.0

자료: 인사혁신처

둘째,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직무 개발과 성과평가 개선 등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채용규모가 많은 부처를 살펴보면, 민원성 반복수행 업무가 비교적 많고 업무집중시간대의 분할이 비교적 용이한 국세청(세무서 민원업무 등 58명), 관세청(출국여행자 휴대품 통관업무 등 30명), 교육부(국립대학 행정 및 일반 사무 등 20명), 경찰청(교통 과태료 징수업무 등 18명) 등이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계속해서 단순·반복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 기능직공무원제도의 사례에서처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기능직공무원제도의 경우 문서수발, 민원접수와 같은 단순·반복적 업무를 위해 채용하여 왔지만, 행정효율성 향상과 전자적 업무처리의 확산으로 단순·반복적 업무의 영역이 축소되고 일반직공무원과 승진, 성과보상 측면에서의 차별로 인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어 2013년 12월 일반직공무원 제도와 통합된 바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승진에 있어 직무를 수행한 시간에 비례적(전일제공무원은 주당 40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20시간)으로 적용을 받는다.³⁾ 따라서 부처별로 단순·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누적되면,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직무에 채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 적합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여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의하여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승진·복리후생이 결정된다.

1-2. 공직박람회 개최의 실효성 검토 필요

가. 현황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사인 ‘공직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공직박람회 개최 관련 예산안은 1억 5,5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3억 4,000만원 감액되었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2018년 공직박람회는 광역지자체가 주관·후원하는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임차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지역수험생들에게 지역인재채용 등 맞춤형 공직채용정보와 직렬별 1:1 멘토링 및 강연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박람회 개최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예산비목	일반용역비(210-14목)	일반수용비(210-01목)
주요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및 장비 등 임대료: 50 - 미디어 제작·홍보 및 인쇄: 95 - 전시장 설치비용: 230 - 부대행사, 인건비, 수수료: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제작·홍보 및 인쇄: 18 - 전시장 설치비용: 105 - 부대행사, 인건비, 수수료: 32
예산(안)	465	155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공직박람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공직박람회 개최의 중요한 목적은 공직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그러나 2011년 시작된 공직박람회는 2012년(광주, 부산), 2013년(강원, 부산, 대전, 광주)과 2014년(대구, 충북, 광주) 지방에서 하루 정도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만 개최되어 왔다. 서울은 지방에 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채용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고 정보획득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 위주로 공직박람회 개최된 것이다. 따라서 동 박람회의 목적이 수험생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다면, 채용정보가 더 필요한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공직박람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1:1 멘토링 -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부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경우 많은 참가자로 인해 대기자가 많아 수험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동안 개최된 공직박람회는 별도 부대행사 운영(고교생 백일장, NCS 검사 및 컨설팅, 무료 사진촬영 등) 등 공직채용과는 관련성이 낮은 사업도 다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박람회의 목적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입문에 필요한 채용정보 제공에 있다면, 중앙과 지방간 정보격차로 다소 소외되어 왔던 지방 수험생들이 다양한 공직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울 위주의 행사보다는 지방 중심의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가. 현황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¹⁾ 사업은 중앙부처 인사혁신 진단 및 컨설팅, 균형인사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7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800만원(114.2%) 증가하였다. 세부내역으로는 전 부처 인사혁신 진단 및 확산 1억 4,600만원, 맞춤형 인사혁신 심층 컨설팅 1억 2,000만원, 대한민국공무원상 운영 1억원, 우수공무원조사 및 콘텐츠 개발 6,000만원,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2억 3,000만원, 공무원총조사 수행 1억 2,800만원 등이다.

[2018년도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329	366	366	784	418	114.2
전 부처 인사혁신 진단 및 확산	114	146	146	146	0	0
맞춤형 인사혁신 심층 컨설팅	115	120	120	120	0	0
대한민국공무원상 운영	100	100	100	100	0	0
우수공무원조사 및 콘텐츠 개발	0	0	0	60	60	순증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0	0	0	230	230	순증
공무원총조사 수행	0	0	0	128	128	순증

자료: 인사혁신처

전 부처 인사혁신 진단 및 확산, 맞춤형 인사혁신 심층 컨설팅은 2016년 개발된 ‘인사혁신지수를 토대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은 신규 내역사업으로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인사 종합계획 수립, 정책과제 발굴 및 균형인사 실천보고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세부내역은 정부 균형인사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이 5,400만원, 균형인사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실시가 7,500만원, 균형인사 실천보고회 개최가 1억 100만원 등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49-301

[2018년도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산출근거	2018년 예산안
정부 균형인사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4백만원(200천원×10명×12회) · 균형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인쇄비: 6백만원(500천원×12회) · 균형인사정책 포럼 및 권역별 토론회 장소 임차: 20백만원 · 권역별 토론회 간담회 개최: 4백만원 	54
균형인사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인사지수 개발 등 연구용역 수행: 40백만원 · 진단 및 평가위원 수당: 30백만원(200천원×10명×15일) · 진단 소요물품 구입 등: 5백만원 	75
균형인사 실천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동영상 제작: 15백만원 ·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금: 20백만원 · 부상 제작 : 13백만원 (130천원×110개) · 시상식 행사 용역: 15백만원 · 대내·외 홍보: 16백만원 · 후보기관(자) 공적심사 수당: 12백만원 (400천원×30명) · 행사장 장소 임차 : 10백만원 	101
합계		230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첫째,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사업은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해 기존 균형인사정책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균형인사위원회 등 중앙부처 협의체 신설’, ‘균형인사지수 개발’ 및 ‘균형인사평가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여성·장애인·저소득층·지방인재 등을 대상으로 균형인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등 여성 대상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장애인구분모집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등의 장애인 대상 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기능인재(전문계·예능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인재) 추천채용제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고, 저소득층 구분모집제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균형인사정책 현황]

정책대상	정책명	도입연도	법령상 근거
양성	여성채용목표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	1996년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2)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2002년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장애인	장애인구분모집제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3)
	장애인의무고용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기능·지방인재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2009년	「국가공무원법」 제28조4)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07년	「국가공무원법」 제28조5)
저소득층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2009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6)

자료: 법령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2)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5)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략)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균형인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균형인사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정부균형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처별 균형인사담당관(인사과장 등)을 지정하여 격월로 ‘균형인사 중앙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며, ‘균형인사지수’를 개발하여 균형인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현행 균형인사 정책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균형인사지수 개발’과 ‘균형인사 평가단 운영’은 기존에 인사혁신처가 개발하여 시행중인 ‘인사혁신지수’와 ‘인사혁신 컨설팅단 운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균형인사 과제 추진상황 전반을 확인·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수’를 개발하고 ‘균형인사평가단’을 신설하여 부처별 균형인사정책 추진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 차관급 21)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지수’를 평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지수는 12개 세부지표의 40개 진단항목으로 개발되었고, 특히 채용 관련 진단항목으로 ‘기관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수요 및 임용여부’, ‘장애인 의무고용률(3%) 달성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혁신처가 개발을 추진중인 ‘균형인사지수’와 ‘균형인사평가단 운영’은 기존에 인사혁신처가 개발하여 시행중인 ‘인사혁신지수’와 ‘인사혁신 컨설팅단 운영’과 폭넓은 의미에서 유사한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내용에 있어서 인사혁신지수에 균형인사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사혁신지수 세부지표 및 진단항목 현황(2016년 시행)]

구분	분야	세부지표(12)	진단항목 (40)
혁신기반 (23%)	추진역량 (23점)	기관의 인사혁신 추진의지	①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주재 자체 인사혁신 과제 추진상황 점검 실적 ② 인사혁신 담당관 워크숍 인사혁신 추진위원회에서 부처 사례 발표 실적 ③ 범부처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등급 및 참여 실적 ④ 인사혁신 추진역량 강화 ⑤ 인사담당자 전문성 확보 노력
		자체 인사혁신계획 우수성 및 관심도	① 기관별 자체 인사혁신 계획에 대한 차별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등 ② 기관별 자체 인사혁신 계획에 대한 기관 구성원의 관심도
혁신성과 및 성과 (77%)	채용 (18점)	개방형 직위 민간인재유치 노력도 및 실적	① 개방형 직위 공모 홍보 실적 ② 민간 스카우트 선발 등 유능한 민간인재 발굴·유치 노력 ③ 충원한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임용률 ④ 개방형 직위 대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률
		채용의 다양성 유지도	① 기관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수요 및 임용 여부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률(3%) 달성도 ③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인재개발 (15점)	인재개발에 대한 인식도	① 인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② 인재개발에 대한 만족도
		인재육성 노력도	①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② 교육훈련 활성화 정도 ③ 연간 1인당 평균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 ④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전문성 · 성과 관리 (29점)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①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②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개선도
		전문직위 운영 현황	① 실제 전문직위 지정 비율(본부기준) ② 실제 전문직위 과장급 이상 지정비율(본부기준) ③ 전보제한기간 준수율
		계획인사교류 실적	① 계획인사교류 비율 ② 계획인사교류 목표 달성도 ③ 계획인사교류 목표설정의 도전성 ④ 특별인사교류 추진 노력
	생산적 공직 문화 (15점)	능력·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노력도	① 성과면담 인식도 조사 결과 ② 평가 편향지수 ③ 각 부처 성과관리 우수사례
		연가 및 유연근무 이용 활성화 노력도	① 연가사용 활성화 실적 ② 연가사용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③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실적 ④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인식도 ⑤ 초과근무 감축 노력도
	-	-	시간선택제 공무원 활성화 정도
-	-	국가인재 DB 활용도	①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요청 건수 ② 추천요청 정부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추천 후보 선임률

자료: 인사혁신처

셋째,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사업의 내역으로 추진할 계획인 ‘이달의 인사혁신챔피언’, ‘대한민국공무원상 선발 및 시상’ 등의 사업은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인사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달의 인사혁신챔피언(1,20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달에 한명씩 인사혁신과 관련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포상내역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공무원 대상 특별승급 실시’, ‘신규(전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시스템 추진’ 등 인사담당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이달의 인사혁신챔피언 선정 사유]

소속	선정 사유
농림축산식품부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둔 공무원 대상 특별승급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신규(전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추진
국민안전처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정예 해양경찰 양성
국가보훈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평가-인사 연계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	조직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성과면담 코칭과정 기획·운영
해양수산부	경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과정 신설 등 교육훈련 제도개선 추진

자료: 인사혁신처

또한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대한민국공무원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84명, 2016년에는 93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2018년에는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공무원상과 우수공무원포상은 목적, 주관기관, 수여대상, 선발 절차, 인사상 인센티브 등에 있어서 차별화되어 있고, 정부포상의 큰 틀에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타 정부포상과 상충·중복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상의 공적심사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고 공식적인 인사상 특전이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의 우수공무원포상은 기관별로 공적심사가 이루어지고 특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포상 대상과 훈격 측면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 정부포상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공무원상과 우수공무원포상 제도 비교]

	대한민국공무원상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 (1973년~)
주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대상	행정부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국정과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행정·입법·사법 각 소관 분야 우수 성과 공무원
규모	매년 약 100명(2016년: 93명)	매년 약 900명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특전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가점 중 1개 이상 부여	없음
절차	① 기관별 후보자 추천 ② 인사혁신처 공적심사 ③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확정	① 기관별 규모 배정 ② 기관별 공적심사 및 대상자 추천 ③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확정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가. 현황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사업¹⁾은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용을 통한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237억 1,9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억 2,900만원(5.0%) 증가하였다. 증액사유는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를 2017년 100개에서 2018년 105개로 5개 직위를 증가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8년도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20,754	22,590	22,590	23,719	1,129	5.0

자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이란 공무원이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인건비·부대경비를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에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하고,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따라 부처별 고용휴직자 공모, 고용휴직자 성과평가, 직위존치평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 2016년에는 85개 직위에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를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100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5개의 직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4-531

2)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 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19개 중앙부처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자체 예산 등을 통해 국제기구고용휴직 제도(이하 ‘자체 국제기구고용휴직’)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자체 국제기구고용휴직으로 63개 직위가 운영되었으며 2017년에는 65개의 직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체 국제기구고용휴직의 운영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5절(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³⁾

[2017년도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 국제기구 및 부처 현황]

국제기구	부서	부처	국제기구	부서	부처
ADB	공공민간협력과	기재부	OECD	고용분석정책과	고용부
	인적자원 및 사회 개발과	고용부		공격적조세회피과	기재부
AfDB	경제개발연구국	기재부		공공개혁과	인사처
AFRICARICE	벼육종부 사헬센터	농진청		과학기술정책과	과기정통부
AIBD	사무국장실	방통위		관광과	문체부
CAFRAD	교육훈련부	인사처		구조정책과	산업부
CODEX	영양 및 소비자보호과	식약처		국제에너지기구	산업부
EBRD	사업개발과	기재부		규제정책과	국조실
	자본시장개발팀	금융위		농업무역정책과	농식품부
FAO	수산양식부	해수부		사회정책과	복지부
	정책, 경제 제도과	해수부		수산과	해수부
	아태지역사무소	농식품부		예산공공지출과	기재부
	작물생산보호과	농식품부		지역정책과	국토부
GCF	운영서비스과	기재부		한일데스크	기재부
IAEA	안전조치부	외교부		환경보건과	환경부
	원자력기술개발부	과기정통부		정책기획실	해수부
	원자력안전보안부	원안위	UNCCD	아태지역사무소	산림청
IBRD	국제세금팀	기재부	UNDP	거버넌스및평화구축단	권익위
	글로벌정보통신기술국	과기정통부		아태지역사무소 회복및지속가능팀	환경부
	금융시장과	금융위	통합역량관리과	인사처	
	무역경쟁 GP	기재부	UNEP	아태지역사무소	환경부
	빈곤감소경제관리과	기재부		환경정책수행과	환경부

3)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5절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제81조(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① 제5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고용휴직 및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제기구	부서	부처	국제기구	부서	부처
ICAO	성능기반항행과	국토부	UNESCAP	교통국	해수부
	항공안전평가과	국토부	UNESCO	EFA의제팀	교육부
IDA	개발재정국	기재부		교육전략국	교육부
IDB	노동시장팀	고용부		물과학부서	국토부
	물위생과	국토부		방콕사무소 교육혁신과	교육부
	에너지과	산업부		세계문화유산센터	문화재청
	재정및지방관리과	기재부	창조성국	문체부	
	제도역량과	과기정통부	UNHABITAT	도시계획국	국토부
IDI	역량개발과	감사원	UNICEF	공공파트너십	통일부
IFAD	아시아태평양과	농식품부	UNODC	약물남용방지과	식약처
IFC	무역및공급망지원국	기재부	UNWOMEN	정부간지원국	여가부
	외국인투자자문국	산업부	UNWTO	아시아태평양국	문체부
ILO	국가고용정책과	고용부	UPU	경제규제부	과기정통
	노동행정, 노동조사 및 직업안전과	고용부		국제사무소	과기정통
	아시아태평양사무소	고용부	WCO	조사통관국	관세청
	해사운송팀	해수부	WHO	긴급대응및복구작업과	통일부
	협동조합국	기재부		보건체계재정국	복지부
IMF	공공재정관리과	기재부		서태평양사무처 보건위기대응국	복지부
	아시아태평양과	기재부		서태평양사무처 총괄지원국	복지부
	유럽국	기재부		식품안전과	식약처
IMO	해사안전과	해수부	예방접종백신과	식약처	
IOM	이주관리부	법무부	유럽환경보건센터환경노출 위해프로그램	환경부	
ISO	기술정책과	산업부	WIPO	PCT운영과	특허청
ITC	프로그램개발국	조달청		아카데미 개발국	특허청
ITU	전기통신개발국	과기정통		아태지역국	특허청
	전기통신표준화국	과기정통		저작권개발서비스과	문체부
IUCN	전략파트너십부	환경부	WMO	개발및지역활동부	기상청
OECD	경쟁과	공정위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외교부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첫째,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운영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65개였던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수를 2016년 85개, 2017년 100개로 증가시켰고 2018년에는 105개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15년 158억 6,200만원, 2016년 207억 5,400만원, 2017년 225억 9,0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예산안은 237억 1,900만원이다.

[연도별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직위수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직위수	65	85	100	105
예산(안)	15,862	20,754	22,590	23,719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매년 상·하반기에 국제기구고용휴직 교체직위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해당 직위의 유지·전환·폐지 등을 결정하고 있다(이하 “직위실효성 검토”).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66개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의 직위실효성 검토 결과 해당 직위의 성과가 미흡하여 폐지한 사례는 3개 직위에 불과하고 나머지 63개 직위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직위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국제기구의 다른 직위로 대체되거나 다른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를 늘렸기 때문에 전체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수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운영의 성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 직위실효성 검토 결과]

(단위: 개)

구분	국제기구고용휴직교체직위		직위실효성 검토결과
	대상국제기구	대상 직위수	
2013	CBD, IAEA, FAO(3), IBRD, ILO, ISTC, OECD, UPU, WIPO	11	11개 직위 모두 유지
2014	OECD(4), WHO, WMO	6	6개 직위 모두 유지
2015	FAO, ILO(2), IMO, ITU, OECD(7), UNESCO(2), UNWOMEN, WHO, WIPI	17	17개 직위 모두 유지
2016	OECD(2), AfDB, IFAD, UNESCO, WHO(2), IDB, IFC, FAO, IAEA, WIPO, IBRD(2), UNCCD, UNEP, UPU, WMO	18	17개 직위 유지 1개 직위 폐지(IBRD)
2017	CBD, FAO, IAEA, ICAO, IDA, IDB, IFC, ILO, IMF, ITC, OECD(2), UNESCO, UNHABITAT	14	12개 직위 유지 2개 직위 폐지(CBD, ILO)
합계		66	63개 유지, 3개 폐지

자료: 인사혁신처

둘째, 인사혁신처는 2018년에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를 5개 증가시킬 계획인데, 후보로 선정된 직위 중 일부는 기존 직위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에 ‘APTERR(아세안쌀비축기구)’,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10개 후보 직위 중 5개를 신규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후보 직위 중 일부는 기존 국제기구고용휴직의 직위와 내용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DB(중미개발은행),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후보 직위로 선정되었는데, 이미 IBRD 5개, IDB 5개, OECD 16개의 국제기구고용휴직 직위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국제기구에 직위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신규 국제기구고용휴직 후보 직위 내역]

국제기구/부서	휴직목적 / 업무내용
APTERR(아세안쌀비축기구) 사업운영부	·(휴직목적) 쌀 현물원조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내적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완화 및 수급상황 개선에 기여 ·(업무내용) 쌀 무상원조 프로그램 운영, 유상원조시 수원국과 거래조건 협의 등
EU(유럽연합) 통신콘텐츠기술총국	·(휴직목적) 전자정부 글로벌 최신 트렌드 공유 및 한-EU 간 전자정부 협력 ·(업무내용)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AI 등 ICT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분석 및 한-EU 간 전자정부 분야 공동연구 등 추진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투자및정책솔루션사업부	·(휴직목적) 개도국 기후기술 수요 파악 및 우리기술 보급 확대, 우리나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 목표 달성 기여 ·(업무내용)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수요에 따른 국내 유망 기후기술 연계,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시 우리나라 정책·사업·전문가 등 참여 모색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취약갈등폭력교차솔루션분야	·(휴직목적) 취약국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해 전후 한국 발전경험·정책 등 확산 ·(업무내용) 경제·사회 시스템 미비, 정책 부재 및 분쟁·폭력 등을 경험중인 저소득국가 경제 안정 정책 수립
IDB(중미개발은행) 사회보장및보건과	·(휴직목적) 국내 의료기관, 보건산업체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 ·(업무내용) ICT 의료시스템 구축 등 한국 보건의료 사업의 중남미 적용방안 수립 및 협력사업 추진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국가지원동반협력국	·(휴직목적)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문성 증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기여 ·(업무내용)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우리나라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모델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식·경험 공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통계국	·(휴직목적) OECD에 제공하는 우리나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통계 오용에 따른 국격 하락을 미연에 방지 ·(업무내용) OECD 한국 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 제6차 세계포럼 운영 준비
UNECE(UN유럽위원회) 교통과	·(휴직목적) 국제 자동차기준 제정시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고 주요 논의 사항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자동차 국제기준 개정 참여 저변 확대 ·(업무내용)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기준 마련 지원
UNHCR(UN난민기구) 국제보호국	·(휴직목적) 보다 정확한 난민정황정보 수집 및 선진 난민심사기법 습득을 통한 난민심사 과학화 등 한국 난민정책 선진화 기여 ·(업무내용) 난민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난민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WFP(세계식량계획) 대외협력부	·(휴직목적) 대북 영양지원 사업 등 추진 시 우리정부 정책 방향 반영 ·(업무내용) 대북 영양지원 사업 관리, 아시아 지역 공여국 관리

자료: 인사혁신처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사업의 내실화 필요

가. 현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¹⁾ 사업은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5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43.7%) 증가하였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인재DB 운영지원등이 4억 2,600만원, 민간스카우트 및 국민추천제 내실화가 8,000만원,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추진이 2,000만원 등이다.

국가인재DB는 경영·공정거래, 법무·사법·인권, 과학기술·정보통신, 재정·통상·금융·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299,533명²⁾에 대한 인물정보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개방형직위 후보 및 선발위원,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위원, 책임운영기관장 후보 및 선발위원, 공공기관 임원후보 및 추천위원 등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인물을 검색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분예산	추경(A)		B-A	(B-A)/A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741	366	366	526	160	43.7
국가인재DB 운영지원등	211	314	314	426	112	35.7
민간스카우트 및 국민추천제 내실화	30	32	32	80	48	150.0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추진	20	20	20	20	0	0

자료: 인사혁신처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43-301

2) 2017년 8월말 기준

나. 분석의견

첫째, 국가인재DB를 활용한 주요 직위 후보자에 대한 추천건수와 선임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재DB를 활용한 인재 추천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총 5,774개 직위를 대상으로 25,189명이 추천되었으며, 이 중 3,179명이 선임되어 선임률은 55.1%였다.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공기관 임원 등 주요직위 후보자에 대한 추천건수는 3,329건이고, 이중 선임은 317건으로 선임률은 3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주요직위에 대한 국가인재DB 활용 제고를 위해 인재발굴을 위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력개방형직위 대상 정부헤드헌팅의 적극적 실시,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국가인재DB 활용 근거규정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국가인재DB 인재추천 실적]

(단위: 개, 명, %)

구 분	주요직위 후보자				선발심사위원 및 후보추천위원				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 임원	소계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 임원	공모직위	소계	
대상직위(A)	782	84	87	953	72	82	4,667	4,821	5,774
추 천(B)	2,670	204	455	3,329	348	357	21,155	21,860	25,189
선 임(C)	275	25	17	317	34	44	2,784	2,862	3,179
선임률(C/A)	35.2	29.8	19.5	33.3	47.2	53.7	59.7	59.4	55.1

자료: 인사혁신처

둘째,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개선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는 국가인재DB 홈페이지(www.hrdb.go.kr)의 일부 메뉴 중 하나로서 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에는 국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가입(본인인증) 및 추천절차 개선’, ‘국민소통·참여형 게시판 구축’, ‘모바일기기 대응을 위한 반응형 웹페이지 구성’ 등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개선 관련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 내역	2018년 예산안
국민추천 홈페이지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비	45
	부가세	5
합계		50

자료: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개선은 국민추천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소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회원가입(본인인증)을 통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회원가입을 완화시키는 것 등으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자칫 특정인물에 대한 인기투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홈페이지 개선 시 최소한의 요건 검증을 통한 본인인증 기능을 구현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인사와 관련된 적극적인 의견개진·제언을 위한 게시판을 개설하고,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¹⁾ 사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충북 진천 본원) 내 기숙사 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육생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116억 8,9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59억 8,900만원(105.1%) 증가하였다. 비목별 내역으로는 공사비(420-03목) 107억 2,200만원, 감리비(420-04목) 8억 6,900만원, 시설부대비(420-05목) 2,900만원 등이다.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4억원이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7년말까지 공사진척률이 30%이고 2018년 10월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지만, 2017년 10월 16일 현재 공사 및 감리용역 입찰공고만 이루어진 상황으로, 2017년 예산 57억원 중 상당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2018년도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인재원기숙사증축	0	5,700	5,700	11,689	5,989	105.1
기본조사설계비	0	248	248	0	△248	순감
실시설계비	0	493	493	0	△493	순감
공사비	0	4,878	4,878	10,722	5,844	119.8
감리비	0	69	69	938	869	1,259.4
시설부대비	0	12	12	29	17	141.7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사업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차질없는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준비 및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736-300

당초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은 2017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종료하고 이를 토대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하는 것이었다.

[국가인재원기숙사 증축 계획 및 향후 일정]

기추진				향후 계획	
실시설계 입찰준비	실시설계 조달계약의뢰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 조달의뢰 및 선정	공사기간 및 준공
2017.1~2	2017.3.	2017.5.	2017.5~7.	2017.8.~9.	2017.10~2018.11 (13개월)

자료: 인사혁신처

그러나 2017년 10월 16일 현재 공사 및 감리용역 입찰공고²⁾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조달청 조달계약 의뢰 이후 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 선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았을 때,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2017년 1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절기 공사의 애로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³⁾

또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면 적정 공사기간으로 13개월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인재원은 2018년말까지 기숙사 증축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준비 및 철저한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인사혁신처는 당해 공사의 경우 통상 입찰공고 기간은 40일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적용하여 10일로 단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 인사혁신처는 Fast Track 방식 진행(터파기 공사 신속진행, 골조 및 기초 건축공사 병행) 및 동절기 공사 곤란사항 최소화(건식공법 도입) 등 공사기간 단축방안 추진시 당초 계획한 2018년 11월에는 차질없이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 현황

인사혁신처는 매년 일반회계로부터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규모가 증가하자 「공무원연금법」 제19조제2항 및 제69조제8항¹⁾에 따라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의 일부를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에 총당(이하 “기금운용수익 보전금”)하고 있다. 기금운용수익 보전금 2018년 계획안은 2,027억 1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025억 4,200만원(102.3%) 증가하였다.

[2018년도 기금운용수익 보전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금운용수익 보전금	67,170	100,159	100,159	202,701	102,542	102.3

자료: 인사혁신처

2015년 이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운용수익 보전금은 실제 공무원연금기금의 퇴직급여 지출 시 사용되므로, 연도별 기금운용수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제외한 현금수익 추정액의 50%로 산정되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공무원연금법」

제19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②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총당할 수 있다.

[연도별 기금운용수익 보전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기금운용수익금(A)	평가이익(B)	현금수익(C=A-B)	기금운용수익 보전금(C×50%)
2015	2,566	-	2,566	1,283
2016	1,602	259	1,343	672
2017	2,270	267	2,003	1,002
2018	15,669	11,614	4,055	2,027

자료: 인사혁신처

2018년 계획안 상의 기금운용수익 보전금 2,027억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금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증가액인 기금운용수익금 1조 5,669억원에서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1조 1,614억원을 제외한 현금수익 추정액의 50%인 2,02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2018년 기금운용수익 보전금 산정 내역]

(단위: 억원)

2015년 결산 기금 순자산(A)	2016년 결산 기금 순자산(B)	2016년 기금운용수익금 (C=B-A)	유형자산 재평가이익(D)	현금수익 (E=C-D)	기금 총당액 (E×50%)
87,542	103,211	15,669	11,614	4,055	2,02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 보전금에 대하여는 보전금 규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19조제2항 및 제69조제8항은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금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금운용수익 보전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현재는 현금수익 추정액의 50%로 산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기금운용수익 보전금과 실제 기금 금융자산 투자수익의 비교 시, 기금운용수익 보전금은 금융자산 투자수익의 2016년

40.6%에서 2018년 84.2%로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자산 투자수익의 대부분을 기금운용수익 보전금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도별 기금운용수익 보전금과 금융자산 투자수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기금운용수익 보전금(A)	금융자산 투자수익(B)	비율(A/B)
2016	672	1,654	40.6
2017	1,002	1,818	55.1
2018	2,027	2,407	84.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연간 현금수익 추정을 위해 순자산 증감에 현금 증가가 없는 자산 재평가이익을 반영하기는 하나, 실제 순자산 증감에는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대체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등이 반영되어 이에 대한 보전금으로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전금 규모 및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공무원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 등으로 기타재산수입¹⁾을 계획안에 편성하고 있으며, 2018년도 계획안에는 2017년 대비 757억 8,100만원 감소한 3,22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기타재산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재산수입	188,747	398,567	398,567	322,786	△75,781	△19.0

자료: 인사혁신처

2018년 기타재산수입 계획안 3,227억 8,600만원은 주식투자수입 1,614억 8,200만원, 대체투자수입 73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재산수입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계획	2018계획안	증감
채권·예금	83,195	60,431	△22,764
주식투자	187,145	161,482	△25,663
대체투자	91,585	73,400	△18,185
지불준비금	36,631	27,462	△9,169
보통예금이자	11	11	0
계	398,567	322,786	△75,78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54-545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타재산수입이 계획안 상 연례적으로 과다추계 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달성 가능한 적정 수입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기타재산수입의 계획액은 3,039억 1,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887억 4,700만원으로 수납율이 62.1%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아도 징수결정액은 1,258억원에서 1,887억원 수준이며, 당초 계획액 대비 수납률 또한 37.2~62.1%로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수납율도 22.6%로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기타재산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율 (B/A)
	당초	수정(A)				
2014	338,296	338,296	338,296	125,750	125,750	37.2
2015	321,987	321,987	321,987	150,382	150,382	46.7
2016	303,912	303,912	303,912	188,747	188,747	62.1
2017.6.	398,567	398,567	398,567	90,150	90,150	22.6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현재 기타재산수입 계획액은 각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상 운용평잔에 목표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현금 유입액이 아닌 주식 등 자산의 평가이익 또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4년과 2015년, 2016년의 평가이익을 포함한 실제 수익액은 목표수익률을 반영한 각 연도 계획액에 각각 1,728억원, 1,400억원, 631억원 미달하였다. 또한, 상기 실제 수익액에는 현금 유입액이 아닌 평가 이익 또한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현금 징수 결정액은 수익액에 2014년 397억원, 2015년에 316억원, 2016년에는 520억원 미달하였다.

[기타재산수입 세부 현황(2014~2016년)]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계획(평가이익포함)		수익액 (평가이익 포함) (B)	차이 (B-A)	징수 결정액 (C)	차이 (C-B)	
	산출근거 (운용평잔×목표수익률)	계획액 (A)					
2014	채권	(직접)1,938,756백만원×3.6% (간접)810,389백만원×3.9%	101,649	109,553	7,904	98,653	△10,900
	주식	(직접)490,874백만원×9.5% (간접)1,128,103백만원×9.6%	155,395	△35,726	△191,121	916	36,642
	대체 투자	(국내)793,289백만원×6.1% (해외)126,200백만원×6.3%	56,341	66,082	9,741	1,214	△64,868
	지불 준비금	830,000백만원×3.0% +보통예금이자 11백만원	24,911	25,545	634	24,967	△578
	계		338,296	165,454	△172,842	125,750	△39,704
2015	채권	(직접)1,881,161백만원×3.24% (간접)840,985백만원×3.38%	89,381	63,823	△25,558	49,311	△14,512
	주식	(직접)426,767백만원×8.14% (간접)1,366,749백만원×8.10%	145,434	35,395	△110,039	31,752	△3,643
	대체 투자	(국내)836,982백만원×5.64% (해외)181,453백만원×5.34%	56,896	58,534	1,638	45,085	△13,449
	지불 준비금	963,900백만원×3.14% +보통예금이자 10백만원	30,276	24,237	△6,039	24,234	△3
	계		321,987	181,989	△139,998	150,382	△31,607
2016	채권	(직접)1,948,243백만원×2.54% (간접 국내)425,501백만원×2.54% (간접 국외)299,444백만원×2.84%	68,797	54,071	△14,726	69,441	15,370
	주식	(직접)439,670백만원×7.93% (간접 국내)982,185백만원×7.93% (간접 국외)413,728백만원×7.54%	143,951	127,265	△16,686	36,355	△90,910
	대체 투자	1,094,565백만원×5.74%	62,864	33,709	△29,155	55,958	22,249
	지불 준비금	1,393,592백만원×2.03% +보통예금이자 10백만원	28,300	25,727	△2,573	26,993	1,266
	계		303,912	240,772	△63,140	188,747	△52,02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현재 공무원연금기금 기타재산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공무원연금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기금 계획안 산정 시 목표수익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²⁾ 그러나 실제 달성 가능한 기금의 수입계획안을 바탕으로 하여 기금의 적정 지출계획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타재산수입이 계획안 상 과다 추계되는 것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추계에 근거하여 실제 달성 가능한 적정 수입 계획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공무원연금공단은 주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계획 대비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찰청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9,301억원으로 2017년 8,705억원 대비 596억원 (6.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1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86억원이다.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현황]

(단위: 억원, %)

	2016 결산	2017 본예산	2017 추경(A)	2018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8,528	8,348	8,348	8,915	567	6.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69	357	357	386	29	8.1
총 계	8,897	8,705	8,705	9,301	596	6.8

주: 총수입 기준

자료: 경찰청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10조 5,412억원으로 2017년 10조 1,285억원 대비 4,127억원(4.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조 4,64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3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0억원이다.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6 결산	2017 본예산	2017 추경(A)	2018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93,792	100,406	100,553	104,642	4,089	4.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73	694	694	730	36	5.2
지역발전특별회계	55	38	38	40	2	5.0
총지출	94,520	101,138	101,285	105,412	4,127	4.1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경찰청

나. 세입·세출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9,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억원(6.7%)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8,348억원에서 2018년 8,915억원으로 6.8% 증가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732억원에서 772억원으로 5.5% 증가하였다.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2016 결산	2017 본예산	2017 추경(A)	2018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8,528	8,348	8,348	8,915	567	6.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7	732	732	772	40	5.5
총 계	9,255	9,081	9,081	9,687	606	6.7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0조 5,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2억원(4.2%)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10조 799억원에서 2018년 10조 5,029억원으로 4.2% 증가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732억원에서 772억원으로 5.5%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38억원에서 40억원으로 5.0% 증가하였다.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2016 결산	2017 본예산	2017 추경(A)	2018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94,150	100,651	100,799	105,029	4,230	4.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9	732	732	772	40	5.5
지역발전특별회계	55	38	38	40	2	5.0
총 계	94,914	101,422	101,569	105,841	4,272	4.2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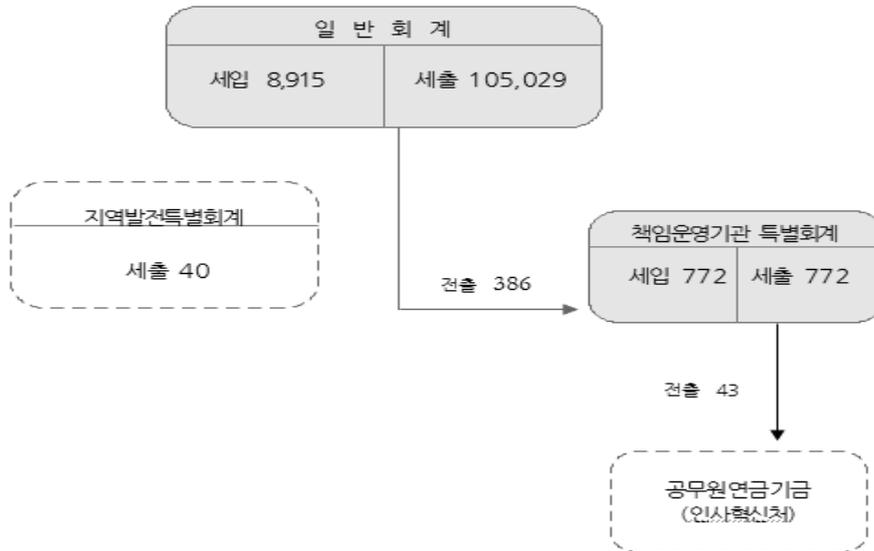
다. 재정구조

2018년도 경찰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0조 5,029억 원이며, 이 중 경찰병원 전출금 386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72억 원이며, 이 중 공무원연금부담금 4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도 경찰청 소관 회계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경찰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20억 7,5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 개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사업이 2018년도 R&D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선정 등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다.

[경찰청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 개발(R&D)	70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R&D)	1,375
합 계		2,075

자료: 경찰청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사이버안전수사활동 ② 아동안전지킴이 ③ 과학수사역량강화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업은 사이버테러 수사용 장비구입비 14억 5,900만원, 사업이관 5억원 등으로 25억 8,800만원(203.5%)이 증액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활동비가 128억 9,000만원 증가하는 등 130억 4,300만원(54.2%)이 증액되었다. ‘과학수사역량강화’ 사업은 거짓말탐지기 추가 보급 12억 8,100만원이 증가하고, 직제가 분리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다.

[경찰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6개)	사이버안전수사활동	1,272	1,272	3,860	2,588	203.5
	아동안전지킴이	24,082	29,184	42,227	13,043	44.7
	과학수사역량강화	18,710	18,710	27,000	8,290	44.3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R&D)	491	491	707	216	44.0
	국제치안활동강화(ODA)	3,747	3,747	5,047	1,300	34.7
	행정업무지원	464,889	464,889	483,254	18,365	4.0
책임운영 기관 특별회계 (1개)	경찰병원자산취득	2,471	2,471	5,388	2,917	118.0
합 계		515,662	520,764	567,483	46,719	9.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경찰청

2018년도 경찰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협력단체 활성화, 외사치안협의회 운영,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②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R&D), 치안현장 맞춤형(폴리스랩) 연구개발(R&D) 사업 등 치안과학수사를 위한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③ 경찰대학의 치안대학원 설치 등 전문경찰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치안과학수사 R&D사업 중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고도무인기 연구개발 사업은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사업인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사업과 상호 연계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사업은 총 23개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 그 외 시스템을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안전활동 사업 중 방법협력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제공사업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 심사경과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치안과학기술 R&D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경찰청은 「경찰법」 제26조(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¹⁾의 개정(2014.5.20.)에 따라 치안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개발(단위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억 3,300만원(38.8%)이 증가한 13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정책연구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책연구개발(단위사업)	5,106	9,615	9,615	13,348	3,733	38.8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	5,106	8,299	8,299	9,649	1,350	16.3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0	491	491	707	216	44.0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0	825	825	917	92	11.2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0	0	0	700	700	순증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	0	0	0	1,375	1,375	순증

자료: 경찰청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경찰법」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경찰청 소관 R&D사업은 2015년에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R&D)²⁾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2017년부터는 다부처공동기획 R&D사업³⁾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2017년 예산에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R&D)⁴⁾ 사업과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R&D)⁵⁾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 예산안에는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R&D)⁶⁾ 사업과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R&D)⁷⁾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 코드: 일반회계 4235-611

3) 다부처공동기획 R&D사업은 부처 간 협업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따라 2017년도에 부처간 조정기구 운영, 공통 운영·관리 규정 마련, 관리기관 통합운영 등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4) 코드: 일반회계 4235-612

5) 코드: 일반회계 4235-613

6) 코드: 일반회계 4235-400

7) 코드: 일반회계 4235-401

1-1.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및 저고도무인기 연구개발 R&D사업 점검 필요

가. 현황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R&D)⁸⁾ 사업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 양상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안과학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9,000만원(16.3%) 증액된 96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첨단과학수사기술 개발, 현장대응역량강화 기술·장비 개발, 저고도무인기 감시·관리기술 개발 사업이 있다.

[2018년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R&D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	5,106	8,299	8,299	9,649	1,350	16.3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1,550	2,074	2,074	2,074	0	0.0
첨단과학수사 기술 개발	1,788	2,680	2,680	3,121	441	16.5
현장대응역량강화 기술·장비 개발	1,527	2,327	2,327	1,410	△917	△39.4
저고도무인기 감시·관리 기술 개발	0	900	900	2,700	1,800	200.0
사업단운영비	241	318	318	344	26	8.2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동 사업 중 3개 사업(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첨단과학수사기술 개발, 현장대응역량강화 기술·장비 개발)은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고,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은 도로교통공단, 대학 등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고도무인기 감시·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과제로서 2018년도에는 2년차 연구수행으로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 27억원이 편성되었다.

8) 코드: 일반회계 4235-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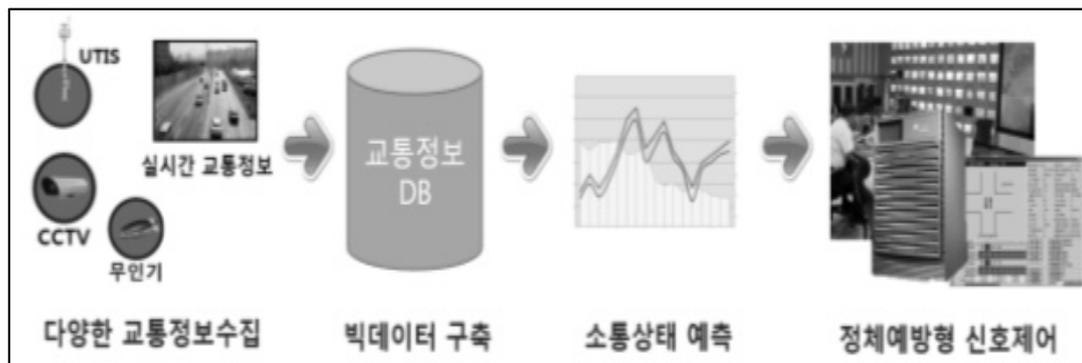
나. 분석의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중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과 저고도무인기 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할 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은 UTIS⁹⁾, CCTV, 무인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교통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¹⁰⁾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R&D 사업 흐름도]



자료: 경찰청

2018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장비시스템구축비가 전년 대비 6억 2,300만원(301.0%) 증액된 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9) 광역교통관리체계(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교통정보시스템으로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0)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과제로서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도로교통공단이 공동연구기관(8개 대학 및 10개 기업)과 다시 협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R&D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연구개발 인건비 (360-01목)	750	1,550	892	726	166	18.6
연구개발 경상경비 (360-02목)			664	311	△353	△53.1
연구개발 장비시스템구축비 (360-04목)			207	830	623	301.0
연구개발 연구활동비등 (360-05목)			311	207	△104	△33.4
계	750	1,550	2,074	2,074	0	0.0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대량 수집하는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추진한 광역교통정보 수집 시스템(UTIS) 구축 사업은 2017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¹¹⁾

이에 따라 장비시스템구축비로 “TEST-BED 구축 상용화를 위한 최적화” 과제¹²⁾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과제는 교통정보 수집량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이동통신단말장치)¹³⁾을 활용한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11) 경찰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UTIS) 사업을 추진하여 2,7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유사중복 사업으로서 재정보율성 확보 차원에서 2017년도부터 동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

12) 동 과제는 2016년부터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R&D사업의 정식 과제로 편성되었다.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TEST BED 구축 최적화 과제 세부내역]

구분		내 용
현장시스템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 실시간 신호제어 - 스마트폰 기반 교통정보 수집
	무선 LTE 모뎀	- 센터와의 통신 - SMS 알람/원격 리셋 기능 - Wi-Fi 접속기능
	구축공사	- 굴착 관로 신호등 지주 토목공사
센터시스템	VPN	- 방화벽(Firewall) 기능 구현
	신호RC	- 교차로별 교통신호제어 이중화 구성
	연계서버	- 타 기관 연계용
	S/W	- 상용S/W - 응용S/W 개발(신호제어, 교통정보 빅데이터뱅크)

자료: 경찰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3항은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¹⁴⁾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¹⁵⁾는 경찰관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14)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단말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 누구든지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적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타 정보와 상호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고도무인기 감시·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사업인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고도무인기 감시·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새로운 위협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확보 및 무인기 관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동 사업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8억원(200%) 증액된 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장비시스템구축비가 전년 대비 8억 6,100만원(232.8%) 증액된 12억 3,100만원, 연구활동비등이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351.4%) 증액된 4억 5,1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다. 이는 저고도무인기(드론)를 감시·식별하는 레이더 시제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2018년도 저고도무인기 감시·관리기술 개발 R&D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2017년 예산(A)	2018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연구개발 인건비(360-01목)	250	882	632	252.9
연구개발 경상경비(360-02목)	180	135	△45	△25.0
연구개발 장비시스템구축비(360-04목)	370	1,231	861	232.8
연구개발 연구활동비등(360-05목)	100	451	351	351.4
계	900	2,700	1,800	200.0

자료: 경찰청

한편, 다부처공동기획 R&D사업인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치안용 무인기(드론)를 개발하고 위해목적 또는 불법으로 출현한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저고도무인기 감시·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레이다(안티드론)는 감시 대상 드론의 위치, 침입방향, 예상경로 등 관측기술을 연구하려는 사업으로서,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의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와 추진단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드론의 감시·식별기술과 위해 또는 불법 드론의 강제 착륙 기술은 드론의 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술이라는 점에서 두 사업의 성과가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과 기체분자식별 R&D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필요

가. 현황

경찰청 소관 다부처공동기획 R&D사업 중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과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R&D)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7억 700만원,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R&D)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9억 1,700만원이 각각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다부처공동기획 연구개발(R&D) 계속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R&D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 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0	491	491	707	216	44.0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0	825	825	917	92	11.2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 소관 다부처공동기획 R&D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2017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재난·치안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무인항공기(드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7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71

억원, 소방청은 54억원, 해양경찰청은 44억원, 경찰청은 24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5개 부처에 편성된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41억 3,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7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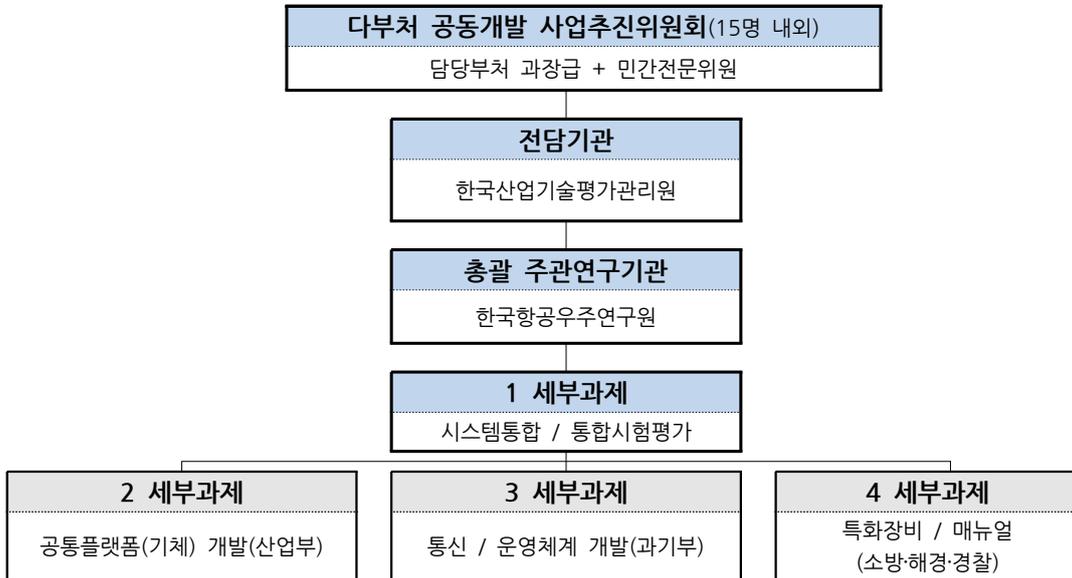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 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0	9,826	9,826	14,130	4,303	43.8
경찰청	0	491	491	707	216	44.0
산업통상자원부	0	3,439	3,439	4,945	1,506	4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3,931	3,931	5,652	1,721	43.8
소방청	0	1,085	1,085	1,565	480	44.2
해양경찰청	0	880	880	1,261	381	43.3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총괄 주관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스템 통합 및 통합시험평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통플랫폼(기체, 機體)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운영체계 개발,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에서 각각 특화장비 및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 추진체계]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7년도 예산 4억 9,100만원을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집행실적은 없다.¹⁶⁾ 2018년도 예산안은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6억 7,400만원, 기획평가관리비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17년 8월 22일 각 주제별 컨소시엄 대표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사업설계 구체화 및 시스템 개발규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6)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에서도 출연했으나 실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소방청(舊 국민안전처) 출연금은 사업공고 등 추진에 4,9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 과제별 시행기관]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과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세부과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세부과제	(주)휴인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주), (주)파인디앤씨, 네스엔텍, (주)지텔글로벌, 에이오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알이엠텍(주), 티움리서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화인코약
3세부과제	(주)솔탑	(주)코메스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이엠텔레콤(주)
4세부과제	(주)에이엔에이치 스트럭처	(주)씨메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우신에이팩, (주)명성하이텍, (주)하이트론씨시스템즈

자료: 경찰청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계속과제는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는 10개월 예산을 편성하되, 회계연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예산편성 개월수를 축소하고, 단가를 10% 삭감 적용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집행 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사업은 2017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사업은 테러 및 재난·범죄 등 현장상황별 위해기체에 대해 초동조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17)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p.31.

경찰청은 95억원, 환경부는 8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억원, 소방청은 7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억원¹⁸⁾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5개 부처에 편성된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38억 1,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경찰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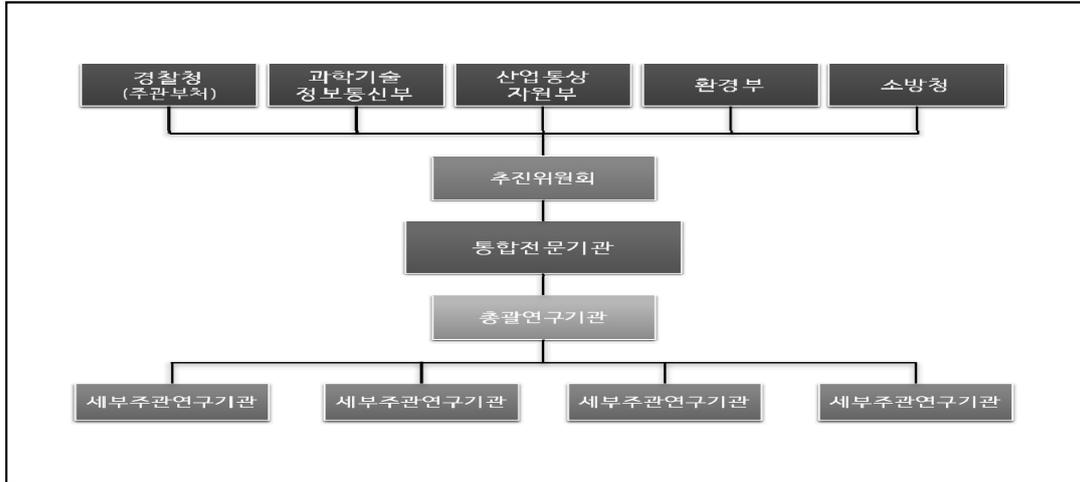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	2,820	2,820	3,819	1,123	35.4
경찰청	-	825	825	917	92	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25	1,125	1,250	125	11.1
환경부	-	495	495	1,339	844	170.5
소방청	-	375	375	313	△62	△16.5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주관부처 담당국장 및 참여부처 담당과장(5명), 외부 전문가(10명)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통합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개발과제 운영·관리 평가 및 출연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괄연구기관인 가천대학은 연구개발계획 및 세부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은 KAIS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한국화학연구원(환경부 사업), 호서대(소방청 사업)이 선정되었다.

18) 경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사업 추진체계]



자료: 경찰청

그런데, 경찰청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2017년도 예산 8억 2,500만원을 전액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였으나 해당 출연기관에서는 9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5개 부처 공통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처 간 조정기구 운영, 공통의 운영·관리 규정 마련, 관리기관 통합운영 등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적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도에는 10개월 예산을 편성하되, 회계연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예산편성 개월 수를 축소하고, 단가를 10% 삭감 적용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¹⁹⁾ 이에 따라 동 사업 예산안의 편성개월 수를 축소(12개월→9개월)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시 회계연도 불일치 및 예산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p.31.

1-3.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신규 R&D 사업 검토

가. 현황

2018년도 신규 R&D사업으로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²⁰⁾ 사업에 7억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²¹⁾ 사업에 13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2018년도 신규 R&D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R&D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 개발	0	0	0	700	700	순증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0	0	0	1,375	1,375	순증

자료: 경찰청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분야²²⁾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경찰)-수요자(국민)-생산자(연구자·기업)가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개발된 원천기술 등을 활용하여 리빙랩 방식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1:1로 사업비를 부담하되 한국연구재단을 폴리플랫폼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경찰청 소관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 코드: 일반회계 4235-400

21) 코드: 일반회계 4235-301

22) 경찰청은 생활치안분야를 국민체감도가 높고 현장 경찰관들이 시급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분야로 설명하고 있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예산 소요 내역]

(단위: 백만원)

2018사업계획안			중기재정계획안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2018년	2019년	2020년
전략과제	1개 × 1,000백만원 × 1/2	500	2,000	2,000	2,000
일반과제	5개 × 540백만원 × 1/2	1,350			
사업단 운영비	300백만원 × 1/2	150			
계		2,000			

자료: 경찰청

이를 위해 경찰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인건비 2,200만원, 연구개발경상경비 4,400만원, 연구개발활동비등 1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R&D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0	0	0	1,375	1,375	순증
연구개발인건비	0	0	0	22	22	순증
연구개발경상경비	0	0	0	44	44	순증
연구개발활동비등	0	0	0	1,310	1,310	순증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8년도에 전략과제 1개와 일반과제 5개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략과제는 경찰청 주도로 시급한 치안문제 발굴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까지 도출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가 제시된 과제이고 일반과제는 일반국민·현장경찰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 발굴 및 이를 해결할 솔루션 공모를 통해 도출되는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 사업은 폴리스랩플랫폼사업단의 전략과제 선정 및 일반과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경찰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사업 중 정보화사업으로 명시된 세부사업은 형사사법업무전산화,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교통행정전산화, 정보업무전산화,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경찰청홈페이지운영, 경찰병원전산운영경비 등 총 7개이다. 이들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 5,800만원(10.2%)이 감액된 70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찰청 소관 정보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정보화 세부사업명	2016년결산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형사사법업무전산화	4,010	11,702	2,663	△9,039	△77.2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6,795	6,208	6,155	△53	△0.9
교통행정전산화	3,075	4,061	3,659	△402	△9.9
정보업무전산화	1,494	1,271	1,201	△70	△5.5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53,842	52,277	53,618	1,341	2.6
경찰청홈페이지운영	233	242	242	0	0.0
경찰병원전산운영경비	4,347	2,878	3,043	165	5.7
계	73,796	78,639	70,581	△8,058	△10.2

자료: 경찰청

2018년도 예산안에는 7개의 정보화사업 외에도 다수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경찰정보화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

경찰청은 「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 규칙」(경찰청예규)에 따라 경찰정보화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찰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안전 활동 등 경찰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

법령명	관련 훈령·예규·고시·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동계약운용요령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예정가격 작성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지정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서 준용
기타 정보화 사업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자료: 「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 규칙」 [별표1]

2-1. 형사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유지보수비 편성 개선과제

가. 현황

형사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²⁾는 경찰의 수사업무 지원을 위해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³⁾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90억 3,900만원(77.2%) 감액된 26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형사사법업무전산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6년결산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형사사법업무전산화	4,010	11,702	2,663	△9,039	△77.2
KICS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915	1,992	2,663	671	33.7
고유식별정보암호화	2,094	9,710	0	△9,710	순감

주: 고유식별정보암호화 사업은 2017년도 완료 예정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수사시스템통합경비 50억원으로 경찰청 소관 17개 수사시스템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연계하였으며, 동 시스템은 법무부, 검찰, 대법원 등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되어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1231-511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경찰·검찰·법원·법무부·해양경찰청 등의 형사사법 공통 정보화시스템으로 각 기관의 소관시스템에 대해 독자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각 형사사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유통표준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형사사법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3년 수사지원관련 정보화시스템 통합 현황]

사건수사시스템 흡수	사건수사시스템과 DB통합	표준연계방식으로 개선
1. 수사종합검색시스템	1.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1. 지문감정시스템
2. 마약프로파일링시스템	2. 범죄통계시스템	2. 주민원지관리시스템
3. 강력범죄수사지원시스템	3. 범죄첩보분석시스템	3. 즉응적시스템
4. 선거사범관리시스템	4. 수사관직무평가시스템	4. 지문자동검색시스템
	5. DNA신원확인시스템	5. 전자수사자료표시시스템
	6. 증거물관리시스템	6. 지문자료관리자동화
	7.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3.4, p.229.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KICS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개발SW 유지보수와 인프라 유지보수로 구분되어 있고, 개발SW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2억 3,300만원 (16.9%) 증액된 16억 1,500만원이, 인프라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4억 3,800만원(71.8%) 증액된 1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찰 형사사법업무전산시스템(KICS) 유지보수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B-A)/A]	
개발SW 유지보수	1,382	1,615	233	16.9	
인프라 유지보수	상용SW 유지보수	426	741	315	73.9
	HW 유지보수	184	307	123	66.8
	소계	610	1,048	438	71.8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형사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8년도에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 완료될 예정인 “빅데이터 범죄분석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상용SW의 유지보수비를 KICS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2018년도 KICS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0억 4,800만원에는 2013년도에 통합된 SW와 HW 유지보수비 외에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R&D) 사업⁴⁾의 현장대응역량 강화기술·장비 개발 과제인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알고리즘 및 분석모형 개발” 사업(2018년 예산안은 3년차 연구개발비 1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서 구입(2016년 예산 4억 600만원 집행)해서 사용 중인 WEX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 1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알고리즘 및 분석모형 개발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실적 및 계획	예산(안)
2016년 (1차년도)	- 침입절도, 성폭행,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코어데이터 추출 및 추출기법 개발 -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 구동기반 및 사용자환경 설계	1,527
2017년 (2차년도)	- 살인, 상해, 폭행, 강도, 사기(투자, 보험), 방화, 공공장소 성추행 범죄 코어데이터 추출 및 추출기법 개발 - 범죄분석 프로그램 구동기반 및 사용자환경 구축	2,327
2018년 (3차년도)	- 추가적 분석 대상 범죄(장물, 위변조, 문화재절도) 유형 코어데이터 추출 및 추출 기법 개발 - 범죄분석 프로그램 구동기반 및 사용자환경 개발 완료 - 시범 운영, 범죄분석 프로그램 및 예측 알고리즘 검증	1,410

자료: 경찰청

이처럼 다른 사업에서 구입한 상용SW 유지보수비를 ‘KICS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KICS전산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통합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집행범위가 모호하므로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HW, 개발SW, 상용SW, 공개SW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는 개발SW 유지보수비와 인프라 유지보수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인프라유지보수비 중 일부를 상용SW 유지보수비로 집행하고 있다.

4) 코드명: 일반회계 4235-611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HW”, “개발SW”, “상용SW”, “공개SW”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해당 지침대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2-2.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사업의 정보시스템 성격에 따른 분리 편성 필요

가. 현황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⁵⁾ 사업은 경찰관서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사무용PC 등을 보급하는 등 경찰행정업무시스템을 정보화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장비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3억 4,100만원(2.6%) 증액된 53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53,842	52,277	52,277	53,618	1,341	2.6
일반수용비	248	245	245	245	0	0.0
공공요금 및 제세	14,998	15,169	15,169	14,969	△200	△1.3
임차료 납입	26,989	26,948	26,948	28,332	1,384	5.1
시스템 등 유지보수	7,510	7,539	7,539	8,084	545	7.2
관리용역비	-	-	-	95	95	순증
시스템고도화 등 연구개발	1,203	800	800	258	△542	△67.8
백신S/W 등 구입	2,885	1,565	1,565	1,624	59	3.8
운영비 등 기타	10	11	11	11	0	0.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사업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시스템과 내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구분·편성하여 세부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동 사업을 통해 총 23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참여형 목격자정보 공유시스템(485백만원), 사회적약자 종합지원시스템(384백만원), 선진치안정보시스템(1,026백만원), 피해자인권포털시스템, 캠퍼더영상편집시스템 등의 운영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80억 8,400만원)가 편성되었다.

5) 코드: 일반회계 4234-511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사업 내 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 현황]

(단위: 백만원)

시스템명	구축연도	고도화 연도	시스템 설명	2018년 예산안
선진치안정보시스템	1973		공조수사 및 온라인조회	1,026
경찰종합정보체계 네트워크	1996	2013~2017	전국경찰관서정보통신망	1,508
경찰행정업무시스템	1997	2015	경찰행정업무시스템	313
치안성과관리시스템	2006	-	경찰청 성과관리	50
전자문서회의시스템	2006	-	종이없는 회의시스템	7
지식관리시스템	2007	-	업무지식 및 노하우 공유	41
통합화상회의시스템	2008	2016	영상회의시스템	41
통합메시징시스템	2008	-	민원서비스 및 내부업무활용	1
플넷	2009	2015	경찰정보화 중추 시스템	958
청사첨단무인경비시스템	2009	-	출입자 관리, 출입기록 등	68
정보기술아키텍처	2011	-	경찰청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종합 등록 관리	95
비밀관리시스템	2011	2013	비밀문서 생산과기 전 과정 전자화	0
사회적악자종합지원 시스템	2011	2013	사전등록, 위치추적등을 통하여 실종아동 등 발견 및 예방	384
IP관리시스템	2011	-	IP 관리 및 비인가 접속제한	2
지방청홈페이지통합	2013	2013~2015	지방청 홈페이지 서버 통합	24
SW자산관리시스템	2014	-	SW관리효율 및 불법사용방지	6
국민참여형목격자정보 공유시스템	2015	2016	국민이 목격한 교통법규위반, 공개수배 정보 신고 및 제보	485
경찰대학정보화시스템	2015	-	경찰대학 학사운영 정보	306
웨어러블폴리스시스템	2015	-	현장 경찰관 직무수행 보호 및 영상자료관리	52
경찰사이버보안관제센터	2016	2016~2017	정보보호시스템 통합관제	1,080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2016	-	온나라시스템 저장공간 증설	166
피해자인권포털시스템	2016	-	피해자및인권보호활동 입력·관리·분석	13
캠코더영상편집시스템	2016	-	캠코더 교통법규위반 단속영상을 교통관리시스템과 연계	25

자료: 경찰청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관리되는 정보시스템에는 경찰청의 내부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 종합지원시스템, 국민참여형 목격자정보공유시스템 등 일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국민과 관련되는 정보시스템 현황]

(단위: 백만원)

시스템명	구축 연도	구축 비용	이용 대상	국민이용 내용	관리 실적
사회적약자 종합지원	2011~2013	8,400	대국민	실종아동 등 사회적약자 신고, 보호서비스 정보	실종자 3만건 발견 (16년)
국민참여형 목격자정보 공유	2015. 4월	1,718	대국민 /내부	실명, 익명 체보 등록 및 목격자 찾기 등록	체보 1,216,589건 접수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⁶⁾에서도 경찰통합포털(폴넷) 이용건수와 국민제보시스템 처리건수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정하고 있으나, 시스템이용자인 국민의 만족도 등은 성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2018년도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사업 성과지표 현황]

(단위: 건, %)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통합포털 이용건수 (인당)	목표	2.48	2.63	2.81	2.81	2.90	통합포털(스피드 수배+ 메일+메신저+계시판) 일일평균 등록 건수/ 전체인원	시스템상 통계자료
	실적	2.57	2.86	3.00	2.69 (추정)	-		
	달성도				-	-		
스마트국민 제보시스템 처리 건수 증가율(%)	목표	신규	신규	10	15	16	{(17년 월평균 처리건수 - '16년 월평균 처리건수) / '16년 월평균 처리건수} × 100	시스템상 통계자료
	실적	신규	신규	283	14 (추정)	-		
	달성도				-	-		

자료: 경찰청

6) 경찰청, 「2018년도 성과계획서」, 2017, p.169.

따라서 동 사업의 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공개 운영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업은 경찰청 내부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과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세부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3.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업 중 장비보급사업의 정보화사업 이관 필요

가. 현황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업⁷⁾은 사이버수사 경찰관의 사이버범죄예방 및 검거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5억 8,800만원(203.0%) 증액된 38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사이버안전수사활동	6,795 ⁷⁾	1,272	1,272	3,860	2,588	203.0
사이버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503	516	516	519	3	0.6
전문인력 교육훈련	244	254	254	929	675	421
국제협력 공조수사	182	282	282	277	△5	△1.7
사이버·포렌식 수사지원 활동	0	220	220	2,135	1,915	870.5
공공요금	496	0	0	0	0	0
사이버수사 인프라구축 및 운영	2,143	0	0	0	0	0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227	0	0	0	0	0

주: 사업분리전(중전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업 예산에 포함된 공공요금, 사이버수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2017년도부터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으로 이관)

자료: 경찰청

이 중 내역사업인 사이버·포렌식 수사지원 활동 사업에 사이버테러 수사용장비 구매, 수사국 내 사이버안전국 소관 특정업무경비(수사활동비) 이관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1,500만원(870.5%) 증액된 총 2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다.

7) 코드: 일반회계 1233-311

나. 분석의견

사이버·포렌식 수사지원활동을 위한 SW와 HW 장비 보급 사업은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정보화사업과 통합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18년에 동 사업을 통해 사이버테러 수사용장비를 구매하여 사이버·포렌식 수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자산취득비 14억 5,900만원(추적분석용 소프트웨어 4억 1,600만원, 하드웨어 1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Encase) 64식, 워크스테이션 64대, 현장압수수색장비(Falcon) 48대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도 사이버테러 수사용장비 보급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명칭	장비성능	이미지	산출내역	산출액
소프트웨어	Encase	디지털증거 정밀 분석용 주 S/W		6,500천원×64식(본청 16식 + 지방청 48식(팀당2식))	416
하드웨어	워크스테이션	디지털증거 분석용 대용량·고사양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11,800천원×64대(본청 16대 + 지방청 48대(팀당2대))	755
	Falcon	디지털증거 복제·수집(이미지캡처) 장비		6,042천원×48대 (지방청 48대(팀당2대))	288
소계					1,043
합계					1,459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사이버수사⁸⁾ 단위사업에서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6개의 사이버수사정보시스템과 2개의 디지털포렌식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8) 코드: 일반회계 1233

[사이버수사시스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시스템명	구축 연도	고도화 연도	2018년 예산안
사이버수사 정보시스템	경찰청·방심위 수사공조 시스템	2017	-	40
	사이버수사 포털시스템	2012	2015/2016	100
	사이버캡 모바일앱	2014	2015/2017	50
	온라인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2016	2017	300
	사이버첩보관리 시스템	2016	-	180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2015	2017	290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시스템	디지털포렌식 포털시스템	2011	2013/2015 2016	341
	모바일기기 분석 프로그램 등	2010	2017	200

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업을 통해 구입할 계획인 장비들은 각 장비의 구매 후 탑재 또는 상호연계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가능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 정보화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

2-4. 외사경찰활동 사업의 인터폴 통신보안장비 교체시 보안대책 이행 필요

가. 현황

외사경찰활동 사업⁹⁾은 외국인범죄 및 국제범죄 대처능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찰청은 외사수사사건 통·번역비, 외사정보지원, 체류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산업기술유출수사 등 국제범죄수사, 외사사범수사활동, 관광경찰운영 등의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억 300만원(3.7%) 증액된 16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외사경찰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사경찰활동	16,017	16,250	16,250	16,853	603	3.7
외사사범수사활동	757	631	631	1,296	665	105.4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인터폴 통신보안장비 교체 사업을 통해 별도의 병렬적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므로 향후 관련 보안대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사사범수사활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외사수사장비 구입경비가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485%) 증액된 7억 7,800만원 편성되었다. 이 중 인터폴 노후 통신보안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억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9) 코드: 일반회계 3132-311

[2018년도 인터폴 노후 통신보안장비 교체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안
노후장비교체	391
신규장비구입	254
계	645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동 사업을 통해 현재 설치·운영 중인 인터폴 전용통신망¹⁰⁾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사이버 테러 등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의 신규도입 및 이중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동 시스템이 2003년에 최초 구축되어 장비가 노후되어 있고, 세계 190개국과 연계된 국가중요통신망에 대한 공격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안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며, 동 시스템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연계사용하는 것으로 1개 기관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망이 무력해지므로 통신망 공격에 대비한 병렬적 망을 구성하여 경찰청에서 단독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¹¹⁾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

10) 인터폴 본부인 프랑스 리옹의 사무총국에서 각 회원국의 중앙사무국(한국의 경우 경찰청)에게 제한적(ID, PASS) 권한을 부여하여 송·수신하고 있는 인터폴 전용통신망이다.

11)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생략)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영

2. 전자문서가 보관·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유통시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향후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 관련 보안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경미범 및 소년범 감경처분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가. 현황

경찰청은 생활안전활동¹⁾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을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보호활동²⁾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2년부터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생활안전활동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3,100만원(11.4%) 감액된 12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4,600만원(3.5%) 증액된 13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및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생활안전활동 사업	13,981	14,219	14,219	12,588	△1,631	△11.4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400	516	516	549	33	6.0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사업	13,684	12,631	12,631	13,077	446	3.5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682	682	682	682	0	0.0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경미범죄의 기준과 심사안건 선정에 관한 기준을 내부방침으로 정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성인 대상)와 선도심사위원회(청소년 대상)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시민위원을 위촉하여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16년에 1급지 경찰서에만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 2급지 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고, 선도심사위원회는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11

2) 코드: 일반회계 1132-311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순간적인 실수 또는 생계형 범죄 등 안타까운 경미 형사범(장발장)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처벌을 감경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빠른 사회 복귀 지원 등을 통해 법집행 신뢰도 제고		
연혁	2016년- 전국 1급지 경찰서(142개서) 대상 최초 실시 2017년- 전국 1·2급지 경찰서(184개서)까지 확대 시행 중		
경미범죄 정의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중 다액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심의대상 안건 선정과정	형사·즉결심판 사건 → 생활안전과 인계 → 경찰서장 결재 → 위원회 개최 ※ (심사가능사건) △즉결심판 청구 사건 △형사입건된 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무전취식, 무임승차)·폭행사건 △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무전취식, 무임승차)·폭행사건 최종 이외의 형사입건 사건 중 즉결심판청구대상이 된다고 경찰서장이 결정한 사건 ※ (심사대상선정) 최근 5년 이내 전과 없는 고령자(70세 이상)·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자가 피의자가 된 사건		
의결 후 처리절차	구 분	경미형사사건(입건)	즉결심판청구사건
	감경 처분	즉결심판청구(법원)	훈방
	원처분 유지	기존대로 처리 (입건 : 검찰 송치 / 즉결심판 : 법원 청구)	

자료: 경찰청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감경처분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합계	경미형사사건 (→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 청구사건 (→훈방조치)
2016년	인원	2,724	1,664	1,060
	처분감경 결정건수	2,419	1,557	862
	선처비율	88.8	93.6	81.3
2017년 상반기	인원	2,652	2,396	256
	처분감경 결정건수	2,536	2,293	243
	선처비율	95.6	95.7	94.9

자료: 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경미한 소년법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입건·즉결심판·훈방)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 유도
연혁	2012년 - 전국 경찰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가해학생 대상으로 선도심사위원회 실시 2013년 - 위원회 회부 대상을 전체 소년범으로 대상 확대 2014년 - 가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결정 기능 추가(생활법률의료 등 지원연계)
경미범죄 정의	소년범의 죄질이 경미하여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하고,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는 죄를 범한 사건(즉결심판 대상 가능 사건)
심의대상	- 대상자: 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대상사건: 죄질이 경미하여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하고,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폭력서클 연관상습·보복성범죄 등 중한 사안 제외
의결 후 처리절차	- 입건 결정 시 입건 후 검찰로 송치 △ 즉결심판 결정 시 법원에 청구 - 훈방 결정 시 훈방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

자료: 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 감경처분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처분결정(명)				지원결정							
	계	입건	훈방	즉심	지원인원(명)			지원건수(건)				
					계	가해	피해	계	생활	상담	의료	법률
2016년	2,835	205	1,395	1,235	2,310	1,297	1,013	2,581	881	1,562	47	91
2017. 6월	1,560	65	748	747	984	670	314	1,066	287	700	15	64

나. 분석의견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경찰서 과장급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 구성 개요]

구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내부위원 (위원수)	경찰서 과장급 (2명 이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1명)
외부위원 (위원수)	법률전문가·교수·의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자 (3명 이상)	· 자치단체·청소년단체·의사·변호사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선도 경험과 관심이 풍부한 전문가 ·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선도·지원을 위해 역할별 분과를 구성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위원 (2명 이상)
간사	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또는 즉시담당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매년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경찰대학 운영 사업 검토

경찰대학운영 사업¹⁾은 경찰대학의 경찰간부 양성, 직무교육(치안정책과정,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전문화과정), 치안과학기술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200만원(0.2%) 감액된 92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찰대학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경찰대학운영	11,509	9,285	9,285	9,263	△22	△0.2
경찰대학생 학사과정	3,627	3,687	3,687	3,825	138	3.7
치안정책과정 등 직무교육	785	781	781	842	61	7.8
경찰대학 운영경비	6,474	4,193	4,193	3,179	△1,014	△24.2
치안연구소 운영경비	623	624	624	703	79	12.7
치안대학원 운영	0	0	0	714	714	순증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8년도에 경찰공무원 3,000명에 대한 코호트 조사²⁾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경찰개인 및 조직특성 패널조사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고, 「경찰대학설치법」³⁾ 제1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인 치안대학원 운영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4131-311

2) 코호트 조사(Cohort Study)는 처음 조건이 동일하게 주어진 집단(Cohort)에 대하여 이후의 경과와 결과를 알기 위해 미래시점까지 추적조사하는 방법이다.

3) 「경찰대학설치법」

제1조(설치) ①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4-1. 치안대학원 운영사업의 개선과제

가. 현 황

경찰청은 치안 부문의 학술연구 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도부터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안대학원은 석사 주·야간 과정 각 20명씩(총 40명),⁴⁾ 수사학·범죄학·공공안전학과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운영 계획]

구분	운영 계획
교육과정	석사주간, 석사야간, 박사의 3개 과정(박사과정은 2019년도부터 운영 추진)
입학정원	학년별 50명 -과정별: 석사과정 40명(주간 20명, 야간 20명), 박사과정 10명 -학과별: 학과별 동일 비율로 하되, 지원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학과전공	3개 학과(수사학, 범죄학, 공공안전학), 6개 전공(범죄수사·수사법제/범죄예방·범죄분석/공공안전법학·공공안전행정) 구성

자료: 경찰청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2항⁵⁾은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교육부에 치안대학원 전공교과 운영계획이 포함된 치안대학원 학칙(안)을 송부하면서 2017.8. 24(목)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통보⁶⁾하였으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아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4) 치안대학원은 경찰관 3분의2, 경찰관이 아닌 사람 3분의1로 하고, 경찰청은 경위 이상 입직자가 최대 1/3(주·야간 각 6명)이 넘지 않도록 선발할 계획이다.

5)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교과) ②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명의(교육계장 전결)로 교육부장관(대학정책과장, 대학학사제도과장)을 수신자로 보낸 “경찰대학 학칙 등 개정안 관련 의견검토 요청” 공문(2017.8.14.결재)에는 경찰대학 학칙 전부개정안과 치안대학원 학칙 제정안을 붙임자료로 송부하고, 2017.8.24(목)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외래강사료 2억 2,200만원, 대학원학사정보시스템 개발 4억 2,900만원 등 7억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치안대학원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	2018년 예산안
치안대학원 운영		714
외래 및 초과·야간 강의료	외래강사료(76), 전임교수 초과야간 강의료(146)	222
치안대학원 홍보활동비	홍보포스터·브로셔	19
치안대학원 입학전형경비	외부 및 내부 면접관 위촉비	5
치안대학원 학사추진 경비	오리엔테이션, 체육대회	3
치안대학원 운영	출장여비, 연구용도서 구입	15
필수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	PC, 복사기 등 운영비	21
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등 개발	SW개발 및 HW 장비 구매(389) 홈페이지 제작비(55)	429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대학의 치안대학원 운영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치안대학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27)는 대학원을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위과정(석·박사), 수여학위(학술·전문학위), 교원·시설 활용 등이 각각 상이하다.

7)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비교]

구 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 목적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 직업분야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학위 과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 可	석사과정
수여 학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학술학위	전문학위(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可)	전문학위
학부 교원·교사·시설 활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제1항)	학부와 연계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전용 교사시설 확보	학부와 연계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치안대학원은 「경찰대학설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므로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치안대학원이 교육에 관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학위수여 등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을 따르거나 준용하고 있는 취지와 설립목적을 감안할 때 충분한 교육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설립운영을 위한 교사시설 구분]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 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자료: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를 바탕으로 제작성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대학의 시설이 충분하므로 치안대학원의 교사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찰대학은 현재 교사(校舍) 89,010㎡, 교지(校地) 783,965㎡이며 교원은 37명이다.

[경찰대학 교사·교지·교원 현황]

구분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기준	현황
교사	12,000㎡(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12㎡*학생정원 1,000명)	89,010㎡
교지	12,000㎡(교사기준면적이상)	783,965㎡
교원	16	37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현재 경찰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경우 경찰대학생용 현장실습실과 사이버수사실습실이 각 1개씩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 실험실습실 현황]

실험실명	개 수	면적
현장실습실	1	222.28 ㎡(67평)
사이버수사실습실	1	173.58 ㎡(53평)

자료: 경찰청

둘째,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의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경비 4억 2,900만원은 SW개발비(3억 3,400만원)·홈페이지제작비(5,500만원)·HW구입비(4,000만원)로 구성된다.

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이나 ISP를 수립하고, 장비임차료,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등의 소요비용을 점검하여 타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⁸⁾

다만,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시급성으로 인해 BPR이나 ISP를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8)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기획재정부, pp.43~64.

4-2. 치안정책연구소 경찰관패널조사 사업의 개선과제

가. 현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개 과(課) 2개 연구부, 6개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 등 40명⁹⁾이 배치되어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운영경비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900만원(12.7%)이 증액된 7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경비	624	624	703	79	12.7
강사료	25	25	25	0	0.0
수용비	343	343	343	0	0.0
공공요금	13	13	13	0	0.0
임차료	9	9	9	0	0.0
여비	32	32	32	0	0.0
업무추진비	19	19	19	0	0.0
정책연구비	178	178	178	0	0.0
자산취득비	5	5	5	0	0.0
경찰 개인 및 조직특성 패널조사	0	0	79	79	순증

자료: 경찰청

2018년에 신규로 반영된 경찰 개인 및 조직특성 패널조사 사업의 예산안은 코호트조사 경비 1,500만원, DB구축 및 자료처리의 보조인력으로 위촉직 박사 및 석사 각 1명, 일용직 5명 활용에 필요한 일용임금 인건비 4,500만원, DB구축비 8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9) 경찰관 14명, 고위공무원 2명, 서기관 1명, 전문경력관 19명, 공업서기보 1명, 공업연구관 1명, 행정일반직 2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경찰개인 및 조직특성 패널조사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18년 예산안
경찰개인 및 조직특성 패널조사		79
코호트조사비	3,000명*5천원	15
사업인건비	박사 1명*12월(패널연구 모듈개발 및 코호트 DB구축 보조) 24백만원 석사 1명*12월(데이터코딩 및 자료처리 보조) 18백만원 일용직 5명*5일 3백만원	45
여비	국내출장 10만원*3명*10회	3
전문가활용비	자문위원회 전문가 수당 20만원*5명*4회	4
DB구축비	중단 DB 유지보수	8
기타비용	회의비, 도서구입, 자료발간 경비	4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 개인 및 조직특성 패널조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2018년도부터 경찰조직 구성원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경찰 조직, 인사관리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경찰개인 및 조직특성 패널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중앙경찰학교 신입순경 외에 경찰교육원 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입학생 등 경찰공무원 3,000명에 대해 동일 조사대상자에게 주기적으로 동일 질문을 반복 실시하는 코호트조사 방법으로 5년간 입직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퇴직시까지 추적조사를 할 계획이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참여자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추진의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¹⁰⁾

10) 경찰청은 연도 내 관련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하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생활안전활동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가. 현황

생활안전활동¹⁾ 사업은 지역경찰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3,100만원 (11.4%) 감액된 12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생활안전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생활안전활동	13,981	14,219	14,219	12,588	△1,631	△11.4
협업치안 인프라강화	1,683	1,472	1,472	2,674	1,202	81.7
풍속사범단속역량강화	634	635	635	605	△30	△4.7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관리운영	537	338	338	338	0	0.0
지하철경찰대 등 특수지역 경찰환경개선	720	799	799	797	△2	△0.3
기동순찰대운영	3,478	1,620	1,620	981	△639	△39.4
지역경찰감염예방을 위한 현장장비보급	3,304	5,133	5,133	1,678	△3,455	△67.3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394	516	516	549	33	6.4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제공	354	721	721	1,593	872	120.9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0	0	0	382	382	순증
기타 범죄예방활동지원	382	2,985	2,985	2,991	6	0.2

자료: 경찰청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11

나. 분석의견

생활안전활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법협력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협업치안인프라 강화사업을 통해 방법협력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8,100만원(682.7%)이 증액된 1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예산안은 방법협력단체 운영에 13억 4,400만원, 자율방법대 간담회 업무추진에 1,0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다.

[2018년도 방법협력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방법협력단체 활성화 지원	173	173	1,354	1,181	682.7
일반수용비	162	162	1,344	1,182	729.6
업무추진비	11	11	10	△1	△9.0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방법협력단체 운영 사업을 2017년까지는 각 지방청 및 지방경찰서에서만 연 1회 추진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이를 지구대 및 파출소까지 확대하고 회수를 연 6회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

[방법협력단체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B-A)/A]
지방청	100만원×17개청=17	100만원×17개청=17	0	0.0
경찰서	49.9만원×252=126	47.8만원×254×6회=728	602	477.8
지구대·파출소	0	5만원×1,995개×6회=599	599	순증
계	143	1,344	1,201	839.9

자료: 경찰청

2) 2017년 8월 현재 경찰서는 254개, 파출소는 1,463개, 지구대는 514개이다.

이와 같이 방법협력단체 지원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단체들이 민관협력을 통한 치안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청 방법협력단체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조직	인원
자율방범대	4,335	106,261
생활안전협의회	2,040	39,376

자료: 경찰청

참고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예방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6.7.29.)과 「범죄예방 기본법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2016.11.9.)에서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6건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의안번호	발의의원	제안일자	심사경과
2009581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9.25	행정안전위 회부
2007237	이만희의원 등 13인	2017.6.7	행정안전위 회부
2004999	홍문표의원 등 10인	2017.1.6	행정안전위 회부
2003191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6.11.1	행정안전위 회부
2002447	이명수의원 등 11인	2016.9.23	2016.11.7. 행정안전위 상정
2001845	박완주의원 등 12인	2016.8.26	2016.11.7. 행정안전위 상정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13개)의 경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제공 사업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제공 사업을 통해 건축·도시·환경디자인의 방법인증 표식을 보급하고, 이를 위해 범죄예방진단팀과 범죄예방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7,500만원(96.3%)이 증액된 1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범죄분석정보를 DB로 구축하는 범죄분석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연구비 8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문서비스 제공	909	1,784	875	96.3
일반수용비	619	622	3	0.5
공공요금	32	32	0	0.0
피복비	225	225	0	0.0
국내여비	0	51	51	순증
업무추진비	33	30	△3	△9.1
일반연구비	0	824	824	순증

자료: 경찰청

현재 174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2016.1 제정)에서 시장은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경찰청·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³⁾

또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예방기본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욱의원 대표발의, 2016.7.29.)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점,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및 범죄예방시설에 관한 추후 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18년에 여성안심거리 279개소를 조성하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79개소 거리마다 신고안내표지판, LED디자인등, 양방향통신 비상벨, 반사경 등을 설치하는 경비로 총 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안 산출내역	2018년 예산안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382
신고안내표지판	50,000원×279개소	622
LED디자인등	300,000원×279개소	32
양방향통신 비상벨	1,000,000원×279개소	225
반사경	20,000원×279개소	51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개인주택이나 골목길 등 사유시설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신고안내표지판, LED전등, 반사경, 통신비상벨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7대 대도시 내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여성안심귀갓길]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79	80	58	41	28	28	31	13

자료: 경찰청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도시환경디자인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야 확보, 자연적 감시 가능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배치, 조경 또는 보안등 등의 조명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나 울타리에 조경 및 조명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안심귀갓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여성안심귀갓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구축된 시설물들의 추후 관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체류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가. 현황

외사경찰활동 사업¹⁾은 외국인범죄 및 국제범죄 대처능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억 300만원(3.7%) 증액된 16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외사경찰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외사경찰활동	16,017	16,250	16,250	16,853	603	3.7
외사사건수사통번역비	505	505	505	505	0	0.0
외사정보지원	12,179	12,473	12,473	12,254	△219	△1.8
체류외국인 범죄예방활동	631	631	631	906	275	43.6
산업기술유출수사 등 국제범죄수사	347	619	619	349	△270	△43.6
외사사범수사활동	757	631	631	1,296	665	105.4
관광경찰운영	949	878	878	877	△1	△0.1
기타 외사경찰운영	627	490	490	667	177	36.1
항만분실 지원	22	22	22	0	△22	순감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체류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운전면허교실, 외국인도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체류외국인 범죄피해 예방교육, 외사치안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3132-311

[2018년도 체류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체류외국인 범죄예방활동	631	631	906	275	43.6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운전면허교실	321	321	321	0	0.0
외국인도움센터 운영	181	181	181	0	0.0
체류외국인 범죄피해 예방교육	0	0	138	138	순증
외사치안협의회 운영	0	0	57	57	순증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첫째, 외국인도움센터 운영, 체류외국인 범죄피해 예방교육 및 운전면허교육 등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는 사회통합기반구축 및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에 체류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운전면허교실, 외국인도움센터 운영, 체류외국인 범죄피해 예방교육 예산안은 각각 3억 2,100만원, 1억 8,100만원, 1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교실 사업은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시설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등이 이론교육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NGO 시설 등 333개소를 외국인도움센터로 지정²⁾하여 범죄피해 신고나 상담 요청이 접수된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 사업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는 체류외국인 처우 개선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업들과 사업목적, 대상, 추진방법 등에서 유사하므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도움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183개소로 전체 외국인도움센터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공공기관이 55개소로 16.5%를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 국내체류외국인 처우 개선 및 사회통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사업내용	수행방법	활용조직	2018년도 예산안
경찰청	외사경찰활동 강화	외국인도움센터 운영	직접수행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및 NGO등 (333개소)	321
		체류외국인 범죄피해 상담 등 범죄예방교육			138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운전면허교육	직접수행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321
법무부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지원	직접수행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1,6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재한외국인 언어, 문화 습득프로그램 운영	직접수행	308개 기관	6,85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예정자 조기정착 지원	직접수행 또는 보조	다문화 가족종합정보센터	3,92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직접수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66,985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외사치안협의회 운영 사업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18년도에 외국인밀집지역 11개 경찰관서(미정)를 대상으로 주민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하는 외사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범죄대응 및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도 외사치안협의회 운영 사업의 예산안은 5,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홍보비, 협의회 운영비, 합동순찰장비 구입비, 간담회 경비로 구성되며, 1개소당 약 500만원이 지원된다.

[외사치안협의회 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18년 예산안
홍보비	30만원×11개소×4회	13
협의회운영비	34만원×11개소×4회	15
합동순찰장비구입비	4만원×11개소×40명	18
간담회비	2만원×11개소×15명×4회	12
계		57

자료: 경찰청

외사치안협의회가 지역치안인프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사치안협의회 구성 및 지원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범죄대응역량강화 사업¹⁾은 112신고시스템, 방범용CCTV 설치·운영으로 신속한 범인검거 등 112신고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100만원(4.2%) 감액된 136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범죄대응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범죄대응역량강화	15,492	14,238	14,238	13,637	△601	△4.2
112표준시스템고도화 및 유지·운영지원	12,495	12,048	12,048	12,083	35	0.3
방범용 CCTV운영	2,577	1,745	1,745	873	△872	△50.0
총포·화약안전관리운영	421	445	445	681	236	53.0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112표준시스템고도화 및 유지·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112종합상황실은 17개 지방경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112신고의 접수 및 광역·대형 사건 발생시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형사출동), 교통순찰차 및 고속도로순찰차(교통출동),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 대한 지령을 담당하고, 경찰서는 일반사건의 지령 및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12

[112종합상황실 인력 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상황실장	상황팀		관리팀
			접수	지령	
계	3,755	269	738	2,220	528
지방청	1,061	17	738	220(접수 포함)	86
경찰서	2,694	252	-	2,000	442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112신고 총력대응에 사용된 개인위치정보이용 건수 및 관련 요금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동 사업의 공공요금 예산안에는 LBS²⁾회선 사용 공공요금(이하 “위치정보 이용요금”) 1억 1,900만원, 순찰차용 단말기 통신료 21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112표준시스템 공공요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정보	수량	월이용료	이용 월수	2018 예산안
위치정보조회 회선료	LBS위치기반정보	3개청	330만원	12	119
순찰차용 단말기 통신료	통신	5,151대	3.5만원	12	2,163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이 설치된 17개 청 중 3개청(본청, 서울청, 경기청)에만 LBS(Location Based Service)회선³⁾ 위치정보이용장비를 구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LBS회선을 통한 위치정보이용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회선에 비해 신고자의 위치 측위값 송수신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위치기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제공시스템의 하나이다.

3) LBS통신서비스는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의미로도 사용된다.

[LBS·GPS 위치정보 측위방식 비교]

구분	측위방식	특징	오차범위	LBS	GPS
Cell 방식	휴대전화 등이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 측정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사용 가능	수백m ~수Km	○	×
GPS 방식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 등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측정	건물 밖 정보 수집	수십m	○	○
Wi-fi 방식	휴대전화 등의 Wi-fi가 연결된 무선 인터넷공유기의 위치를 통해 측정	건물내부·지하 정보 수집 가능	수십m	○	×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그런데, 2016년도 경찰청 본청의 112표준시스템 위치정보이용요금 집행실적을 보면, 동 사업에서 100만원, 생활안전활동 사업의 공공요금에서 500만원, 생활안전국기본경비 사업의 공공요금에서 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이 외에 위치정보이용요금과 전화요금을 일괄집행한 금액이 49억 600만원에 달한다. 다만, 경찰청은 일괄집행한 금액 중 위치정보이용요금은 1억 3,3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2016년 112표준시스템 위치정보이용요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공공요금 총액			112표준시스템 위치정보이용요금 집행액(본청)		
	예산액	지방청 배정액	본청 배정액	위치정보이용요금	위치정보이용요금 및 전화요금	
					위치정보 이용요금	전화요금 등
범죄대응역량강화	7,357	2,451	4,906	1(2개월)	133	4,772
생활안전활동	525	236	289	5(8개월)	0	0
생활안전국기본경비	14	12	2	1(2개월)	0	0
계	7,896	2,699	5,197	7	133	4,772

주: 지방청 집행액은 미과약됨

자료: 경찰청

이처럼 112표준시스템 위치정보이용 공공요금을 동 사업 예산 외에 생활안전활동 사업과 생활안전국 기본경비 사업의 공공요금에서 일부를 집행하고, 또한 동 사업에서도 위치정보이용요금을 일반전화요금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집행하는 것은 정확한 위치정보이용건수를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이용요금의 통합 편성 및 위치정보이용 건수의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아동안전지킴이 사업¹⁾은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경찰청은 퇴직경찰관 등 노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억 4,300만원(44.7%) 증액된 42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동안전지킴이	22,515	24,082	29,184	42,227	13,043	44.7
직접경비	129	129	129	129	0	0.0
민간경상보조	22,515	23,953	29,055	42,098	13,043	44.9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은 아동 성폭력·학교폭력·유괴 실종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2009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부터 경찰청으로 이관된 이후 아동안전지킴이 인원이 5,992명(2013년)→6,470명(2015년)→9,007명(2017년)으로 증가하였다.

나. 분석의견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이 확대된 만큼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18년에 9,007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하여 1개 초등학교마다 1.5명씩 배치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6,001개 초등학교 전체에 각 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활동비는 2017년 기준 388,200원보다 63,600원(16.4%) 증액된 451,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2-313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2017 본예산	2017 추경 증액분	2018 예산안
인원	5,934명	3,073명	9,007명
활동 기간	10개월	4개월	10월
월 지급액	388,200원	388,200원	451,800원
보조금 총액	23,953백만원	5,102백만원	42,098백만원

주: 최저임금 6,470원(2017년)→7,530원(2018년)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공고하여 모집하고 있으나 선발인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현황]

자격요건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세 이하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선발대상자의 수가 미달인 경우 75세를 초과한 사람 선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경력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3항 [별표4]) - 「청소년보호법」 등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종사자 및 관여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행 공공일자리 사업(전일제 및 동일시간) 참여자 - 형사 피소 등 여론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주: 2017년 아동안전지킴이 모집·선발 계획

자료: 경찰청

한편, 경찰청은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사업²⁾을 통해 학교주변 통학로 및 놀이터 주변의 상가·편의점·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주인 등을 아동수호천사로 지정·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³⁾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수호천사에 대해서도 아동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1132-311

3)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아동안전수호천사 운영지원 사업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가. 현황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지원 사업¹⁾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방송·운전면허시험관리 및 기술개발을 하는 도로교통공단²⁾에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6,800만원(0.9%)이 증액된 1,01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100,949	99,766	101,038	101,906	868	0.9

자료: 경찰청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1-314

2)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교정)·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분석의견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은 용도에 따라 비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사업출연금(350-02목),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출연금 예산안 편성 기준]

구분	비목	정의
일반법령출연금	기관운영 출연금(350-01목)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사업출연금(350-02목)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정부 R&D사업으로 지원되는 출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pp.218~219.

그런데 2018년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예산안 1,019억 600만원은 모두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공단의 지출예산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해당 출연금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 자체수입은 1,859억 8,500만원이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1,928억 5,600만원이다.

[2018년도 도로교통공단 수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항목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증감액
자체 수입	교통안전기술용역	53,180	57,673	4,493
	유료교육	14,725	14,725	0
	방송협찬	4,400	4,400	0
	운전면허시험관리	98,292	94,373	△3,919
	교통안전연구용역	2,495	2,495	0
	청사임대	192	245	53
	사업외수입	986	1,309	323
	기타수입	6,551	10,765	4,214
소계		180,821	185,985	5,164
출연금		101,038	101,906	868
계		281,859	287,891	6,032

자료: 경찰청

[2018년도 도로교통공단 지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지출항목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증감액
교통안전기술개선		19,504	22,572	3,068
교통안전교육		7,160	7,001	△159
교통방송운영관리		22,442	22,639	197
운전면허시험관리		40,671	39,451	△1,220
교통안전연구개발		3,673	3,372	△301
소계		93,450	95,035	3,265
경영관리 및 지원	인건비	158,752	164,021	5,269
	경상경비	9,087	9,087	0
	경영관리	20,570	19,748	△822
	소계	188,409	192,856	4,447
계		281,859	287,891	6,032

자료: 경찰청

따라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만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경비는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하여 출연금 사용 용도별로 출연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2018년도 출연금 예산안이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되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관운영출연금 51억 3,500만원, 사업출연금 12억 3,500만원이, 한국소비자원은 기관운영출연금 275억 900만원, 사업출연금 136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가. 현 황

경비경찰활동 사업¹⁾은 경찰청의 101경비단·22경호대·요인경호대·청사경비대 등을 운영하여 집회시위, 국제행사 등 각종 경비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7억 9,600만원(11.4%) 증액된 468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비경찰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경비경찰활동	40,855	42,092	42,092	46,888	4,796	11.4
경비경호활동	38,057	29,151	29,151	29,162	11	0.03
경호부대운영	2,798	3,214	3,214	2,834	△380	△11.8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0	8,778	8,778	14,742	5,964	67.9
제7회 동시지방선거 상황실 운영	0	0	0	150	150	순증
제19대 대통령선거 경호경비	0	949	949	0	△949	순감

자료: 경찰청

2018년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에는 기획단 운영비가 전년 대비 9,600만원(42.7%) 감액된 1억 2,900만원, 본대회 지원경비가 전년 대비 33억 4,400만원(43%) 증액된 111억 1,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패럴림픽 지원경비로 34억 9,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131-311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획단 운영비	225	129	△96	△42.7
본대회지원경비	7,772	11,116	3,344	43.0
패럴림픽 지원경비	-	3,496	순증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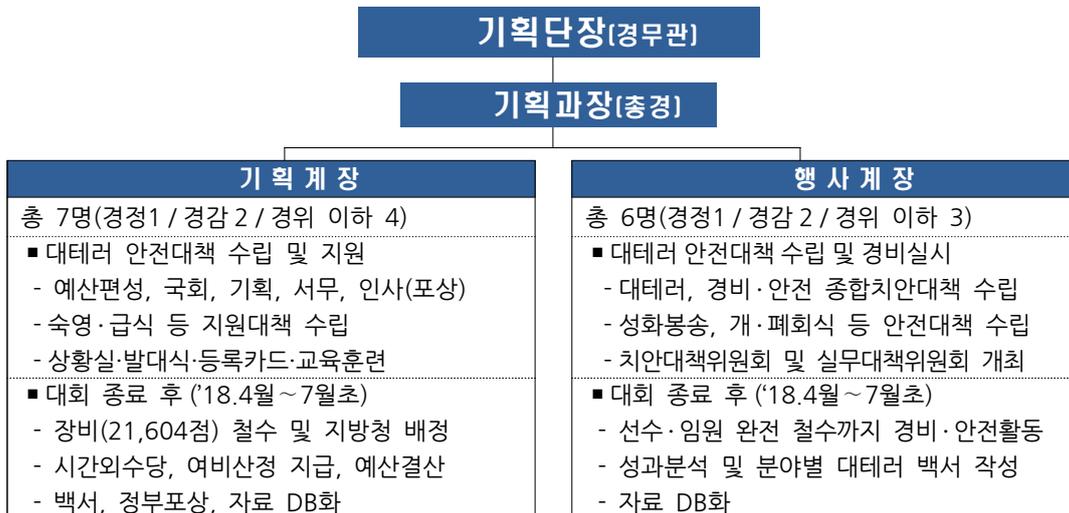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경비 중 기획단 운영비는 대회종료 후 업무량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경비단이 경비활동을 수행하게 되나 경찰청은 사전준비를 위해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단은 총 40명²⁾으로 2017년 1월 구성되었으며, 기획단의 12개월 운영비로 편성된 2017년 예산 2억 2,500만원 중 8월말 현재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기획단 구성 현황]



자료: 경찰청

2) 본청 경무관 단장 등 15명, 강원청 총경 단장 등 25명
 ※ 대회관할 경찰서TF(19명): 평창서 8명, 강릉서 7명, 정선서 4명

평창동계올림픽의 본대회(2018.2.9.~25, 17일간)와 패럴림픽(2018.3.9.~3.18, 10일간)은 3월에 종료된다. 그런데 2018년도 기획단 운영비는 2017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월 운영비를 7개월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대회종료 후 백서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대회가 종료된 후에는 기획단 인력을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현 황

경찰청은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¹⁾을 통해 인터폴분담금을 납부하여 형사사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베트남 과학수사역량강화·우간다 치안역량강화 사업에 무상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3억원(34.7%) 증액된 50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국제치안활동강화(ODA)	1,316	3,747	3,747	5,047	1,300	34.7
인터폴분담금	1,316	1,349	1,349	1,405	56	4.2
베트남 과학수사역량강화	-	2,217	2,217	3,459	1,242	56.0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	-	181	181	183	2	1.1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터폴분담금 납부 사업은 ODA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 경찰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활동 강화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인터폴은 국제적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체포를 협력하기 위한 회원국간 협력기구로서 모든 정부와 국제기구를 망라하고 있다. 인터폴 분담금 비율은 인터폴 총회에서 UN분담금 비율 및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으며, 2018년도 우리나라의 분담률은 1.924%이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3133-312

[최근 4년간 인터폴분담금 비율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분담률(%)	1.861	1.904	1.911	1.918	1.924	1.924
분담률 결정일	2010.11.8. 제79차 인터폴총회	2012.11.4. 제81차 인터폴총회	2014.11.7. 제83차 인터폴총회			2016. 11.7. 제85차 인터폴총회

자료: 경찰청

인터폴분담금 사업은 종전에는 외사경찰관리 사업, 국제교류협력활동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2년부터 국제치안활동강화(ODA)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인터폴분담금 사업 연혁]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	인터폴분담금 집행액
2008	외사경찰관리	1,370	1,255
2009	외사경찰관리	1,950	1,376
2010	국제교류협력활동	2,011	1,287
2011	국제교류협력활동	3,365	1,358
2012	국제치안활동강화(ODA)	2,723	1,367
2013	국제치안활동강화(ODA)	1,434	1,381
2014	국제치안활동강화(ODA)	1,457	1,437
2015	국제치안활동강화(ODA)	1,586	1,264
2016	국제치안활동강화(ODA)	1,317	1,316
2017	국제치안활동강화(ODA)	3,747	1,264
2018 예산안	국제치안활동강화(ODA)	5,047	1,405

자료: 경찰청

「국제협력개발기본법」 제2조제1호2)는 국제개발협력을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국제협력개발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양자간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따라서 인터폴분담금 납부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³⁾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활동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사경찰활동⁴⁾ 사업이나 해외도피사범 송환율과 국제교류협력실적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해외치안협력강화⁵⁾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 과학수사역량 강화 사업 중 DNA시약 지원 사업은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DNA감식, 현장증거분석실 등 과학수사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수사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과학수사역량 강화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 예산 22억 1,700만원은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없다.

[베트남 과학수사역량강화 사업(ODA) 개요]

(단위: 백만원)

ODA 사업명	총사업 기간	총사업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수원국 요청내용	타당성 조사
베트남 과학 수사역량강화	2017~2019	6,189	2,217	3,459	베트남 공안부 수사기술 발전을 위해 첨단수사 장비 및 교육지원	실시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인프라구축 및 전문가파견 경비 외에 DNA시약 지원경비 8억 5,3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⁶⁾ 수원국의 법적 기반 조성 여부⁷⁾, 2017년도 사업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ODA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및 예산내역·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공적개발원조(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2_S01.jsp)

4) 코드: 일반회계 3132-311

5) 코드: 일반회계 3133-311

6) 범죄자 DNA은행 등 과학수사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될 때 신원확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7) 우리나라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셋째,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미흡하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CTV활용 범죄예방시스템·교통과학관리시스템 등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한 우간다 치안역량강화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우간다 경찰청 범죄예방부서 경찰관 60명을 연 1회 20명씩 3년간 초청하여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112표준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 CCTV 등 범죄예방시스템과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협력개발기본법」에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수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유형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및 무상 분야별 기본계획(5년 단위)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⁸⁾

그러나 경찰청은 당초 사업설계 당시 동 사업은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시작되지 않아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였다.⁹⁾

따라서 동 사업 예산의 적정규모 및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pp.65~76.

9) 동 사업은 수원국 요청사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양국간 정식협의서도 체결되지 않았다.

가. 현황

신임순경교육 사업¹⁾은 신임순경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중앙경찰학교의 실무 및 지식을 배양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5억 5,700만원(11.1%) 증액된 230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신임순경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신임순경교육	22,465	20,477	20,477	23,034	2,557	12.5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연간 교육예정 인원(6,000명) 전원에 대한 단체급식 위탁을 위한 일반용역비 19억 100만원 및 교내급식비 76억 300만원과 현장실습 특근매식비 19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장실습생의 특근매식비는 소속 부서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순경교육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연간 교육예정 인원(6,000명) 전원에 대한 단체급식 위탁을 위한 일반용역비 19억 100만원 및 교육생 급식비 76억 300만원과 특근매식비 19억 4,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다. 즉 교육인원이 모두 6개월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급식비를 지급받고 2개월은 선임용되어 특근매식비를 받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4133-311

[2018년도 신입순경교육사업 급식관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비목)	산출내역	예산안
교육생 교내급식비(210-04목)	6,000명×132일×3식×급식단가 3,200원	7,603
급식위탁용역비(210-14목)	6,000명×132일×3식×800원	1,901
특근매식비(210-05목)	6,000명×54식×6,000원	1,944
계		11,448

주: 132일은 (26주×5일)+2일(입교후 첫 주간 외박 없음)로 산출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경찰청은 2015년부터 중앙경찰학교의 신입순경 교육기간 중 일부를 경찰공무원으로 선
 임용하고 보수의 80%를 지급하고 있다.2)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의 신입교육기간 중 신분
 보장이 미흡하고 실습 중 부상에 따른 공상처리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선임용 후 현장실
 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2016년 12월 12일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교육생(2,284명)3)의 경우 교육훈
 련기간(2016.12.24.~2017.8.4.) 중 선임용인원이 1차(2017.6.2.)·2차(2017.6.30.) 합하여 1,143
 명(50%)이고 나머지 1,130명은 교육훈련 종료 후 임용되었다.

[중앙경찰학교 291기 채용 신입순경교육생 선임용 현황]

(단위: 명, %)

채용기수 (교육기간)	입교인원	임용 차수	선임용일	교육수료후 임용일	임용인원	임용률
291 (2016.12.12. ~2017.8.4.)	2,284	1차	2017.6.2(금)	-	570	25.0
		2차	2017.6.30(금)	-	573	25.0
		3차	-	2017.8.4(금)	1,130	50.0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청 직제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이고,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조제2항은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나 그 밖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종전에는 순경채 용시험 합격 후 중앙경찰학교의 신입순경교육훈련 8개월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하였으나, 2015년부터 중앙경찰학교가 수립하는 “신입순경 교육훈련계획”에 신입순경 교육과정중 선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교육기간 중 자퇴한 인력 11명 포함

그러나 교육생 전원이 동시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급식비를 편성하고 선임용된 경찰공무원의 특근매식비는 소속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청사시설관리¹⁾ 사업은 경찰관서 청사 리모델링,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1억 4,900만원(7.2%) 감액된 795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청사시설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청사시설관리	45,755	78,188	85,702	79,553	△6,149	△7.2
경찰관서 리모델링	4,709	4,806	4,806	8,866	4,060	84.5
경찰관서 노후시설 개선 및 재해대비	17,296	16,992	16,992	17,142	150	0.9
노후관사 등 환경개선	1,500	1,500	1,500	1,500	0	0.0
의경 숙영시설 개선	1,000	1,000	1,000	1,000	0	0.0
여경편의시설 설치	1,700	1,700	1,700	1,700	0	0.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071	1,071	1,071	1,071	0	0.0
경찰서 유치장 환경개선	1,500	1,500	1,500	1,500	0	0.0
지구대·파출소 대수선	15,154	14,896	14,896	15,836	940	6.3
건물철거 등 재산정리	412	1,721	1,721	412	△1,309	△76.1
경찰관서 내진보강	0	9,986	9,986	8,510	△1,476	△14.8
경찰관서 석면제거	0	15,000	15,000	14,000	△1,000	△6.7
경찰서 수사·형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1,413	8,016	8,016	8,106	90	1.1
경찰관서 LED조명기구 교체	0	0	7,514	0	△7,514	순감

자료: 경찰청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131-312

나. 분석의견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청사 공간활용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지구대·파출소 대수선 사업비 15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구대·파출소는 전체 경찰관의 41.6%(45,471명)가 근무하는 최일선 현장으로서 리모델링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²⁾

현재 지구대·파출소는 총 1,999개소로 1986년 이전 건물은 신축으로 추진하고,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건물 912개소 중 건물보수가 필요한 47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³⁾ 리모델링 평균단가는 1개소 당 평균 1억 6,900만원 정도이며 연간 80개소씩 리모델링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1,999개 기준)의 시설운영현황을 보면 건폐율과 공간 활용률이 매우 낮다. 지구대 및 파출소 건물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 면적)의 평균은 24.0%이고, 평균 건폐율(24.0%) 이하의 지구대·파출소는 1,293개소(64.9%)이며, 평균 용적률(50.8%) 이하의 지구대·파출소는 1,306개(65.3%)이다.

[지구대·파출소 시설 현황]

건물		대지		건물 1층 바닥		평균 건폐율 (%)	평균 용적률 (%)
총 연면적 (천㎡)	평균 연면적 (천㎡)	총 면적 (천㎡)	평균 면적 (천㎡)	총 면적 (천㎡)	평균 면적 (천㎡)		
437	218	1,430	715	222	111	24.0	50.8

자료: 경찰청

따라서 지구대·파출소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공간활용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경찰인력은 2009년 99,554명에서 2017년 8월 현재 113,077명으로 13,523명(13.6%) 증가하였다. 경찰인력이 배치되는 경찰서는 244개에서 254개로 10개(4.0%) 증설, 파출소는 760개에서 1,463개로 703개(92.5%) 증설되었고, 지구대는 773개에서 514개로 259개(33.5%) 축소되었다.

3) 경찰청은 912개소 중 지자체 소유, 부지협소, 근무인원, 지역안배 및 2013~2014년에 추진된 105곳을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가. 현황

경찰병원은 경찰관 및 의무경찰인력, 소방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종합병원이다. 2017년 8월 현재 총 24개과 1센터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고, 병상 수는 487개이다.

경찰병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9억 9,700만원(5.5%)이 증액된 77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손익계정은 경찰병원인건비 3.4%, 기본경비(총액인건비) 4.8%, 건강보험부담금 4.3%, 전산운영경비(정보화) 5.7%, 공무원연금부담금 11.0%가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진료업무운영관리 4.9%, 장례식장 운영 2.9%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계정은 경찰병원기본경비 7.6%, 경찰병원자산취득 118.0%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2018년도 경찰병원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결산	2017예산		2018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 계	70,895	73,239	73,239	77,236	3,997	5.5
손익계정 소계	66,612	70,598	70,598	71,665	1,067	1.5
경찰병원인건비	33,132	37,184	37,184	38,459	1,275	3.4
기본경비(총액인건비)	3,813	3,767	3,767	3,946	179	4.8
진료업무운영관리	18,902	19,882	19,882	18,914	△968	△4.9
건강보험부담금	1,114	1,124	1,124	1,172	48	4.3
전산운영경비(정보화)	4,337	2,878	2,878	3,043	165	5.7
장례식장운영	1,711	1,916	1,916	1,861	△55	△2.9
계정간거래	2	2	2	2	0	0.0
공무원연금부담금	3,591	3,845	3,845	4,268	423	11.0
자본계정 소계	4,282	2,641	2,641	5,571	2,930	110.9
경찰병원기본경비	145	170	170	183	13	7.6
경찰병원자산취득	4,137	2,471	2,471	5,388	2,917	118.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의 일반회계전입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입원 및 진료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병원은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병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013년 311억 1,000만원에서 2018년 386억 2,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세입 중 일반회계전입금의 비중도 2013년 48.4%에서 2018년 50.0%로 높아질 예정이다.

[2013~2018년 경찰병원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세입총계(A)	64,305	64,022	70,171	70,837	73,239	77,236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B)	31,264	30,593	28,730	27,467	28,051	29,781
일반회계전입금(C)	31,110	28,171	36,551	35,840	37,560	38,621
비중(C/A)	48.4	44.0	52.1	50.6	51.3	50.0
비중(C/B)	99.5	92.1	127.2	130.5	133.9	129.7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병원유형별 병상가동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87.2%, 종합병원은 84.4%, 병원은 61%이다.¹⁾ 그런데 경찰병원의 병상가동률은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59.8%이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2014, p.15.

[경찰병원 병상 운영 및 가동률 현황]

(단위: 병상,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허가병상	500	500	500	500	499	487
운영병상	414	392	348	350	350	-
병상가동률	67.7	70.0	71.1	63.0	59.8	-

주: 병상가동률 산식 : 재원환자 ÷ (병상수 × 일수)

병상은 병동 공사 등에 의한 폐쇄 및 응급 환경(전시 등) 등에 따른 병상을 제외한 실제 운영 병상
자료: 경찰청

따라서, 경찰병원은 경찰병원 진료수준 향상과 입원이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황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200원(142.0%) 증가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288	1,691	1,691	4,093	2,402	142.0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064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0억 2,200만원(27.6%) 감소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21,992	561,499	561,499	406,477	△155,022	△27.6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② 공명선거기반조성 ③ 선거연수원운영 ④ 투개표선진화(정보화)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은 2018년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를 위해 증액되었고,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은 선거방송이 내역으로 신규반영되었으며, 선거연수원운영 사업은 선거연수원이 수원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유류비, 운영인건비 등이 증액되었고, 투개표선진화(정보화) 사업은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이 신규반영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40	140	21,051	20,911	14,936.4
	공명선거기반조성	1,155	1,155	3,055	1,900	164.5
	선거연수원운영	1,419	1,419	2,135	716	50.5
	투개표선진화(정보화)	682	682	1,971	1,289	189.0
합 계		3,396	3,396	28,212	24,816	730.7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210억 5,100만원) 사업이 편성되었고, ② 선거 분야 국제개발협력과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83억 1,800만원)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투개표선진화(정보화) 사업에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이 신규반영되었다.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내역(투표지 분류기, 대형기표대 등)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ICT기술을 이용한 선거관리 역량강화프로젝트는 수원국들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ICT인프라를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외선거 일정과 재외선거 관련 법정사무가 없는 해인 2018년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위탁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특별정려금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¹⁾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예산은 4년 주기로 편성되며, 2018년 예산안은 210억 5,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0억 1,300만원(4.6%) 감소하였다.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0	140	140	21,051	20,911	14,936.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선거관리일반(선거물품장비 보관, 선거관리시스템 전산운영 등)이 77억 3,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31억 7,700만원 증가하였고, ② 사전투표관리(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설치 등)가 19억 8,6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7억 1,900만원 감소하였으며, ③ 투개표관리(투표지분류기 제작 등)가 34억 4,9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4억 1,400만원 증가하였고, ④ 계도홍보(언론매체 이용 홍보 등)가 51억 7,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4,600만원 증가하였다. ⑤ 위법행위 예방단속(예방단속 일반 등)이 7억 9,6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6,000만원 감소하였고, ⑥ 정책선거 추진(매니페스토 운동 홍보 등)이 11억 6,500만원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그 밖에 ⑦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1억 9,500만원(2014년 대비 1,100만원 감소), ⑧ 선거방송토론관리(토론회 개최 등)가 1억 7,200만원(2014년 대비 900만원 감소), ⑨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가 3억 5,200만원(신규) 등이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	세부내역	2014 예산(A)	2018 예산안(B)	증감	
				B-A	(B-A)/A
선거관리일반	선거물품·장비 보관, 선거관리시스템 전산운영 등	4,554	7,731	3,177	69.8
사전투표관리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설치, 사전투표 일반	7,705	1,986	△5,719	△74.2
투·개표관리	투표지분류기 제작 등, 투개표관리 일반	3,035	3,449	414	13.6
계도홍보	언론매체 이용 홍보, 인터넷 등 이용 홍보	4,324	5,170	846	19.6
위법행위 예방단속	예방단속 일반, 사이버 예방단속 관련	856	796	△60	△7.0
정책선거 추진	매니페스토 운동 홍보 등	1,165	1,165	0	0.0
인터넷선거제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 등	206	195	△11	△5.3
선거방송토론관리	토론회 개최 등	181	172	△9	△5.0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선거여론조사 모니터팀 운영 등	0	352	352	순증
선거소송	선거소송 일반	38	35	△3	△7.9
합 계		22,064	21,051	△1,013	△4.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적은 전산시스템 예산의 이관 필요

가.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예산안에 선거관리시스템 전산운영 등으로 2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전산시스템 성능보강 13억 8,000만원, 선거관리시스템 성능보강 4억 5,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3억 6,000만원, 전산운영 3억 1,000만원, 선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3억 400만원,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1억원, 선거정보시스템 성능진단 6,000만원, 모바일웹등 프로그램 유지보수 1,500만원이다.

[선거관리시스템 전산운영 등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명	비목	주요 내용	2018년 예산안
전산시스템 성능보강	자산취득비 (430-01목)	- 통합명부시스템 장애 대비 이중화 구성 - 선거관리시스템 노후 DB서버 교체	1,380
선거관리시스템 성능보강	자산취득비 (430-01목)	- 선거통계시스템 출력 솔루션 - 위원회 메일 및 메신저 이중화 등	450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자산취득비 (430-01목)	- 웹쉘탐지시스템 - 개표보고통신망 보안장비 구매 등	360
전산운영	일반용역비 (210-14목)	- 인터넷시스템 웹로그 분석 위탁 - 전산운영 로그보전 등	310
선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일반용역비 (210-14목)	- DB관리, 선거정보제공서비스 운영 - 선거업무용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304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일반용역비 (210-14목)	- 모의침투 테스트, 보안컨설팅	100
선거정보시스템 성능진단	일반용역비 (210-14목)	- 선관위 4개 시스템 성능진단	60
모바일웹등 프로그램 유지보수	일반용역비 (210-14목)	- 모바일웹 유지보수	15
합 계			2,97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선거관리시스템 전산운영의 세부내역 중 일부는 지방선거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음에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예산안 내역으로 편성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선거관리시스템 전산운영으로 편성한 내역 중 ‘전산시스템 성능보강’은 장애대비 통합명부시스템을 이중화하고 선거관리시스템 노후DB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산취득비목(430-01목)으로 DB서버, 웹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다.

통합명부시스템과 선거관리시스템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 모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이들 시스템의 성능보강사업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시스템 성능보강’은 선거통계시스템 출력 솔루션과 위원회 메일 및 메신저 이중화 등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에만 관련된 사업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과 같은 특정 선거관리 사업이 아닌 기관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시스템의 운영과 구축을 위하여 전산운영경비 사업(2018년 예산안 79억 1,400만원)과 선거정보시스템구축 사업(2018년 예산안 54억 9,30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1-2. 선거장비 보관경비 사업의 별도 편성 필요

가.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내역으로 선거물품·장비보관 등에 2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투표함, 기표대 등 통합보관’ 6억 5,000만원, ‘선거장비 통합 유지보수’ 7억 4,000만원, ‘투표지 분류기 기능개선 및 통합관리’로 8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선거물품·장비보관 등의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명	비목	주요 내용	2018년 예산안
투표지분류기 기능개선 및 통합관리	일반용역비 (210-14목)	- 투표지분류기 등 통합보관 관리 - 인식모듈·보안프로그램 기능개선 등	803
선거장비 통합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210-09목)	- 선거장비 통합 유지보수	740
투표함, 기표대 등 선거장비 통합보관	일반용역비 (210-14목)	- 투표함, 기표대 등 선거장비 통합보관	650
합 계			2,19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 투표함 등 각종 선거장비의 보관·유지 비용을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관련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 투표함, 기표대 등 선거장비를 통합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다. 또한 선거장비 보관·관리를 위한 경비를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관리 사업예산에 편성·집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장비 보관·관리를 위한 경비를 선거관리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2019년, 2021년, 2023년)에는 선거장비 보관·관리를 위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선거장비 보관·관리를 위한 경비가 해당 선거관리 사업에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관리 사업의 성과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장비 보관·관리를 위한 경비를 선거관리 사업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선거관리 경비의 지방비 부담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내역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선거장비인 투표지분류기, 대형기표대, 대형투표함 등을 구입·제작하는 ‘투표지분류기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표지분류기 제작 등’의 2018년 예산안은 31억 8,8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투표지분류기 추가제작’으로 22억 5,000만원, ‘대형기표대 구입’으로 8억 4,000만원, ‘대형투표함 제작(운반손잡이 포함)’으로 9,800만원이 편성되었다.

[투표지분류기 제작 등의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명	비목	산출근거	2018년 예산안
투표지분류기 추가제작	자산취득비(430-01목)	750대×10백만원×30%	2,250
대형기표대 구입	자산취득비(430-01목)	20만원×14,000투표소×30%	840
대형투표함제작(운반손잡이 포함)	자산취득비(430-01목)	(4만원×5,000개+5만원×2,500개)×30%	98
합 계			3,188

주: 산출근거에서 30%는 국비부담율을 의미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내역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70%로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동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중 공통 선거장비의 구입 및 제작 등의 내역은 지방비가 투입되며, 2018년 예산안에서 공통 선거장비 구입 및 제작 등 내역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70%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 내역의 국비 부담액은 31억 8,800만원이며, 지방비 부담액은 74억 3,900만원이다. 공통 선거장비 구입 및 제작 등에는 제3회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지방비가 투입되었고 지방비 부담비율은 모두 70%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법령상 근거 없이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은 지방선거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²⁾, 공통 선거장비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 계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 장비들의 구입비용 중 7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2)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4. 일부 계도·홍보 사업의 효과성 검토

가.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내역으로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를 위한 계도·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계도·홍보 관련 사업의 예산안은 51억 7,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다.

세부내역은 언론매체, 인터넷, 인쇄물, 시설물 이용홍보와 캠페인 관련 홍보사업 등이 다. 2018년 예산안에는 언론매체 이용 홍보와 선거기록 관련 홍보(홍보특별전시회 등) 등의 내역이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계도·홍보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주요내용	2014 예산(A)	2018 예산안(B)	증감	
				B-A	(B-A)/A
언론매체 이용광고	위원장 담화문 신문광고	310	306	△4	△1.3
언론기획보도 및 캠페인	언론기획보도, 투표챌린지 캠페인	0	176	176	순증
언론매체 이용 홍보	TV, 라디오, 신문광고 등	1,635	2,134	499	30.5
인터넷 등 이용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SNS 홍보 등	1,369	1,437	68	5.0
인쇄물 이용 홍보	포스터, 리플릿 등	257	297	40	15.6
선거기록 관련 홍보	기록영화 제작, 홍보특별전시회	122	275	153	125.4
시설물 이용 홍보	현수막, 선전탑 설치 등	100	80	△20	△20.0
각종 계기이용 및 단체 연계 홍보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 선거사진대전 등	424	386	△38	△9.0
기타	언론기관 간담회 등	107	79	△28	△26.2
합 계		4,217	5,091	846	19.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의 계도·홍보 내역 중 다음의 사업은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특별전시회’는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계도·홍보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지방선거 관련 홍보물 및 사료 등을 기획전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특별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안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홍보특별전시회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6년 국회의원선거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홍보특별전시회 내역]

(단위: 천원)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전시기간	2016. 3. 14.~6. 26.(105일)	2017. 4. 17~6. 30(74일간)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대통령기록관
전시내용	- 역대 선거·정당사료 - 선거용구·용품 및 사전투표, 장비 등	- 대통령선거의 역사 - 선거과정으로 보는 대통령 선거사(史)
지출액	243,673	418,71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러한 홍보특별전시회가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료를 전시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당해 연도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터넷 홍보나 미디어 홍보와 비교할 때 비용 대비 효과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특별전시회를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계도·홍보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 운영 등 일부 내역은 사업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등 홍보를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 포털사이트 광고 및 온라인 캠페인 등 온라인광고로 1억 9,000만원,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중 소셜미디어 운영 사업을 통하여 직원기자단, 시민기자단, 대학생기자단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며(3,600만원) 이들을 통해 SNS매거진 발행(6,000만원) 기자단워크숍(1,500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으로 3개의 기자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행사인 기자단 워크숍까지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등 홍보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명	주요 내용	2018년 예산안
온라인광고	- 포털사이트, 인터넷언론사 등 광고(80) - 투표참여 온라인 캠페인, 페이스북 등 광고(110)	190
지방선거 소셜미디어 운영	- 소셜미디어 기본경비 및 캠페인 이벤트(64) - 직원기자단·시민기자단·대학생기자단 운영(36) - 기자단워크숍(15) - SNS매거진 발행(60)	175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 인포그래픽스, 웹툰 제작 등	83
온라인콘텐츠 제작	- 홍보영상 제작, 모바일 소셜이용 홍보	310
합 계		75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현황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사업¹⁾은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과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83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0.4%) 증가하였다.

[2018년도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3,594	8,286	8,286	8,318	32	0.4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지원	362	362	362	362	0	0
선거관계자 역량강화	833	628	628	933	305	48.6
A-WEB 운영지원	1,828	1,450	1,450	1,591	141	9.7
국제선거참관프로그램 운영	329	338	338	422	84	24.9
선거ICT 특화연수	0	1,705	1,705	1,725	20	1.2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0	0	0	1,637	1,637	순증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0	0	0	1,160	1,160	순증
피지 선거관리 역량강화 지원	0	826	826	159	△667	△80.8
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0	0	0	179	179	순증
엘살바도르공화국 선거ICT 선진화	0	1,607	1,607	150	△1,457	△90.7
에과도르선거위원회 역량강화	0	139	139	0	△139	순감
우즈베키스탄 유권자명부 역량강화	0	300	300	0	△300	순감
DR공고 선거관리 역량강화	0	931	931	0	△931	순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 사업의 세부내역별 예산안은 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지원(엘살바도르 총선 참관단 운영)’ 3억 6,200만원, ‘국제선거참관프로그램 운영(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관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3-334

단) 4억 2,200만원, ② ‘선거관계자 역량강화(저개발국 초청연수)’ 9억 3,300만원, ③ ‘A-WEB(세계선거기구협의회)운영지원’ 15억 9,100만원, ④ 국가별 ICT기술을 이용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로 ‘선거ICT 특화연수’ 17억 2,500만원,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16억 3,700만원,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11억 6,000만원, ‘피지 선거관리 역량강화 지원’ 1억 5,900만원, ‘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1억 7,900만원, ‘엘살바도르공화국 선거 ICT 선진화’ 1억 5,000만원 등이다.

ICT기술을 이용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중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와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는 해당 국가에 유권자등록 단말기,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거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문가과견과 초청연수도 병행 추진된다.

[국가별 ICT기술을 이용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산출근거	2018년 예산안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 유권자등록 단말기(1,725천원×300대)	518
	- 데이터센터 고도화(579백만원×1식)	579
	- 선거정보시스템(30백만원×5식)	150
	- 전문가과견(26.5백만원×12명)	318
	- 초청연수(항공운임 25백만원, 체재비 30백만원, 운영비 17백만원)	72
	소 계	1,637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 유권자등록 단말기(1,380천원×250대)	345
	- 데이터센터 고도화(400백만원×1식)	400
	- 선거정보시스템(30백만원×5식)	150
	- 전문가과견(17.9백만원×10명)	179
	- 초청연수(항공운임 12백만원, 체재비 3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52
	- 현지연수(350천원×2회×20명)	14
	- 운송비 및 업무평가회 등	20
소 계	1,16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출범 4년차인 A-WEB은 세계 10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임에도 운영경비 전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향후 회원국간 재정분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4년 출범 이후 2017년 현재까지 A-WEB 운영경비는 거의 대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민간경상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현재 A-WEB 사무국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명 중 선출직 사무총장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견 8명(3급 2명, 4급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외교부 파견 1명, 자체 채용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 4년차이고 A-WEB의 운영지원금이 매년 증가(2014년 963백만원→2015년 1,314백만원→2016년 1,290백만원→2017년 1,450백만원)하고 있지만, 2016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A-WEB에 국제분담금을 납부하는 회원국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8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연회비 1만 달러 납부가 결정되어 2017년부터 102개국 106개 회원기관에서 회비가 납입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회비로 마련된 연간 약 12억원 규모의 재원은 주로 총회·집행이사회 개최 시 해당 회원국의 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WEB의 출범을 주도하였다는 점,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범 초기에 우리나라가 운영경비를 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향후 A-WEB이 선거와 민주주의 분야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경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의 비중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파푸아뉴기니와 사모아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 ICT기술을 이용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는 수원국들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ICT인프라를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ICT기반 선거행정시스템을 지원받으려는 민주주의 이행기에 있는 저개발국가가 많으며, 파푸아뉴기니와 사모아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향과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를 우리나라에 전달하였고 외교부의 승인에 따라 ODA사업으로 선거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와 사모아는 ICT기반의 선거를 치루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였고 선거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민행정시스템이 취약한 나라이다. 2016년 UN이 193개 가입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수준을 평가한 ‘UN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파푸아뉴기니는 179위였고, 사모아는 121위였다.²⁾ 또한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개인식

별정보(지문, 사진) 수집을 통한 국가신분증의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5% 수준으로 유권자 등록에 앞서 선거인명부에 기재되는데 필요한 국가 신분증 보급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³⁾ 사모아의 경우 사망한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명부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어 유권자등록인 수가 유권자명부보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⁴⁾

선거관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등록에 앞서 선거인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섬지역이 많은 나라의 지리적 특성상⁵⁾ ICT기반의 선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망이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파푸아뉴기니·사모아의 선거 ICT 역량강화 사업은 고도의 전자정부 수준이 아닌 기본적인 수준의 ICT 인프라로 충분하고, 특히 두 나라의 요청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맞춤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와 사모아에 대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유권자등록 단말기 보급, 데이터센터 고도화 및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서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등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선통신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고 선거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수원국의 선거관리 역량강화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 United Nations Economics & Social Affairs(2016),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6”

3) A-WEB(세계선거기구협의회)(2017.3),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4) A-WEB(세계선거기구협의회)(2017.3),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5) 파푸아뉴기니는 본토 이외에 6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모아는 2개의 본섬과 100여개의 군소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재외선거가 없는 해의 재외선거관 파견의 적정성 검토

가. 현황

재외선거관리 사업¹⁾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10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5,900만원(△92.9%) 감소하였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외선거관리 1억 2,800만원, 재외투표 노후운용장비 교체 1억 5,500만원, 재외선거 계도홍보 8,800만원, 파견인력 업무지원 3억 3,700만원, 파견인력 체재지원 3억 5,600만원이다.

[2018년도 재외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선거관리	9,703	14,923	14,923	1,064	△13,859	△92.9
재외선거관리	7,338	10,318	10,318	128	△10,190	△98.8
재외투표 노후운용장비 교체	72	62	62	155	93	150.0
재외선거 계도홍보	1,100	1,998	1,998	88	△1,910	△95.6
파견인력 업무지원	1,193	1,244	1,244	337	△907	△72.9
파견인력 체재지원		1,151	1,151	356	△795	△69.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재외선거 일정과 재외선거 관련 법정사무가 없는 해인 2018년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에 5명의 장기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기로 하고 6억 9,3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²⁾ 구체적으로 파견인력 업무지원에 3억 3,700만원, 파견인력 체재지원에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다. 장기 재외선거관의 파견 공관은 주일본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미국대사관, LA총영사관, 주프랑스대사관 등 5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기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상시화에 따른 관리기반 조성 및 연속성 확보, 주재국의 정치·선거제도 연구 등을 목적으로 주요 거점 공관에 파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없는 해이다. 또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는 「공직선거법」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전 180일(2019년 10월 18일)부터 시작되기³⁾ 때문에 2018년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법정사무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재외선거관의 주요 직무가 재외선거관리와 제도·홍보라는 점에서 재외선거 일정 및 관련 법정사무가 없는 2018년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시급성이 낮은 일부 내역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

재외공관 및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 설명회 개최 및 실태조사(2,100만원)’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해인 2020년 즈음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외선거 신고·신청 홍보영상 제작(2,000만원)’, ‘재외투표 노후운용장비 교체(1억 5,500만원)’ 역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맞추어 제작하거나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재외선거사무 연구반 운영(8,100만원)’은 2018년에 헌법개정 관련 국민투표가 예정될 것임을 가정하고 관련 재외선거사무에 관한 연구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필요시 예비비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기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유무와 관계없이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은 2년이고, 단기 재외선거관은 선거가 있는 해에 파견하며 파견기간은 1년이다.

3) 「공직선거법」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년도 재외선거관리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명	산출내역	2018년 예산안
재외선거 설명회 개최 및 실태조사	3.5백만원×3인×2개반	21
국민투표 재외선거사무 연구반 운영	PC임차료 및 운영비, 편람 등 제작비, 간담회 등	81
신고·신청 홍보영상 제작	20백만원×1회	20
재외투표 노후 운용장비 교체	투표용지 발급 프린터(시제품), 발급 소프트웨어 개발비	155
합 계		27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현황

위탁선거관리 사업¹⁾은 당내경선과 조합장선거 등 공공 및 민간 위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9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700만원 (56.2%) 감소하였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경선관리’가 7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00만원 감소하였고, ‘위탁선거관리’가 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원 증가하였다.

[2018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탁선거관리	261	2,202	2,202	965	△1,237	△56.2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경선관리	27	2,007	2,007	705	△1,302	△64.9
위탁선거관리	234	195	195	260	65	33.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과 별도로 민간단체로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단체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단체 위탁선거경비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농·수·산림조합장 선거 54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11회 등 총 67건의 위탁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탁의뢰단체로부터의 위탁선거 경비 18억 6,800만원을 납부받아 1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200만원을 반환하였다.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중앙회장선거 및 기타 선거 등 민간위탁선거의 위탁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단체 등이 납부해야 할 위탁선거관리비용에 특별정려금을 포함시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4년 2,600만원, 2015년 4억 8,200만원, 2016년 8,200만원이다.

[연도별 민간위탁선거관리 관련 특별정려금 지급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선거별	선거건수	지급(청구)액
2014	소 계	27	26
	조합장	20	18
	중앙회장	1	5
	기타(새마을금고 등)	6	3
2015	소 계	1,368	482
	조합장	1,353	469
	중앙회장	2	10
	기타(새마을금고 등)	13	3
2016	소 계	67	82
	조합장	54	68
	중앙회장	2	6
	기타(새마을금고 등)	11	8

주: 2015년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건수와 지급액이 급증하였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현행 법령에는 민간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가가 실시하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①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는 선거'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 위탁선거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7조³⁾는 관할위원회가 특별정려금 및 수당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의 모법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정려금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민간위탁선거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① 관할위원회는 특별정려금 및 수당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의 관리·단속에 공로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정려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현황

민주시민의식함양 및 지원¹⁾ 사업은 올바른 선거·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정당 관계자 교육을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36억 2,8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억 600만원(24.2%) 증가하였다.

이 중 관학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학 내에 정치관계법 관련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4,1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정치관계법 관련 강의를 개설한 대학 중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에는 19개의 강좌에 대하여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도 민주시민의식함양 및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주시민의식함양 및 지원	2,412	2,922	2,922	3,628	706	24.2
관학협력	57	41	41	41	0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학협력 사업은 민간전문가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강좌를 선정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관학협력 사업을 통해 2015년 26개 대학의 27개 과목, 2016년 31개 대학의 32개 과목, 2017년 상반기에는 11개 대학, 11개 과목을 지원하였다.

김경수 예산분석관(gskim01@nabo.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3-330

[연도별 관학협력 사업 실적]

(단위: 개, 백만원)

연도	학기	대학수	과목수	집행액
2015	소계	26	27	47
	1	9	9	16
	2	17	18	31
2016	소계	31	32	57
	1	11	12	20
	2	20	20	37
2017	1	11	11	2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2017년 상반기 추진된 관학협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6개 강좌 중 61.5%인 59개 강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담당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강좌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이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등 사업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민간전문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학협력 사업의 취지에 맞는 강좌가 보다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상반기 관학협력 사업 현황]

(단위: 개)

	대학수	전체 관학협력 강좌	강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 강좌
갯수	11	96	59
주요 현황	경인교대, 단국대, 동국대, 송실대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공직선거법 - 인공지능 시대의 이해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현황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¹⁾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103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400만원(6.6%) 증가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예방·단속을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270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명씩의 상시 공정선거지원단을 두고,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내역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으로 58억 3,600만원, 위법행위 예방·단속으로 40억 3,600만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으로 1억 3,200만원,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으로 1억 5,000만원, 정치자금조사로 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법행위예방활동	10,340	9,715	9,715	10,359	644	6.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년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명	세부내역	2018년 예산안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수당(60,240원×1명×25일×10월×270위원회×0.992)	4,034
	- 실비(20,000원×1명×15일×10월×270위원회)	810
	- 운영비(운영비, 성과급, 사례금 등)	992
위법행위 예방·단속	광역조사팀 단속차량 임차·운영, 특근식대, 여비 등	4,036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수당·식비, 운영비	132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이버대응시스템 운영·개발, 사이버조사 역량강화 등	150
정치자금조사	정치자금조사 운영	205
합계		10,35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대면단속 위주인 선거부정감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상시 공정선거지원단의 규모 및 운영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 감시 인력을 두는 제도이다. 상시 공정선거지원단 제도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08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시 도입되었다¹⁾.

그런데, 미디어선거, 온라인선거 등이 활성화되면서 대면단속 위주의 위법행위예방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대면단속이 주요 업무였던 상시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규모와 운영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시 공정선거지원단을 각 위원회별 4~5명씩, 주 1~2회 출근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단속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속활동의 계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 2011년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1~2명을 운영하게 되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267개 선거관리위원회별 1명이 주 5회 상시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에 의해 상시 공정선거지원단이외에 선거일 전 60일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규모는 2015년 297명, 2016년 287명, 2017년 267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여 왔고, 수당, 실비, 운영비 및 성과금 등 상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예산도 2015년 54억 7,200만원, 2016년 54억 3,900만원, 2017년 48억 6,500만원으로 감소하여 왔다.

[상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규모 및 운영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상시 공선단 운영규모	수당 및 실비		운영비 및 성과금		상시 공선단 운영예산 합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차이
2015	297	4,912	4,579	560	342	5,472	4,921	551
2016	287	4,879	4,590	560	518	5,439	5,108	331
2017	267	4,305	-	560	-	4,865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에도 전국의 267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명씩의 상시 공정선거지원단을 두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대면단속 위주의 선거부정감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2) 「공직선거법」상에는 각 구·시·군 선관위에 공정선거지원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1명 내외로 구성하여 구성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의 267개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상시 공정선거지원단을 1명씩 두고 10개월간 운영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상시공정선거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상시 공정선거지원단 주요 업무내용]

업무내용	주요 사항
조사·단속활동 보조	선거관련 활동정황 및 정보수집, 각종 행사·모임 현장 안내·감시, 위법행위 감시활동, 선거비용 자료수집·관리 및 실사보조 등
단속직원의 단속행정 업무보조	정황보고서 및 조사결과보고서 등 작성 지원, 정치자금 회계보고 안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범죄 관련 자료 정리 등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및 선거관리 지원 등	단순한 선거법 질의에 대한 안내, 정치인 등에 대한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범죄 침부상황 확인 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1 현황

2018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세입예산은 없다.

2018년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6.2%) 감소하였으며, 소방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4,377	176,736	177,826	166,870	△10,956	△6.2

주: 총계 기준

자료: 소방청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소방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38억원 규모로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R&D) 사업이다.

[소방청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R&D)	3,830

자료: 소방청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날 기념행사 지원 ②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③ 중앙소방학교 운영 ④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수도권 및 영남대) 등 9개 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충주 세계소방환경기대회 보조금 9억원이 신규반영되었고,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비 4억원(증액)과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비용 2억원(신규)이 반영되었다. 중앙소방학교 운영 사업은 교육용차량 6대 보강을 위해 19억원이 증액반영되었으며,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수도권 및 영남대) 사업은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공사비 및 운영비 7억원이 신규반영되었다.

[소방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9개)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날 기념행사 지원	550	550	1,470	920	167.3
	구급정보통합운영관리	43	43	187	144	334.9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504	504	907	403	80.0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 시스템구축및운용(R&D)	1,085	1,085	1,565	480	44.2
	중앙소방학교 운영	2,522	2,522	4,478	1,956	77.6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수도권대,영남대)	1,674	1,674	2,759	1,085	64.8
	대변인실기본경비	70	70	198	128	182.9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646	646	1,259	613	94.9
	프로그램재정운영관리	332	332	658	326	98.2
	합 계	7,426	7,426	13,481	6,055	81.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소방청

2018년도 소방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전국 4대 권역 119특수구조대 설치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충청·강원대 및 호남대의 부지매입비 집행이 완료되어 18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②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지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소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차량보강, 119특수구조대 상황실 보강 및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 등 사업이 신규, 증액 편성되어 총액은 2017년도 대비 6.1%인 109억원(2017년 1,778억원 → 2018년 1,66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2018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업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홍보사업을 일원화하는 한편,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과제를 R&D 사업에 부합하는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 관련 법령상 소방장비의 정의·분류체계 등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통합적인 장비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에 표준규격을 마련해야 하는 장비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장비별 연구비와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장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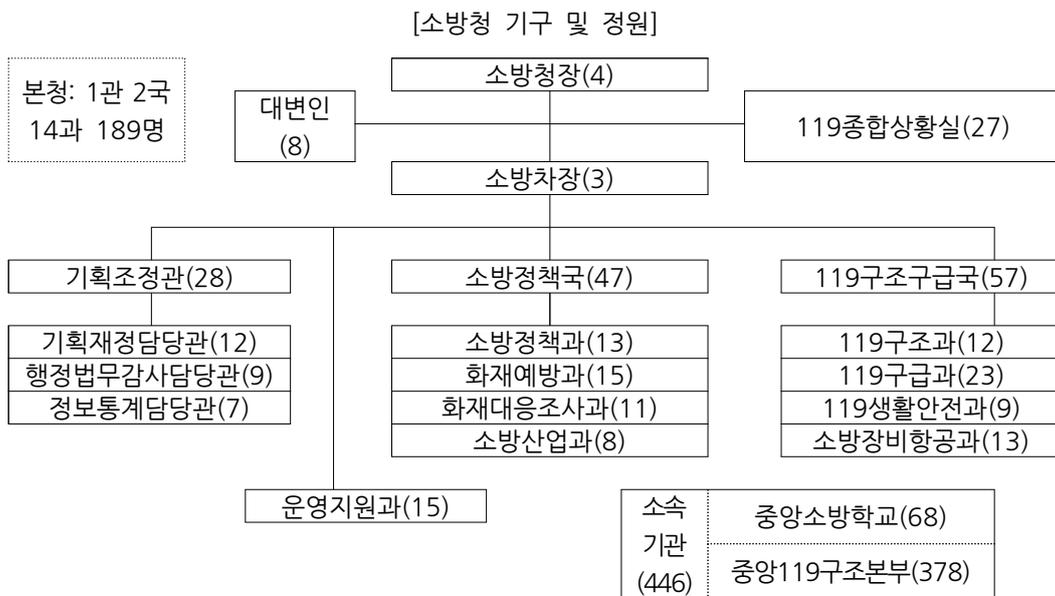
넷째,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소방청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개칭하였다. 소방청은 「정부조직법」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소방행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조직¹⁾의 정책 및 제도를 총괄한다.

소방청의 조직구성은 1관 2국 14과 2소속기관²⁾으로 정원은 635명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23)

- 1) 현재 17개 시·도 지역별 소방본부는 19개, 소방서는 210개이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북부남부로 2개 소방본부가 운영 중이며, 창원 소방본부가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다.
- 2)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등 교육훈련, 소방정책 및 안전기술 연구, 화재원인조사 등을 담당하는 교육·연구기관이며,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현장서비스기관으로서 119특수구조대, 화학구조센터 등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2018년도 소방청 정원은 54명 증원될 예정이며, 중앙소방학교 11명, 중앙119구조본부 43명이다.

[2018년도 소방청 증원 계획]

증원 기관	증원 규모	증원 내역
중앙소방학교	11명	소방연구 기능강화 연구인력 10명 전국단위 시험행정관리 인력 1명
중앙119구조본부	43명	인명구조견 양성 기술인력 4명 119특수구조대 현장 출동인력 25명 119화학구조센터 14명

자료: 소방청

가. 현황

2018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1개 세부사업, 1,66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3억 6,900만원 증가한 484억 6,700만원인데, 이는 소속기관 54명 증원(중앙소방학교 11명, 중앙119구조본부 43명)에 따른 것이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억 2,100만원 증가한 106억 5,3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147억 4,600만원 감소된 1,077억 5,000만원이다. 주요사업비 감소는 2개 중앙119특수구조대(충청강원대 및 호남대)의 토지매입 완료 및 일부 R&D사업 종료에 따른 것이다.

[2018년도 소방청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세부사업수)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계(41)	176,736	177,826	166,870	△10,956	△6.1
인건비(3)	45,098	45,098	48,467	3,369	7.5
분청 인건비(1)	17,153	17,153	14,671	△2,482	△14.5
소속기관 인건비(2)	27,945	27,945	33,796	5,851	20.9
기본경비(9)	10,232	10,232	10,653	421	4.9
주요사업비(29)	121,406	122,496	107,750	△14,746	△12.1
일반사업(23)	97,100	98,190	89,602	△8,588	△8.9
정보화사업(1)	5,511	5,511	5,432	△79	△1.8
R&D사업(5)	18,795	18,795	12,716	△6,079	△31.7

주: 2017년은 舊 중앙소방본부 예산 수치

자료: 소방청

29개 주요사업 중 대부분은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과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수행한다. 소방정책국 소관은 7개 사업, 264억 6,500만원이며, 119구조구급국 소관은 6개 사업, 68억 7,400만원이다. 중앙소방학교 소관은 8개 사업, 208억 4,300만원이며, 중앙119구조본부 소관은 4개 사업, 527억 6,200만원이다. 이 외에 대변인, 기획조정관, 119종합상황실, 운영지원과에 각 1개의 사업씩 총 4개 사업, 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23)

[소방청 세부사업 및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19,705	120,795	107,750	△13,045	△10.8
소방정책국(7개)	19,262	20,352	26,465	6,113	30.0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	550	550	1,470	920	167.3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2,083	3,173	3,608	435	13.7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15,459	15,459	19,860	4,401	28.5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504	504	907	403	80.0
국제소방안전박람회	329	329	312	△17	△5.2
소방관리 우수 시·도 지원	137	137	108	△29	△21.2
정책연구개발(R&D)	200	200	200	0.0	0.0
119구조구급국(6개)	7,032	7,032	6,874	△158	△2.2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539	539	400	△139	△25.8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보조)	429	429	305	△124	△28.9
구급정보통합운영관리	43	43	187	144	334.9
소방안전교육	360	360	460	100	27.8
소방정보시스템구축(경보화)	5,511	5,511	5,432	△79	△1.4
국민소방안전혁신 대공감	150	150	90	△60	△40.0
중앙소방학교(8개)	26,431	26,431	20,843	△5,588	△21.1
중앙소방학교 지원	2,522	2,522	4,478	1,956	77.6
소방과학연구실 운영	2,982	2,982	2,013	△969	△32.5
소방시험관리 운영	1,065	1,065	770	△295	△27.7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	1,067	1,067	866	△201	△18.8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기술 개발 (R&D)	17,335	17,335	7,008	△10,327	△59.6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구축 및 운용(R&D)	1,085	1,085	1,565	480	44.2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 분자식별·분석기술 개발(R&D)	375	375	313	△62	△16.5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R&D)	0	0	3,830	3,830	-
중앙119구조본부(4개)	66,980	66,980	52,762	△14,218	△21.2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	268	268	254	△14	△5.2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수도권대, 영남대)	1,674	1,674	2,759	1,085	64.8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1,822	1,822	1,792	△30	△1.6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	63,216	63,216	47,957	△15,259	△24.1
대변인(1개)	355	355	355	0.0	0.0
소방정책홍보	355	355	355	0.0	0.0
119종합상황실(1개)	98	98	108	10	10.2
119종합상황실 운영	98	98	108	10	10.2
기획조정관(1개)	113	113	107	△6	△5.3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13	113	107	△6	△5.3
운영지원과(1개)	495	495	236	△259	△52.3
세종청사 이전	495	495	236	△259	△52.3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첫째, 홍보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이 편성한 2018년도 홍보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국민소방안전혁신 대공감¹⁾ 사업과 소방정책홍보²⁾ 사업이다. 국민소방안전혁신 대공감 사업은 119구조구급국 내 119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정책홍보 사업은 대변인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8년도 소방청 홍보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국민소방안전혁신 대공감	소방정책홍보
2018년 예산안	90	355
담당부서	119구조구급국(119생활안전과)	대변인
사업목적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소방정책과 소방법령 개정사항 홍보	소방정책 홍보강화로 국가소방안전 정책 신뢰도 및 정책추진력 제고
수행방식	영상제작 및 방송광고 송출 홍보콘텐츠(포스터, 스티커 등) 제작 배포	온라인 홍보 및 영웅119기자단 운영 공익캠페인 영상제작 및 송출 소방정책 소식지 및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자료: 소방청

국민소방안전혁신 대공감 사업은 소방차 길터주기 등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소방정책과 소방법령 개정사항을 영상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이며, 소방정책홍보 사업은 소방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홍보사업으로 온라인 홍보, 홍보영상 및 정책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이 유사하다. 또한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많지 않아 따로 관리될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홍보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2개 사업 모두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코드: 일반회계 1134-303

2) 코드: 일반회계 7031-300

둘째,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과제를 사업목적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개발³⁾ 사업은 소방분야 신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소방청 현안업무 관련 연구용역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2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정책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책연구개발(R&D)	0	200	200	200	0	0.0

자료: 소방청

동 사업은 정책연구사업으로 9월 현재 3건의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는데, 구급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소방서비스 수요예측,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등 소방정책개발 과제이다.

[2017년도 정책연구개발(R&D) 사업 연구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 제 명	기간	수행기관	예산
한국형 병원 전 단계 구급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8.~12.	대한응급의학회	40
미래지향형 소방서비스 수요 예측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5.~1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소방공무원 채용제도(체력, 면접) 개선 방안 연구	9.~12.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자료: 소방청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에 따르면, 2018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OECD 권고기준」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정책연구사업인 경우,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정책연구 또는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연구목적의 정책연구를 R&D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7031-302

4)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pp.26~36

현재 동 사업이 발주한 연구과제는 소방정책의 개선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연구 과제로서, R&D사업에 부합하는 과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방청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소방조직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인 19개 시도 소방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1)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방 업무에는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이 열거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6조2)는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동 계획에는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비롯한 소방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소방업무의 정책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방조직 이원화에 따라 소방장비 관련 업무도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과 시도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우선 소방장비의 구입 및 유지보수는 소방청과 지방소방기관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9조3)는 국가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별도의 국고보조사업은 수행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4)은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23)

-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2) 「소방기본법」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요한 사항의 규정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동 규칙 제 2조제2호⁵⁾는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시·도별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119구조대 등 지방소방기관을 모두 소방기관으로 규정하고,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 업무의 대부분을 공통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은 전문검사반 편성, 시·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 접수, 소방장비별 표준규격 개발 및 내용연수 규정,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등을 비롯한 소방 관계 법령의 소관 부처이므로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5)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1. 소방장비 관리체계 정비 필요

가. 현황

소방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는 소방장비 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위사업으로 소방시설장비지원⁶⁾ 사업에 5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동 단위사업은 소방장비표준규격개발, 구급정보통합운영관리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소방시설장비지원 단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방시설장비지원	0	582	582	587	5	0.9
소방장비표준규격개발	519	539	539	400	△139	△25.8
구급정보통합운영관리	0	43	43	187	144	334.9

자료: 소방청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⁷⁾ 사업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을 통해 소방장비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구급정보통합운영관리⁸⁾ 사업은 중앙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의 시설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다만, 구급정보통합운영관리 사업은 단순한 시설장비 유지사업으로 소방장비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 사업이 유일하다.

소방장비와 관련한 법령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소방장비 관리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등이 있다.

6) 코드: 일반회계 1132

7) 코드: 일반회계 1132-300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 사업은 2017년 한국형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되었는데, 다른 내역사업인 구매조건부 소방장비개발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018년부터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8) 코드: 일반회계 1132-301

[소방장비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소방장비 관련 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장비의 정의, 소방산업 진흥계획에 따른 소방장비의 개발·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소방장비의 보급 확대,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조사 및 공개
「소방기본법」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 소방장비 국고보조,
「소방장비 관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소방장비의 정의 및 분류, 소방장비의 목록화, 표준화, 검사 및 검수 장비구매안전관리, 소방장비관리운영계획, 소방장비 보유기준, 장비재고관리 및 관리전환, 관리기록, 내용연수, 장비점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소방청고시)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자료: 소방청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은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소방장비를 분류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소방장비는 8개 분야(대분류), 930종(세분류)이 운용되고 있다.

기동장비 78종에는 소방차량,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재진압장비 86종에는 소화용수기구, 관창, 사다리, 펌프, 이동식 진화기 등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구조장비 272종에는 일반구조, 산악구조, 수난구조,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 절단구조 등에 필요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급장비 140종에는 검사장비, 기도확보 유지장비, 분만장비, 외상처치장비, 환자이송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통신장비 118종에는 기반장비, 네트워크장비, 무선통신장비, 보안장비,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측정장비 130종에는 소방시설 점검장비,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일반측정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호장비 57종에는 호흡장비, 보호의류 및 헬멧, 안전장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장비 49종에는 기록보존장비, 정비기구, 그 밖의 보조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방장비 분류 현황]

(단위: 종)

대분류	기동장비	화재진압 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 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계
장비 수	78	86	272	140	118	130	57	49	930

주: 장비 수는 세분류에 열거된 장비의 수량임

자료: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3]

나. 분석의견

첫째, 소방산업진흥 및 장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방장비의 정의 및 분류체계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방장비의 정의에 관해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장비 관리 규칙」⁹⁾(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소방장비의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

「소방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소방장비”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소방기동장비를 비롯한 1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소방장비”를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보조장비로 규정하고 있다.

9) 「소방장비 관리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소방장비를 분류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8조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각 법령의 소방장비에 관한 정의]

관련 법령	소방장비 관련 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방장비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1. 소방기동장비 2. 소방정보통신장비 3. 화재진압장비 4. 구조장비 5. 구급장비 6. 소방용 측정장비 7. 호흡보호장비 8. 보조장비 9. 소방용품 10. 그 밖의 장비 </div>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2조제3호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보조장비를 말한다.

자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장비 관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또한 소방장비의 분류체계에 관해 「소방산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소방장비를 10개의 대분류, 37개의 중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산업법 시행령」 상 소방장비 분류 현황]

대분류	중분류
1. 소방기동장비	1. 소방자동차 2. 소방항공기 3. 소방정
2. 소방정보통신장비	1. 유선통신 2. 무선통신 3. 전원장치 4. 전산정보
3. 화재진압장비	1. 이동용소방펌프 2. 기동장비용소방펌프 3. 이동식진화기 4. 소방호스 5. 관창 6. 결합금속구
4. 구조장비	1. 일반구조용 2. 중량물작업용 3. 절단용 4. 파괴용 5. 유해화학구조용 6. 수난구조용 7. 산악구조용 8. 특수구조용
5. 구급장비	1. 응급처치기구 2. 응급환자이송용 3. 응급의약품 4. 검사기구
6. 소방용 측정장비	1. 점검기구 2. 감식기구 3. 측정기구
7. 호흡보호 장비	1. 일상용 2. 특수작업용
8. 보조장비	1. 진압용 2. 구조용 3. 구급용 4. 탐색용 5. 전원·조명용 6. 기록보존용 7. 정비용
9. 소방용품	
10. 그 밖의 장비	

주: 「소방산업법 시행령」 [별표 1] 상 소분류는 장비 중을 예시한 것으로 별도 기재하지 않음
 자료: 「소방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소방장비를 8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248개 소분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장비 관리 규칙」 상 소방장비 분류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기동장비	1. 소방자동차 2. 소방선박 3. 소방항공기	23
2. 화재진압장비	1. 소화용수기구 2. 관창 3.사다리 4. 소방용 펌프 5. 소방호스 6. 소방용 보조기구 7. 이동식진화기 8. 소방용로봇	18
3. 구조장비	1. 일반구조용 2. 산악구조용 3. 수난구조용 4.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용 5. 절단 구조용 6. 중량물 작업용 7. 탐색 구조용 8. 파괴용	66
4. 구급장비	1. 검사장비 2. 기도확보유지장비 3. 분만장비 4. 순환유지장비 5. 시트 6. 심장박동회복장비 7. 외상처치장비 8. 호흡유지장비 9. 환자이송장비 10. 그 밖의 구급장비 11. 구급의약품 12. 교육장비	45
5. 정보통신장비	1. 기반장비 2. 네트워크장비 3. 무선통신장비 4. 보안장비 5. 소프트웨어 6. 유선통신장비 7. 전산장비	34
6. 측정장비	1. 소방시설점검장비 2.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3. 일반측정장비 4. 화생방 등 측정장비	22
7. 보호장비	1. 호흡장비 2. 보호의류 및 헬멧 3. 안전장구	20
8. 보조장비	1. 기록보존용 2. 정비기구 3.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4. 현장지원장비 5. 그 밖의 보조장비	20

주: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 상 소분류는 분류종의 수만 기재하였으며, 세분류는 생략
자료: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차이는 「소방산업법」과 「소방기본법」(「소방장비 관리 규칙」)의 취지가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산업법」은 소방청 내 소방산업과 소관 법령으로 동 법상 “소방장비”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소방청 내 소방장비항공과 소관 법령으로 동 법령상 “소방장비”는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소방장비로 보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방산업 수요의 대부분은 국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다는 점, 소방장비 분류표준 및 규격화 사업은 국제규격을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상이한 분류체계는 장비관리 효율성 제고 및 소방산업 진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청은 단일한 소방장비 분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인 소방장비 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방장비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기능 제품이 많고,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 및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칙 및 규정은 소방장비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및 분류기준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소방청 내 부서의 소관업무에 따라 119구조과 소관 「구조장비 보유기준」, 119구급과 소관 「구급장비 기준」, 중앙119구조본부 소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등 별도의 장비보유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각각의 규정은 119구조대, 119구급대, 중앙119구조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비보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소방기관(구조대, 구급대, 항공구조구급대,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업무에 따라 필수장비와 선택장비 등의 보유기준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규정의 소방장비 관리규정 및 분류체계가 상이하어 동일 장비의 내용연수가 다르거나 소방장비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¹⁰⁾

이와 같이 다중적이고 상이한 관리규정 및 분류체계는 중복적인 장비관리업무를 유발하는 한편,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6조¹¹⁾에 명시된 소방장비 표준화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현재 각 장비의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장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청은 통합적인 소방장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표준화된 소방행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¹²⁾

한편, 소방청에서 소방장비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은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방장비는 900여 종으로 다양하고, 소방업무가 소방장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장비 관리조직 확대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은 구조보트운반 트레일러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은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글(보안경)의 경우 「구급장비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11)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6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2) 다만, 시·도별 소방본부는 각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의 소방장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소방·경찰·해경의 기동장비 및 관리 조직 비교]

구분	차량	합정	항공	관리체계 및 규모
소방	특수 8,309대	소방정 27대	헬기 28대	1과 13명
경찰	특수 315대 일반 15,738대	-	헬기 19대	1정책관 3담당관 151명
해경	특수 109대 일반 451대	합정 308척	비행기 6대 헬기 17대	1국 4과 85명

자료: 소방청

셋째, 소방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방정은 수상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선박으로, 현재 운용되는 소방정대는 8개이며, 소방정 수는 10척이다. 30~140톤 규모(지휘정 제외)이며, 8~16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고, 선박의 가격은 9~48억원(지휘정 제외) 수준이다.

[지자체별 소방정대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소방정대	소방정	톤수(TON)	탑승인원(명)	포소화 약제량(L)	건조년도	구입가격
부산	부산703호	5.18	8	지휘정	1987	76.7
	부산705호	103	15	5,000	1996	3,540
	부산706호	113	12	5,000	1999	3,945
인천	인천703호	111	8	4,500	1997	3,367
충북	충북701호	35	16	1,500	1997	906
충남	충남701호	64	14	10,000	2014	4,800
전북	전북119호	64	14	800	2016	4,090
전남	전남705호	147	8	5,000	2003	4,800
창원	창원704호	38	7	500	2009	2,561
경남	경남706호	31	9	1,000	2005	1,500

자료: 각 지자체 규칙을 바탕으로 제작됨

그런데 소방합정(소방정)에 관한 장비관리 체계의 경우, 소방정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정 정비 주기도 상이하다.

[지자체별 소방정 정비주기 규정]

구분	전라남도 (147톤)	인천광역시 (111톤)	전라북도 (64톤)	충청남도 (64톤)	충청북도 (35톤)
정기정비	2년에 1회	5년에 1회	5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를 따름
상가정비	1년에 2회	1년에 1회	3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중간정비	1년에 2회 (상·하반기 필요시)	2~3년에 1회		2~3년에 1회	
응급정비	고장발생 시				
자체정비	수시				

자료: 각 지자체 규칙을 바탕으로 제작성

이에 비해 항공구조·구급대¹³⁾의 경우, 운항관리·정비·검사·물품관리·교육훈련·보안관리·비상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내 관련 규정이 통일되어 있다.

또한 소방자동차의 경우,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의무규정을 비롯하여, 점검방법, 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고, 다수공급자계약¹⁴⁾을 통해 구매되므로 일정부분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기동장비 중 소방정에 관한 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방정에 관한 관리운영규정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중앙119(4), 서울(3), 부산(2), 대구(2), 인천(2), 광주(1), 울산(1), 경기(3), 강원(2), 충남(1), 충북(1), 전북(1), 전남(2), 경북(2), 경남(1) 등 전국 1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소방헬기는 28대가 운용되고 있다.

14)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동 계약에 따른 실무구매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2.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 사업 내실화 필요

가. 현황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¹⁾ 사업은 소방장비에 관한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소방장비표준규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	0	200	200	400	200	100.0

자료: 소방청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 사업은 2017년 한국형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되었는데, 다른 내역사업인 구매조건부 소방장비개발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018년부터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계획의 보안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소방장비표준규격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표준규격이 필요한 소방장비를 선별하여 표준규격 개발 5개년 계획(2017~2021)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른 개발대상 소방장비는 전체 60종이며, 소요예산은 24억원이다.

1) 코드: 일반회계 1132-300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5개년 계획]

(단위: 백만원)

규격개발 연도	규격개발 장비	소요예산
2017	사이렌, 소방펌프, 안전장갑 등 6종	200
2018	소방펌프차, 생활안전차, 물탱크차, 화학보호복 등 14종	400
2019	폼 혼합장치, 구조헬멧, 일반들것 등 14종	600
2020	열화상카메라, 산불진압장비, 구급들것 등 16종	600
2021	휴대용조명등, 구급차, 소방차유지보수기준 등 10종	600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2018년 표준규격 개발장비 14종에는 소방펌프차를 비롯한 소방차량 12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소방차량은 펌프차, 사다리차, 화학차, 구급차 등 용도가 다양하며, 차량규모도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되어 운용된다는 점에서 소규모 장비보다 표준규격 연구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방차량은 소방장비 가운데 가장 고가의 장비이며 내구연한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규격 연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표준규격 규정”)[별표 1]은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 총 33종(세분류상 기동장비 25종, 보호장비 8종)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 규정에 열거된 33종 가운데 안전화, 안전헬멧, 진압장갑 등 3종은 소방청이 수립한 표준규격 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은 소방장비 930종 가운데 60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장비별로 소요되는 연구비와 60종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장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표준규격사업을 추진할 장비의 범위, 우선순위 및 전체 소요예산 예측, 공통규격(KS) 및 국제규격과의 관계 정립, 개정된 표준규격의 확인 주기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업계획의 체계화·정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5개년 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표준규격 개발 연도	
기동장비	소방차	소방펌프차	경형 펌프차	2018	
			소형 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중형 펌프차
					대형 펌프차
		소형 물탱크차			
		중형 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대형 물탱크차		
			소형 화학차		
			중형 화학차		
			대형 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고성능 화학차		
			직진식 사다리차(33미터 이상)		
			직진식 사다리차(33미터 미만)		
			굴절식 사다리차(33미터 이상)		
			굴절식 사다리차(33미터 미만)		
			굴절차(33미터 이상)		
		지휘차	굴절차(33미터 미만)		
			소형 지휘차		
			중형 지휘차		
		구조차	대형 지휘차		
구조버스					
구급차	구조공작차				
	특수구급차	2021			
조명배연차	조연차	2018			
	생활안전차		생활안전차		
보호장비	보호의류 및 헬멧	방화복	방화복	2020	
		방호복	화학보호복	2018	
		방화두건	방화두건	2017	
		보호장갑	진압장갑	없음	
		헬멧	안전화	안전화	없음
			안전헬멧	안전헬멧	없음
				진압헬멧	2017
				구조헬멧	2018

자료: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III

개별 사업 분석

1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황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 사업은 소방헬기 시뮬레이터를 설치·운영할 교육용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수도권대, 영남대)¹⁾ 사업의 내역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7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수도권대, 영남대)	10,033	1,674	1,674	2,759	1,085	64.8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신축	0	0	0	739	739	순증

자료: 소방청

소방헬기 시뮬레이터는 구조용 헬기 비행훈련장치로서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3년간²⁾(2015. 6. ~ 2018. 6.) 추진되었으며, 교육센터 신축사업은 시뮬레이터 개발완료 시기에 맞추어 교육시설을 마련하고자 편성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132-300

2) 소방헬기 시뮬레이터는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기술개발사업(코드: 일반회계 1160-600)에서 추진되었으며 연도별 예산편성액은 2015년 11.5억원, 2016년 12.2억원, 2017년 14.3억원이다.

나. 분석의견

소방청은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시설이 차질없이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소방헬기 시뮬레이터의 구축 완료를 2018년 6월, 교육센터 준공완료를 10월로 예상하면서 교육센터 건설비를 6억 7,300만원, 3개월분 운영비를 6,600만원 편성하였다. 교육센터는 중앙119구조본부(대구) 부지 내 건설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는 편성되지 않았다.

[2018년도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비목	예산
교육센터 신축 사업비	기본설계비	14
	실시설계비	21
	시설비	625
	감리비	9
	시설부대비	4
교육센터 운영비(3개월 분)	관리용역비	66
계		739

자료: 소방청

그런데 소방청이 계획한 바와 같이 연내에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계획에 따르면 신축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외부기관(주관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자료조사가 2017년 10월에 실시될 예정이고, 신축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액, 추진일정 등이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시기는 11월이다.

2018년도 공사계획을 살펴보면 설계계약이 1월에 체결되고 용역수행은 2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조달청 입찰공고 및 시공사 선정 과정은 2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4개월간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초 예산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이후 설계변경을 비롯하여 공개 입찰에 따른 행정절차, 시공사업자 유찰가능성 등 다양한 사업지연요인을 고려할 때 면밀한 세부계획 및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사업 추진 계획]

추진일정		주요내용
2017	10.	관련부서 의견 수렴(내부 부서 및 외부 기관), 자료조사
	11. ~ 12.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설계자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건축조사
2018	~ 3.	설계업체 수의계약 체결 및 설계용역 수행
	4. ~ 5.	입찰공고,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감리업체 등 계약 체결
	6. ~ 9.	공사착공 및 준공
	10.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 헬기 시뮬레이터 및 교육프로그램 인증(국토교통부)

자료: 소방청

가. 현황

소방보조인력소방훈련¹⁾ 사업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기초 소방훈련 및 직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소방보조인력소방훈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방보조인력소방훈련	779	1,067	1,067	866	△201	△18.8

자료: 소방청

소방직무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되며, 매년 신규로 배치되는 의무소방원(4주) 및 사회복지요원(1~2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나. 분석의견

소방보조인력 훈련경비 중 사회복지요원 훈련경비는 2018년 채용인원을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소방보조인력 훈련경비의 2018년도 예산안으로 의무소방원 6억 1,600만원, 사회복지요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의무소방원 600명, 사회복지요원 920명에 대한 급량비, 피복비, 훈련비로 구성된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170-303

[2018년도 소방보조인력소방훈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교육대상		산출근거	예산액
의무소방원	급량비	4,000원 x 83식(4주) x 600명	200
	피복비	445,000원(기동복 등 10종) x 600명	266
	소방훈련비	250,000원(인쇄비, 강사료, 난방비, 진료비 등) x 600명	150
	소계		616
사회복무요원	급량비	4,000원 x 25식(1~2주) x 920명	92
	피복비	108,000원(활동복 등 3종) x 920명	100
	소방훈련비	63,000원(인쇄비, 강사료, 난방비, 진료비 등) x 920명	58
	소계		250

자료: 소방청

이 중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안 2억 5,000만원은 2018년도 신규 채용인원 920명에 대한 교육비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채용계획은 816명이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예산은 실제 교육예정인원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해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오명희 예산분석관
김경수 예산분석관
오덕근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유선주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10월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555-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